

사 업 명

(1) 방송콘텐츠 진흥 (1131-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콘텐츠방송산업육성	방송통신콘텐츠진흥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소관부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	소관부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소관부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소관부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콘텐츠 진흥	17,914	19,397	19,397	16,792	16,792	△2,605	△13.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14	17,914	17,914	-	-	19,397	19,397	19,397	-	-	16,792
· AI·디지털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12,714	12,714	12,714	-	-	12,247	12,247	12,247	-	-	9,880
·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5,200	5,200	5,200	-	-	5,150	5,150	5,150	-	-	4,320
· AI·디지털 기반 해외 한국어방송사 지원	-	-	-	-	-	1,000	1,000	1,000	-	-	-
· 지역 방송 제작 역량 강화	-	-	-	-	-	1,000	1,000	1,000	-	-	800
·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	-	-	-	-	-	-	-	-	-	1,7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국내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디지털 기반의 방송 수단(기획-제작-송출-수신) 지원
-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창작자 육성→콘텐츠 제작→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실현
-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지역 융합인재 양성 및 AI 제작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검증된 AI 솔루션을 활용한 AI제작 기술교육 및 실증 지원
-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전주기 방송인력 대상 AI·신기술 기반의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핵심 AI 융합인재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2항

○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2항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항, 제2항

○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 방송법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제1항(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6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 방송법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제1항(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6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② 추진경위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2004년 : '우수프로그램' 및 '방송PP콘텐츠 제작지원'으로 시작
- 2005년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사업 변경
- 2006년 : '공익성 방송분야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신설
- 2007년 : 자유무역협정 및 국가간 방송협력협정에서 합의된 방송분야 협력사항 이행을 위해 '07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
- 2010년 : 수출전략형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설

- '창의·실용적 양방향 방송콘텐츠' 및 '양방향 다국어자막 서비스 추진('10년~'13년)
- 2011년 : '3D 프로그램' 및 'TV 단막극 프로그램' 지원분야 신설
 -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EBS의 공교육보완 기능 강화,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강화) 실천 및 VIP 보고 실행과제(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콘텐츠산업 진흥추진계획) 실행 준비, 융합 콘텐츠의 개발 및 확보
- 2013년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이관(방통위→미래부), '지역성·다양성강화 프로그램', '해외우수프로그램 우리말제작지원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랩' 분야 신설
 - 미래부·방통위·문체부 공동으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반영
- 2014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심사 추진 및 글로벌 포맷 공동제작 부문 신설
 - 문화융성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반영
 - 미래부·방통위·중기청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 발표('14.12월)
- 2017년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분야 중 '크로스미디어 방송콘텐츠', '포맷형 방송 프로그램' 분야 신설
- 2020년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분야 중 '숏폼형 방송콘텐츠' 분야 신설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6.22,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등 포함) / 한국판 뉴딜(디지털뉴딜) 계획 중 DNA 생태계 강화(1.2.3차 소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과제에 포함
- 2021년 : 숏폼, 크로스미디어 분야의 상위부문으로 OTT특화형 부문 신설
- 2022년 : 기획개발, 국제공동제작 분야의 상위부문으로 다큐멘터리 부문 신설
- 2023년 : 국내외 민간투자와 연계한 해외진출형(일반형) 지원 신설
- 2024년 : AI 기반 제작환경 개선 실증 부문 및 AI 기술 활용 방송·OTT콘텐츠 기획개발 분야 신설
- 2025년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전면 개편

○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 2012년 : 경쟁력 강화 우수프로그램 분야의 '크리에이티브랩 사업' 신설
- 2013년 : 미래부·방통위·문체부 공동으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 계획('13~'17)' 'TV창조채널 시범사업' 반영
- 2015년 : 신직업 추진현황 및 육성계획(관계부처합동, 12.5, 국무회의 보고), 신직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 2019년 :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 발표(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8.30)
- 2020년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관계부처합동, 6.22,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청년 크리에이터 및 1인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 2021년 :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발표, 신기술 융합 분야 신직업으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선정(관계부처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12.30)
- 2022년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전략 발표(관계부처합동, 11.18.), 정책목표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으로 탄탄한 일자리 창출'

- 2023년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 및 발표
- 2024년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관계부처합동, 3.13.), 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및 멘토링 지원 등 웹 콘텐츠 창작서비스 분야 포함
- 2024년 :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안) 발표(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3.13.), 크리에이터 단계별 지원 및 권리보호 등 주요과제 선정
- 2025년 :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으로 사업명 변경
- 2025년 : 국정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 2023년 :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3.), 정책과제 AI 및 디지털 미디어 인재 양성
- 2025년 :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내역사업 신설

○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 2024년 :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수립·발표(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3.13.), 산업 혁신을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 2024년 :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립·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9.), 디지털미디어 기술 인력 체계적 양성
- 2026년 : AI·디지털기반 미디어융합인재 양성 내역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373	29,753	17,914	19,397	16,7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사업 수혜자 : 국내 방송사업자, 중소방송사, OTT사, 크리에이터,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9,880	100	전파법 제66조 제4항
크리에이터 미디어산업 기반조성	보조	한국전파 진흥협회	4,320	100	전파법 제66조의2 제1항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보조	한국전파 진흥협회	800	100	전파법 제66조의2 제1항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보조	한국전파 진흥협회	1,792	100	전파법 제66조의2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25) 12,247백만원 → ('26) 9,880백만원, △2,367백만원
②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 ('25) 5,150백만원 → ('26) 4,320백만원, △830백만원
③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 ('25) 1,000백만원 → ('26) 800백만원, △200백만원
④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 ('25) 0 → ('26) 1,792백만원, 신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소콘텐츠 제작사의 해외 투자유치 비율 (단위: %)	목표	38	38	-	-	-	-	해외투자유치 실적/국제공동 제작 지원예산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68.96	325	-	-	-			
	달성도	181	855	-	-	-			
방송·OTT콘텐츠 투자유치율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100	100	-	-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방송·OTT 콘텐츠 지원예산) ×100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544.3	484.2	-			
	달성도	신규	신규	544.3	484.2	-			
방송·OTT콘텐츠 제작 시 AI·디지털 기술 투입비율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0	방송콘텐츠의 AI·디지털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AI디지털 기술 투입비용/방송· OTT콘텐츠 지원 예산)×100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건수 (단위: 편)	목표	220	220	220	233	233	최근 지원실적 및 예산안 규모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크리에이터미디어 제작지원 콘텐츠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유통 서비스 건수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224	220	228	233	-			
	달성도	102	100	104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p>20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제작, OTT콘텐츠, 공공·공익 우수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우리말 더빙 등 우수한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국내 OTT콘텐츠·다큐멘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송기획안 발굴 및 국내외 투자설명회·상담회 개최로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 크리에이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중소 1인 미디어 창작자 전업 창작팀을 발굴하여 인프라,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화 프로젝트 등 제공을 통한 IP 기반 사업화 지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IP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VR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분야를 신설하여 1인 미디어 제작사 대상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및 해외 동영상 플랫폼으로의 유통·확장 지원을 위해 콘텐츠 자막·더빙 등 재제작 지원 · 해외 견본시 행사(VidCon) 내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홍보 부스 운영(체험 프로그램, 비즈니스 미팅 등)하여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국내 최대 1인 미디어 대전 행사 개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 ·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현황 및 규모 파악, 산업 DB 구축을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및 특수분류체계 연구 실시 · 건강한 콘텐츠 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 콘텐츠 캠페인 진행, 해외 정책 및 정보 공유를 위한 1인 미디어 글로벌 산업동향 보고서 발간 등
<p>2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OTT 콘텐츠 기획 개발-제작-현지화-해외유통 전주기 지원 ·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국내 방송사·제작사·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고품질 대형 방송콘텐츠 선정 및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해외 우수 프로그램 우리말 더빙 프로그램 5편 발굴·지원 · 제작지원한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을 중소 방송사 및 비영리 기관에 제공하여 국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및 시청 접근성 향상에 기여 - 크리에이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중소 1인 미디어 창작자 전업 창작팀을 발굴하여 인프라,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화 프로젝트 등 제공을 통한 IP 기반 사업화 지원 · 크리에이티 미디어 성장에 따른 신직군을 발굴하고 이론·실무·현장교육 및 취업 지원을 추진하여 취·창업 달성 · 우수 창작자의 해외 견본시(Vidcon) 참가 및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홍보 부스 운영, 글로벌 협업,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국내 중소 1인 미디어 제작사 대상 우수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용 재제작 지원을 통해 콘텐츠 IP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개최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 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종합정보 제공 · 뉴테크 융합지원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창작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영역 확장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OTT콘텐츠 제작지원) 국내 방송·OTT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방송·OTT콘텐츠 지원 · (공공·공익 프로그램 제작지원) 장편 팩추얼 프로그램, 단편 교양프로그램 등 공공·공익적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K-DOCS)) 국내 다큐멘터리 산업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우수 기획안을 발굴 · (AI 기반 제작환경 개선 실증) 국내 AI 기술을 제작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AI 신기술 융합 제작·편집 실증 지원 · (방송·OTT 해외유통 지원) 칸 시리즈·ATF 연계 방송·OTT 콘텐츠 홍보행사(상영회, 투자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등)를 개최하여 국내 방송·OTT콘텐츠 및 미디어 테크 기술 해외유통 지원 -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중소 1인 미디어 창작자 전업 창작팀을 발굴하여 인프라,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화 프로젝트 등 제공을 통한 IP 기반 사업화 지원 · 크리에이터 미디어 성장에 따른 신직군을 발굴하고 이론·실습교육 및 취업 지원을 추진하여 취·창업 달성 · 우수 창작자의 해외 견본시(VidCon) 참가 및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홍보 부스 운영, 글로벌 협업,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국내 중소 1인 미디어 제작사 대상 우수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용 재제작지원을 통해 콘텐츠 IP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 민·관 합동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개최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계자 대상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가통계 우수사례 선정 · 뉴테크 융합지원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창작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영역 확장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AI 기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작 지원 및 우수 방송콘텐츠 기획안 발굴 · (AI 기반 공익형 방송콘텐츠)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 분야 신설, '광복 80주년',

	<p>‘2025 APEC 경주’ 지정주제 분야 등 공공·공익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지원(K-DOCS)) 국내 다큐멘터리 산업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우수 다큐 기획안 발굴 ·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지원) 해외 콘텐츠 마켓(칸시리즈 10개사, ATF 11개사) 연계 홍보행사 (상영회, 투자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등) 개최 등 국내 방송콘텐츠 및 미디어 테크 기술 해외유통 지원 <p>-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성장 단계 크리에이터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 유관 기업 네트워킹, 채널 사업화 프로젝트 등 IP 기반 전업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크리에이터 미디어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신직업 실무 교육 운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 취·창업 달성 · 국내 우수 디지털 크리에이터 대상 글로벌 기업·브랜드 박람회 참가 및 현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해외 진출 및 협업 기회 제공 · 국내 중소 1인 미디어 제작사 대상 우수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용 재제작지원을 통해 콘텐츠 IP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 민·관 합동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개최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종합정보 제공, 국가데이터처 특수분류* 개발 대상 선정 * 신산업 별도 분류를 위한 제도로, 개발 시 공식 통계 활용 및 정책 근거 확보 가능 · 뉴테크 융합지원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창작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영역 확장 <p>-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지역 대상으로 AI 제작 교육 수료 · 지역방송사의 경쟁력 강화와 고비용·저효율 제작 환경 조성 목적의 AI 미디어 솔루션 실증을 위해 8개사 선정
--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AI 기반 글로벌向 방송 전주기지원을 통해 AI·디지털 융합 방송과 국내 ICT 전략 기술의 동반 성장 기대
- 시청률 경쟁으로 편성에 소외된 공공·공익 방송콘텐츠에 AI기술을 적용하여 제작 효율성을 높이고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강화

○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인재 육성(전업 크리에이터 60팀 내외), 콘텐츠 제작 지원(총 20개사 내외), 해외진출 지원 등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 마련

○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 지역 방송사/SO 등의 AI기반 저비용 고효율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및 기술융합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미디어 균등발전 도모

○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AI 방송융합 인력 양성 및 글로벌 미래 인력 양성으로 AI 기반의 방송산업 혁신(비용↓, 품질↑)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내 용
사업 기본계획 수립·제출	· KCA, RAPA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행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KCA, RAPA
↓	
사업수행	· KCA, RAPA · 지원대상자 선정(외부 심사위원회 심사) 및 협약
↓	
중간보고	· KCA, RAPA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최종 수행결과 평가 및 정산	· 최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외부 전문가 평가(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	
차년도 반영계획 도출	· 예산반영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개선방향 마련

-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880백만원)	=> (9,880백만원)	한국방송통신파진흥원 (2,800백만원)	=> (7,080백만원)	국내 방송사, OTT사 등

-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320백만원)	=> (4,320백만원)	한국전파진흥협회 (3,420백만원)	=> (900백만원)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사업자 등

- 지역 방송 제작역량 강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00백만원)	=> (800백만원)	한국전파진흥협회 (480백만원)	=> (320백만원)	지역방송사, SO 등

-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792백만원)	=> (1,792백만원)	한국전파진흥협회 (1,282백만원)	=> (510백만원)	방송미디어 단체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크리에이티브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사업의 제작지원을 위해 중복 수혜 및 조회수 실적 저조 등 사업 관리와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국정감사, '25.10월)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K-컬처 확산 예산 등 확보 필요, 사업평가를 서울이 아닌 지방이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국정감사, '24.10월)
- OTT콘텐츠 보조금 교부 요건 강화 등 사업 관리 강화 필요(2023회계연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4.8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4.4점)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6.1점)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4.7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373	-	27,373	27,373	27,373	100	100	-
2023	29,953	-	29,953	29,953	29,753	99.3	99.3	-
2024	17,914	-	17,914	17,914	17,914	100	100	-
2025	19,397	-	19,397	19,397	19,397	100	100	-

* 기재부 수시배정사업 지출전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200백만원 감액 배정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해당 없음
2023	(내역사업_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기재부 지출전 사전협의로 200백만원 감액 배정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2)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1131-308)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미디어 진흥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8
명칭	콘텐츠방송산업육성	방송통신콘텐츠진흥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소관부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펀드운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사업관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35,000	5,000	5,000	500	500	△4,500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000	35,000	35,000	-	-	5,000	5,000	5,000	-	-	500
·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35,000	35,000	35,000	-	-	5,000	5,000	5,000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콘텐츠전략펀드출자)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미디어 제작을 위해 투자제약이 적은 새로운 민간 중심의 콘텐츠·미디어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시장을 공략할 핵심 흥행콘텐츠 및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
- 성공 예측이 어려워 민간투자가 저조한 콘텐츠·미디어 분야에 정부 출자를 통한 안정적 콘텐츠·미디어 사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의 투자확대 유도
- 해외 진출 목적의 콘텐츠·플랫폼·IP·프로젝트 등 미래 유망 분야 지원을 통해 제작비 증가, 글로벌 경쟁심화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국내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수익창출과 기업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콘텐츠·미디어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용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4.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24. 3월 :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24. 12월 :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25. 7월 : 국정과제(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00	4,500	35,000	5,000	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펀드운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사업관리)
- 사업 수혜자 : 방송사업자, OTT, 콘텐츠제작사, 미디어기업 등 방송·콘텐츠 분야 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콘텐츠전략 펀드출자	출자	한국성장 금융투자 운용(주)	500	100	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24.4)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 ('25) 5,000백만원 → ('26) 500백만원, △4,500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투자기업 고용증가 (단위: 명)	목표	876	1,052	1,263	-	-	종료사업 (~'23)	전년대비 투자 기업의 종업원 증가수	모태펀드 투자 현황통계 (한국벤처투자)
	실적	1,280	1,224	1,352	-	-			
	달성도	146	116	107	-	-			
전략펀드 구성규모 달성도 (단위: 불)	목표	-	-	100	100	100	전략펀드 출자사업 계획 (전략펀드 운영위원회)	자펀드 결성 목표액 달성률	전략펀드 투자 현황통계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실적	-	-	조성중 ¹⁾	조성중				
	달성도	-	-	조성중 ¹⁾	조성중				
전략펀드 주목적 분야 투자율 (단위: 불)	목표	-	-	50	50	50	전략펀드 구성규모 중 모펀드(지정 출자자 포함) 비율(40%) 등을 고려하여 설정	블라인드 펀드 누적 투자금액 중 주목적투자금액 비율	전략펀드 투자 현황통계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실적	-	-	-					
	달성도	-	-	-					

1) '24년 정부출자(과기정통부, 문체부)를 통해 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26.下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정부자금 60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소 ICT기업 등 510개 기업 투자(누적) 등
2023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정부자금 24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소 ICT기업 등 535개 기업 투자(누적),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IR피칭 데모데이 개최 등
2024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정부자금 300억원(회수금)을 출자하였으며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등 541개 기업 투자(누적) 등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정부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800억원) 출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10.2)
2025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자펀드 운용사 선정 등 K-미디어·콘텐츠 전략펀드 1차 출자사업 추진 착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간투자 확대) 민간 분야의 자본을 K-콘텐츠·미디어로 유치하여 콘텐츠·미디어 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경쟁력 강화) 대형 콘텐츠 및 IP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미디어 제작사와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 (콘텐츠전략펀드출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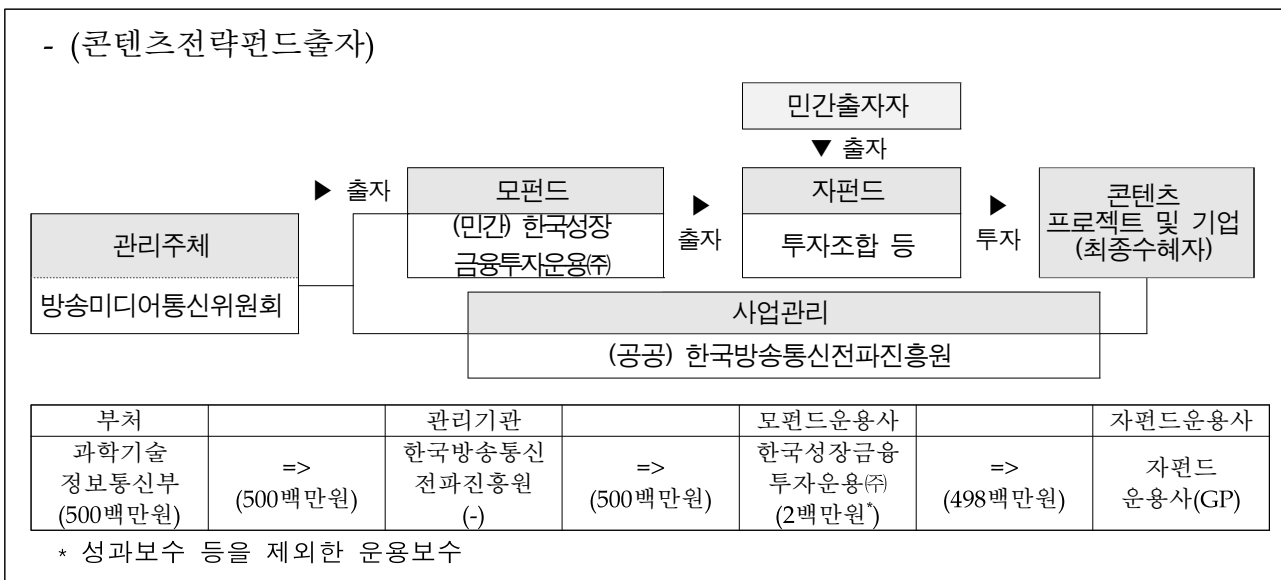
□ 시행하지 않은 이유

○ (콘텐츠전략펀드출자)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9호에 따른 조사면제 대상 해당

-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해당 사업은 '콘텐츠·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적 목적을 가진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펀드 청산시 자금의 회수가 가능하여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고,
-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에 시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펀드의 조속한 출범 필요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국회('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 면밀한 사업 관리로 적기에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개시 필요, 신규 출자사업은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보완 필요
- (조치완료) 펀드 운영위원회('25.10월·12월)를 통한 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점검, 자펀드 운용사의 투자상황 관리(반기보고서 등) 등 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을 면밀하게 관리함
- 모펀드 결성, 자펀드 운용사 공모·선정, 자펀드 결성 등 추진절차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함
 - ※ 2호 펀드 추진계획 : 모펀드 결성('25.10월 완료), 자펀드 운용사 공모·선정('25.12월 완료), 자펀드 결성(~'26. 상반기) 등
 - ※ 3호 펀드 추진계획 : 모펀드 결성(~'26.3분기), 자펀드 운용사 공모·선정 (~'26.4분기), 자펀드 결성 (~'27. 상반기) 등
- 펀드 조성규모 달성도와 주목적 분야 투자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전략펀드 조성규모 달성도', '전략펀드 주목적분야 투자율' 등 성과지표를 신규 반영함
 - ※ 향후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투자기업 성과(기업성장, 고용창출, 해외매출 등) 측정지표를 추가 개발 반영 예정(~'26.1분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00	-	-	5,000	5,000	100.0	-	-
2023	4,500	-	-	4,500	4,500	100.0	-	-
2024	35,000	-	-	35,000	35,000	100.0	-	-
2025	5,000	-	-	5,000	5,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이월 및 불용 없음
2023	- 계획변경, 이월 및 불용 없음
2024	- 계획변경, 이월 및 불용 없음
2025	- 계획변경, 이월 및 불용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디지털미디어산업육성기반구축 (1140-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	방송미디어	방송미디어		060	061
명칭	기금	통신위원회	진흥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0	301
명칭	콘텐츠방송산업육성	방송산업육성기반구축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디지털미디어실태조사)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디지털미디어 실태조사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1,091	1,096	1,096	930	930	△166	△15.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1	1,091	1,091 [1,060]			1,096	1,096	1,096			930
· 디지털미디어실태조사	1,091	1,091	1,091 [1,060]			1,096	1,096	1,096			9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미디어 실태조사) 방송·미디어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 국가승인통계 2건(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및 방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유료방송 실태조사 2건(가입자수 조사·검증, 품질평가) 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41조, 제44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25조(자료제출명령),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자료제출 명령)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방송법 제8조, 제98조

제8조(소유제한 등) ⑩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⑪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이하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자료제출) ①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

제13조(시장점유율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 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법률 제13232호(2015. 3. 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하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파법 제66조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방송·통신·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추진경위

- '00. 1월,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

- '00. 6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작

· 법률상 가장 기본적인 운영재원(방송제작 및 송출 등) 지원

- '00. 6월 : '방송 운영현황 및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現, 방송산업실태조사)

- '13. 12월 :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 '14. 1월 :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수행

- '14. 12월 :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중기청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 추진전략5(융합산업에 대한 제도화 방안 마련) - 세부과제4(스마트미디어 시장동향 분석체계 구축)

- '15. 3월 : IPTV법 개정

- '15. 6월 : IPTV법 시행령 개정

- '15. 8월 :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정

- '15. 8월 :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승인번호 : 423001호)

- '15. 9월 :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16. 4월 : '15년 하반기 대상 전문심의회 개최 및 시장점유율 발표

- '16. 10월 : '16년 상반기 대상 전문심의회 개최 및 시장점유율 발표

- '16. 12월 :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유료방송 발전방안" 의결

- '18. 9월 :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승인번호 : 127014호)

- '18. 12월 : 과기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동조사 변경(승인번호 : 920021호)

- '22. 11월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관계부처 합동)

- '25. 12월 :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5	1,065	1,091	1,096	9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사업 수혜자 : 방송·미디어분야 산·학·연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디지털미디어 실태조사	보조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98	54.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제29조(사업),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위탁	한국정보 통신진흥 협회	262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정보통신진흥협 회)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한국정보통신진 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570	100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디지털미디어실태조사

: (2025) 1,096백만원 → (2026 계획안) 930백만원 (166백만원 감액)

- (요구)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각종 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유료방송 조사·검증 152백만원x1회 = 152백만원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570백만원x1회 = 570백만원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98백만원x1회 = 98백만원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110백만원x1회 = 11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96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보조(320-01) : 9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광고비조사 : 98백만원x1회=98백만원 ○ 민간위탁사업(320-02) : 26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 110백만원x1회=110백만원 - 유료방송가입자수 조사검증 : 152백만원x1회=152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73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산업실태조사 : 166백만원x1회=166백만원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 570백만원x1회=570백만원 	93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보조(320-01) : 9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광고비조사 : 98백만원x1회=98백만원 ○ 민간위탁사업(320-02) : 83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 110백만원x1회=110백만원 - 유료방송가입자수 조사검증 : 152백만원x1회=152백만원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 570백만원x1회=5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이용자만족도 향상	목표	82.3	82.5	82.7	83.0	83.3	전년도 실적(83.0점) + 의지목표(0.3점)	실태조사 결과물인 통계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 * 척도 : 7점 척도	통계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표본조사)
	실적	82.7	82.6	82.8					
	달성도	100.5%	100.1%	100.1%	-	-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표본확보	목표	95%	95%	95%	95%	95%	조사 응답률 95% 이상으로 설정	조사응답/목표표본	2025년 표본할당 대 비
	실적	100%	100%	100%	100%				
	달성도	105.3%	105.3%	105.3%	105.3%				
디지털미디어센터 지원기업매출액 (백만원)	목표	4,162	4,578	5,036	-	-	해당 내역사업 종료(~'23)	디지털미디어센터 지원기업 매출액 합계	재무제표 등 실적 조사
	실적	4,369	5,036	5,050	-	-			
	달성도	105	11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하반기 대상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공표(5월) · '22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기본계획 수립(4월) · '22년 상반기 대상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공표(11월) · 방송산업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발간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홍보(1월) · '22년 하반기 대상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공표(5월) · '23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수립(4월) · '23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홍보(10~12월) · '23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홍보(10월) · 방송산업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발간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방송통신광고비조사 결과 공표(1월) · '23년 하반기 대상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공표(5월) · '24년 상반기 대상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공표(11월) · 방송산업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발간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하반기 대상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공표(5월) · 방송산업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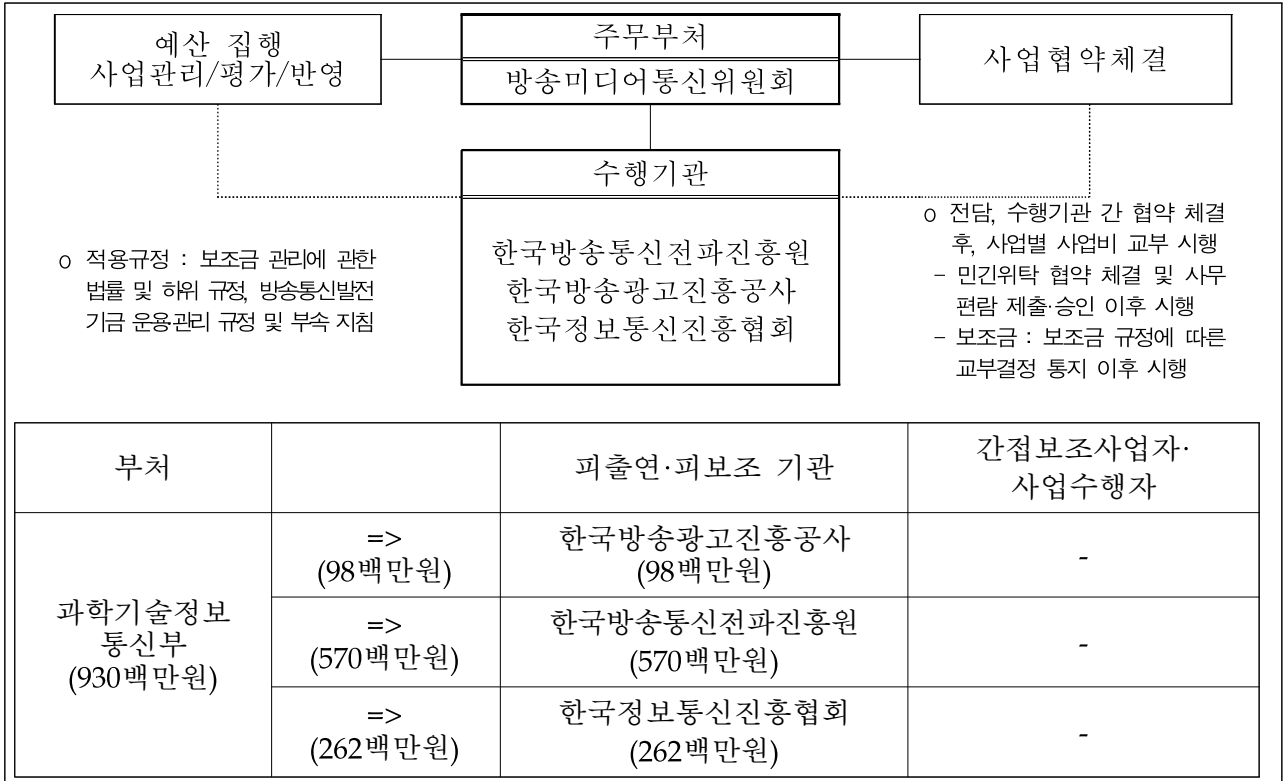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미디어분야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국민 통계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보조금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24)
- (최종의견) 사업방식변경
 - (결과 요약) 유료방송가입자수조사검증 및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2개 내내역 사업은 '25년 예산부터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 필요함
 - (사유 및 조치) 비목전환 완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65	-	1,065	-	1,065	1,065	100	100	-	-
2023	1,065	-	1,065	-	1,065	1,065	100	100	-	-
2024	1,091	-	1,091	-	1,091	1,091	100	100	-	-
2025	1,096	-	1,096	-	1,096	1,096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이월 및 불용현황 없음
2023	- 계획변경, 이월 및 불용현황 없음
2024	- 계획변경, 이월 및 불용현황 없음
2025	- 계획변경, 이월 및 불용현황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131-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방송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2,774	30,064	30,064	31,083	30,383	319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774	32,774	32,774 [32,764]	-	- [10]	30,064	30,064	30,064 [30,051]	-	- [13]	30,383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7,529	7,529	7,529 [7,528]	-	- [1]	7,529	7,529	7,529 [7,528]	-	- [1]	7,829
· 청소년 프로그램	8,175	8,175	8,175 [8,173]	-	- [2]	9,665	9,665	9,665 [9,655]	-	- [10]	9,665
· 평생교육 프로그램	7,058	7,058	7,058 [7,057]	-	- [1]	7,058	7,058	7,058 [7,057]	-	- [1]	7,658
· 2TV 프로그램	5,312	5,312	5,312 [5,307]	-	- [5]	5,812	5,812	5,812 [5,811]	-	- [1]	5,231
·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4,700	4,700	4,700 [4,699]	-	- [1]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국내 유일의 교육 공영방송 EBS의 공익적인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제고를 통하여 시청자의 권익증진 및 만족도 향상 추진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EBS 대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단계별·영역별 맞춤형 학습·창의 콘텐츠 제작 및 어린이를 위한 융합교육·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청소년 프로그램) 건전한 청소년 문화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교육 보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실용적인 적성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 콘텐츠 제작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하여 전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식 전달을 위한 실용 교육 및 예술·생활 콘텐츠 제공, 소외계층 맞춤형 교양 교육 콘텐츠 개발
- (2TV 프로그램) 국내 최초의 다채널방송(MMS)인 EBS 2TV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MMS 방송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역사 기반의 교육·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지식 격차 해소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0. 1월,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
- '00. 6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작
 - 법률상 가장 기본적인 운영재원(방송제작 및 송출 등) 지원
- '05. 1월, 영역별 프로그램 제작지원
 - 유아·어린이, 청소년, 교양문화, 학교교과, 평생교육 등
- '14. 1월, 라디오 독서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 '15. 1월, 초중학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 '16. 1월, 2TV 프로그램 제작지원
- '19. 1월, 동남아언어교육프로그램 제작지원
- '21. 1월, VR·AR콘텐츠, 부모교육, 장애아동교육 제작지원
- '22. 1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 '22. 8월, 보조사업연장평가 조치요구사항 반영하여 내역사업 단순화
- '22. 12월,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 ※ '22.11월, 국민의 힘 정책위 2023년 예산 심사방향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중심 20대 민생 주요 증액사업」 발표
 - ※ ('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2023년 1학기부터 한국교육방송 공사의 'EBS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화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간 한시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한다.
- '23.7월,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화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818	35,468	32,774	30,064	30,38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방송공사
- 사업 수혜자 : 시청자 및 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민간경 상보조	한국교육 방송공사	7,829	1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청소년 프로그램	민간경 상보조	한국교육 방송공사	9,665	1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민간경 상보조	한국교육 방송공사	7,658	1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2TV 프로그램	민간경 상보조	한국교육 방송공사	5,231	1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 7,82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신규제작 - (산출) 12.03백만원 x 651편 = 7,829백만원
<p>② 청소년 프로그램 : 9,66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청소년 프로그램 신규제작 - (산출) 2.05백만원 x 4,716편 = 9,665백만원
<p>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 7,65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평생 프로그램 신규제작 - (산출) 5.06백만원 x 1,512편 = 7,658백만원
<p>④ 2TV 프로그램 : 5,23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2TV 프로그램 신규제작 - (산출) 9.56백만원 x 547편 = 5,23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청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목표	80.4	80.7	80.7	80.8	80.9	과거 3개년(22년~24년) 실적 평균 (80.8점) + 성과제고를 위한 의지목표(0.1점)	TV 시청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외부리서치기관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80.7	80.8	80.8	80.9	-			
	달성도	100.4	100.2	100.2	100.1	-			
프로그램 제작편수 (단위: 편)	목표	4,882	4,009	3,807	6,142	7,426	'26년 예산 요구인의 제작계획 편수 기준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편수	전수 조사 (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실적	5,982	5,235	5,270	7,942	-			
	달성도	122.5	130.6	138.4	129.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프로그램 제작 : 5,982편
2023	- 프로그램 제작 : 5,235편 - 중학프리미엄 강의 콘텐츠 제작 : 4,198편
2024	- 프로그램 제작 : 5,270편 - 중학프리미엄 강의 콘텐츠 제작 : 8,030편
2025	- 프로그램 제작 : 7,94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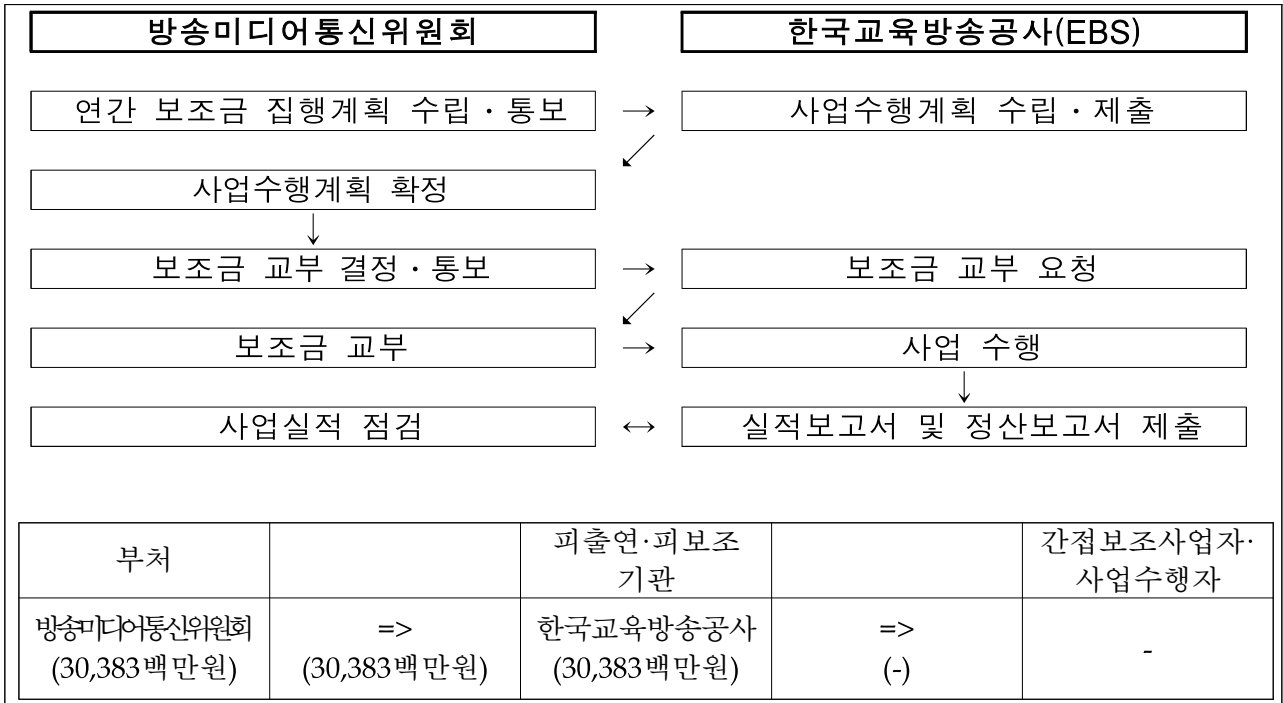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 국민 대상 교육 콘텐츠의 안정적 제공을 통한 공익성·다양성 확보(7,426편 제공 예정)
- 유아·어린이 대상 인지·인성 콘텐츠 등 미취학 시기부터 심화되는 문해력 격차 해소 및 AI 교육 등 차세대 콘텐츠의 수요 대응하여 연계 콘텐츠 제작
- 청소년 대상 인문·사회교양, 진로·직업 콘텐츠, 초·중학 학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평생교육 관련 생애주기별 필요 지식을 위한 일반 교양 및 철학·과학·예술 등 시대를 조명하는 인문·사회 교양 프로그램 제작,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 2TV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MMS 방송의 안정성을 지속 검토하면서, 정보·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역사 기반의 교육·교양 프로그램 제작
-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젠더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AI 사회에 대응하여 생애 맞춤 교육 콘텐츠 제작(유아, 성인 등 AI 활용 특화 콘텐츠 제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프로그램 제작 편수와 단가에 대한 예산을 보다 면밀히 편성하여, 집행 필요('24결산, 예결위)
 - 내역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제작 프로그램 다양성이 저하됨('23결산, 예결위)
 - 보조금 집행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 필요('23결산, 과방위)
 - 방영권 판매 수입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방안 검토 필요('23예산, 예정처)
- 2) 대외공개 평가
 - '25년 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 : 일정수준 감축
 - 2TV프로그램 중 청소년 관련 콘텐츠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높으므로 청소년 관련 콘텐츠는 청소년프로그램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우수(92.1점)
 - 고품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시청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9,818	-	29,818	29,818	29,818	100	-	-
2023	35,468	-	35,468	35,468	32,164	90.7	-	3,304
2024	32,774	-	32,774	32,774	32,774	100	-	-
2025	30,064	-	30,064	30,064	30,06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3,304백만원 불용 : 교육부 지방교부금 확보 및 '23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5,650백만원)이 반영되어 기재부의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잔여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23년 사업 예산을 2,346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출 전 사전협의하였음
2024	-
2025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5)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3131-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아리랑국제 방송 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지상파방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제방송교류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13,430	12,070	12,070	11,022	-	△12,070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30	13,430	13,430	-	-	12,070	12,070	12,070	-	-	-
· TV프로그램 제작	11,655	11,655	11,655	-	-	10,475	10,475	10,475	-	-	-
· 영어FM프로그램 제작	1,775	1,775	1,775	-	-	1,595	1,595	1,59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TV프로그램 제작)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최신 뉴스 및 관광·음식·문화·예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홍보 등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민간보조 방식으로 아리랑TV 시청자에게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

- (영어FM프로그램 제작)

- 영어FM 라디오방송을 통해 제주 거주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외국인에게 K-Pop, 한국문화, 음식, 전통, 관광지 등에 대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 및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정부는 1996년 방송을 통한 국가 홍보 활성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국제화와 수출지원 등의 목적으로 대외홍보위원회의 의결로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설립, 해외홍보방송 실시

- 공보처, 해외위성방송 「코리아 채널」 추진(1996.2.12., 대통령 지시사항)
- 「민법」 제32조에 근거,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1996.4.10., 공보처장관 승인)
- 해외홍보방송 운영주체로 지정(1998.10.22., 문화관광부 장관)

-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주재 「영어 라디오방송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운영주체로 확정하고 2003년 제주에서 영어FM방송을 추진기로 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1 ~ 202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675	23,423	13,430	12,070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제방송교류재단
- 사업 수혜자 : 아리랑TV 시청자 및 제주 영어FM 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TV프로그램 지원	보조	국제방송 교류재단	0	정액보조 (10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영어FM 프로그램 지원			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해당없음

- 아리랑국제방송지원 : ('25) 12,070백만원 → ('26) 0원, 순감
- (1) TV프로그램제작 내역 : ('25) 10,475백만원 → ('26) 0원, 순감
- (2) 영어FM프로그램제작 내역 : ('25) 1,595백만원 → ('26) 0원,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리랑 국제방송 채널 만족도(점)	목표	94.6	(종료)	(종료)	(종료)	-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 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채널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 (리서치 기관을 통한 조사)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93.7	-	-	-	-			
	달성도	99.0	-	-	-	-			
아리랑 국제방송 채널 만족도 (평가지수)	목표		*86.8	86.8	86.8	-	채널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 (리서치 기관을 통한 조사) *23년부터 해외시청자 평가지수조사 (KI)로 조사방식 변경		
	실적		84.7	86.3	86.7	-			
	달성도		97.6	99.4	99.9	-			
아리랑TV 프로그램 제작실적 (편)	목표	3,553	3,553	3,553	3,164	-	각 세부사업별 정부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	아리랑 국제방송에 대해 지원한 보조금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편수	사업수행자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3,556	3,555	3,584	3,390	-			
	달성도	100.1	100.1	100.9	107.1	-			
아리랑 영어FM 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 (점)	목표	75.9	75.9	75.7	75.7	-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 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치의 평균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75.3	75.8	75.8	75.8	-			
	달성도	99.2	99.9	100.1	100.1	-			
아리랑 영어FM 프로그램 제작실적 (편)	목표	4,346	4,314	4,317	3,949	-	각 세부사업별 정부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	제주영어FM에 대해 지원한 보조금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편수	사업수행자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4,346	4,317	4,329	3,955	-			
	달성도	100.0	100.1	100.3	10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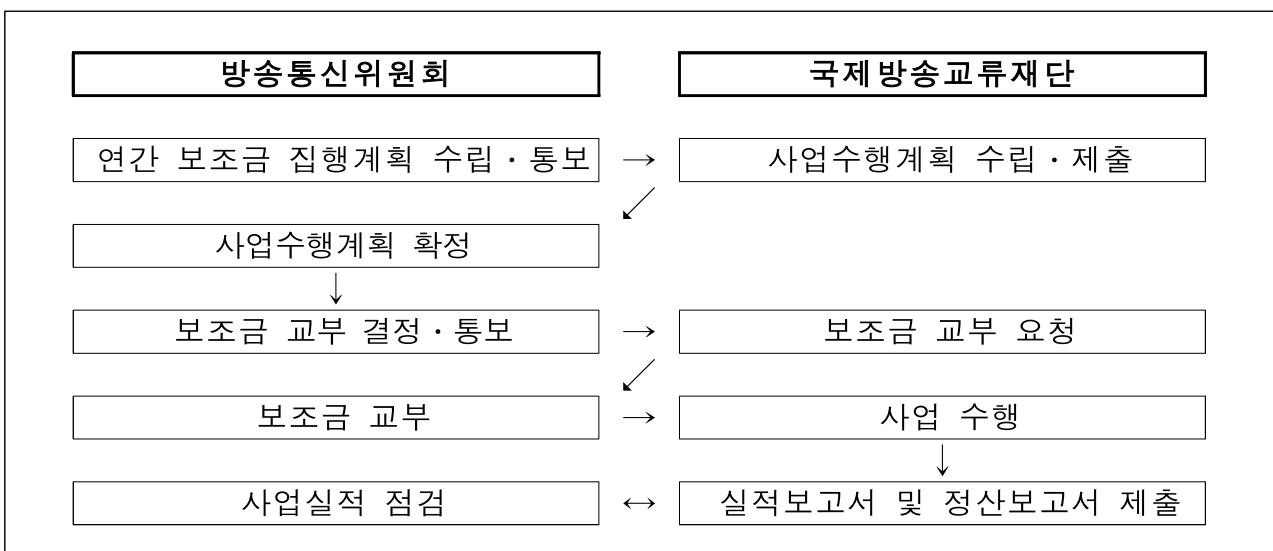
2022	- 7개 외국어(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로 3,556편의 TV프로그램 제작·방송 -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교통·관광·기상 정보 등) 뿐만 아니라 'K-Pop / K-Culture' '시사·경제' '한국 바로 알리기' 등의 프로그램 4,364편 제작·방송
2023	- 7개 외국어(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로 3,555편의 TV프로그램 제작·방송 -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교통·관광·기상 정보 등) 뿐만 아니라 'K-Pop / K-Culture' '시사·경제' '한국 바로 알리기' 등의 프로그램 4,317편 제작·방송
2024	- 7개 외국어(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로 3,584편의 TV프로그램 제작·방송 -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교통·관광·기상 정보 등) 뿐만 아니라 'K-Pop / K-Culture' '시사·경제' '한국 바로 알리기' 등의 프로그램 4,329편 제작·방송
2025	- 7개 외국어(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로 3,390편의 TV프로그램 제작·방송 중 -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교통·관광·기상 정보 등) 뿐만 아니라 'K-Pop / K-Culture' '시사·경제' '한국 바로 알리기' 등의 프로그램 3,955편 제작·방송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예정처 '25 예산, 과방위 '25 예산부대의견, 과방위 '23년 예산, 예결위 '23년 결산 등)

- (조치결과) '21년 인건비(약 108억원)를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 (조치결과) '23년 방송기자재구입비(252백만원) 국제방송교류재단으로 이관
- (조치결과) '24년 위성방송사업(9,245백만원), 방송시설운영(748백만원)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 (조치결과) '26년 TV프로그램 제작(10,475백만원), 영어FM프로그램 제작(1,595백만원)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음 (과방위 '22년 예산)
- (조치결과) 국회 문체위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한국국제방송원'으로 법정 법인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24.5.29. 임기만료 폐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5.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675	-	-	23,675	23,675	100	-	-
2023	23,423	-	-	23,423	23,423	100	-	-
2024	13,430	-	-	13,430	13,430	100	-	-
2025	12,070	-	-	12,070	12,07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사 업 명
(6) 국악방송 지원 (3131-3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	방송미디어통신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4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인프라지원	국악방송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악방송 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악방송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국악방송지원	5,842	5,258	5,258	4,732	-	△5,258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42	5,842	5,842	-	-	5,258	5,258	5,258	-	-	-
· 정규 프로그램 제작	1,967	1,967	1,967	-	-	1,770	1,770	1,770	-	-	-
· 특집 프로그램 제작	260	260	260	-	-	234	234	234	-	-	-
·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	749	749	749	-	-	674	674	674	-	-	-
· 프로그램 제작지원	425	425	425	-	-	383	383	383	-	-	-
· 한국음악의 명곡 명연주 제작	77	77	77	-	-	70	70	70	-	-	-
·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2,364	2,364	2,364	-	-	2,127	2,127	2,127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악방송 지원)

- (정규프로그램 제작) 국악전문감상, 국악교육,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현대화 및 세계화 프로그램 등 정규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특집프로그램 제작) 공개음악회 및 특집 프로그램, 캠페인 등 특집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 보이느라디오, 공연실황중계, 주간문화소식, 특집 다큐 등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저작권료 및 방송자료 제작, 국악자료 보급, 프로그램 홍보 등 프로그램 제작지원
- (한국 음악의 명곡 명연주 제작) 국악의 세계적 위상제고와 국가브랜드 이미지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
-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산업화를 위한 전문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제6호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② 추진경위

- 2000. 2.14. : 재단법인 국악방송 설립
- 2001. 3. 2. : 국악FM방송 개국(서울·경기일원 방송)
- 2001. 6. 1. : 남원중계소 개소(전북 남원일원 방송)
- 2006. 7. 6. : 남도중계소 개소(전남 진도일원 방송)
- 2010. 4. 7. : 경주중계소 개소(경북 포항·경주일원 방송)
- 2011.10.27. : 전주중계소 개소(전북 전주일원 방송)
- 2011.11. 8. : 부산중계소 개소(부산일원 방송)
- 2012.12.14. : 강릉중계소 개소(강원 강릉 일원 방송)
- 2012.12.30. : 대구중계소 개소(대구 일원 방송)
- 2014. 3.26. : 광주국악방송 개국(광주 일원 방송)
- 2015.12.29. : 제주국악방송 개국(제주시 일원 방송)
- 2015.12.29. : 서귀포국악방송 개국(서귀포시 일원 방송)
- 2017. 7.14. : 대전국악방송 개국(대전시 일원 방송)
- 2019. 3.13. : 충주국악방송 개국(충주 일부)
- 2019. 3.13. : 영동국악방송 개국(영동 일원 방송)
- 2019.12.27. : 국악방송TV 개국(kt지니tv ch.251)
- 2024.10.21. : 제천국악방송 개국(제천 일원 방송)
- 2024.11.21. : 특수법인 국악방송 설립(재단법인 국악방송 해산)
- 2025.12. 2. :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방발기금에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20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70	6,456	5,842	5,258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악방송
- 사업 수혜자 : 라디오 청취자 및 영상채널 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규프로그램 제작	보조	국악방송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특집프로그램 제작	보조	국악방송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	보조	국악방송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	국악방송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한국 음악의 명곡 명연주 제작	보조	국악방송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보조	국악방송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국악방송 지원

: ('25) 5,258백만원 → ('26) 0백만원, 5,258백만원 감액

- (요구)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 (산출) 정규프로그램 제작 0백만원
 특집프로그램 제작 0백만원
 국악 영상콘텐츠 제작 0백만원
 프로그램 제작지원 0백만원
 한국 음악의 명곡 명연주 제작 0백만원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시청자 및 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6.0	76.0	76.3	76.4	77.2	전년도 목표치 및 과거 5개년 실적 평균 중 높은 수치로 설정	국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및 청취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치의 평균	외부 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76.7	77.1	79.95	79.95	-			
	달성도	100.9	101.4	104.8	104.6	-			
지표명: 프로그램 제작 실적 (단위: 편)	목표	6,967	6,967	6,270	5,643	5,079	정부예산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	국악FM에 대해 지원한 보조금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편수	사업수행자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7,196	7,216	7,077	6,153	-			
	달성도	103.3	103.6	112.9	10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전통문화와 국악 관련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7,196편과 영상콘텐츠 579편을 제작하여 방송 및 웹으로 서비스 제공
2023	- 전통문화와 국악 관련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7,216편과 영상콘텐츠 745편을 제작하여 방송 및 웹으로 서비스 제공
2024	- 전통문화와 국악 관련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7,077편과 영상콘텐츠 960편을 제작하여 방송 및 웹으로 서비스 제공
2025	- 전통문화와 국악 관련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5,643편과 영상콘텐츠 437편을 제작하여 방송 및 웹으로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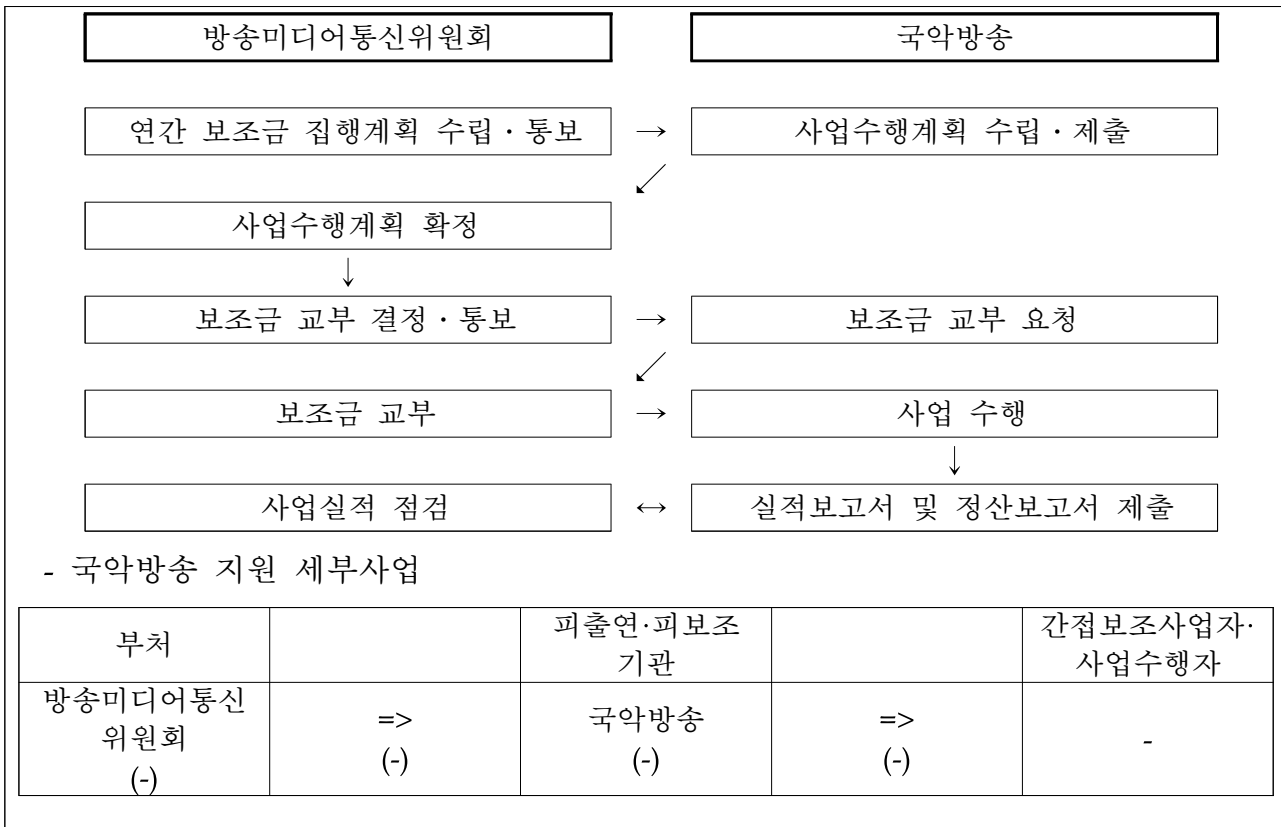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문체부에서 사업 지속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등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감독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최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과방위 '26예산 검토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악방송은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게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범위에 맞춰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과방위 '24결산 검토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예결위 '24결산 검토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에 2023년에 총 298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감사가 불가능한데, 매년 예산만 지원하고 있음(과방위 '23결산 시정요구)
 - 국회의 시정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동 사업을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일관

되게 편성 필요(예정처 '25예산 분석보고서)

-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과 예산 지원기관(방송통신위원회)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과방위 '22결산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5.3 재정사업자율평가 78.1점으로 '보통'
- '25.5 보조사업연장평가 '감축(일정수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470	-	6,470	-	6,470	6,470	100	100	-	-
2023	6,456	-	6,456	-	6,456	6,456	100	100	-	-
2024	5,842	-	5,842	-	5,842	5,842	100	100	-	-
2025	5,258	-	5,258	-	5,258	5,258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3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5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5,034	6,272	6,272	5,916	5,916	△356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34	5,034	5,304	-	-	6,272	6,272	6,272	-	-	5,916
·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2,223	2,223	2,223	-	-	2,713	2,713	2,713	-	-	2,713
·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2,811	2,811	2,811	-	-	3,559	3,559	3,559	-	-	3,2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법 제54조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 공사의 사회교육(한민족)방송과 대외(국제)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 사회교육(한민족)방송 : 한민족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제고하여 남북 교류 및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매체로 기능
 - 대외(국제)방송 :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정치·사회, 역사적 이슈를 11개 언어로 신속, 정확하게 제공,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채널
-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북한 주민과 북방 동포를 포함한 재외 한민족 대상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정규/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기타 사업 수행하여,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
-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외교 채널로서 한국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이슈에 대한 '한국의 창'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코리아 브랜드 제고하고,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전파를 통한 지속적 한류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법 제54조(업무) 및 제61조(보조금등)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업무)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48. 8월 : 국영방송으로 출범
- '73. 3월 : 한국방송공사로 출범 이후 매년 국고보조금 신청
- '05. 12월 : 국회 예결위, '06년 예산(안) 편성시 KBS 사회교육 및 대외방송 예산지원 결정
- '06. 1월 : 2005년 국회예산 승인으로 최초로 정부 지원 받음
- '09. 12월 : 국회 예결위, '10년 KBS 송신시설 교체비 예산지원 결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57	6,352	5,034	6,272	5,9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공사(KBS)
- 사업 수혜자 :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한국 문화·경제 등에 관심있는 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	한국방송 공사	2,713	100%	방송법 제54조 및 제61조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	한국방송 공사	3,203	100%	방송법 제54조 및 제61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사회교육방송 제작지원 : ('25) 2,713백만원 → ('26) 2,713백만원, 전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사회교육(한민족)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정규제작 2,446백만원 특집제작 170백만원 기타제작 97백만원 <p>② 대외방송 제작지원 : ('25) 3,559백만원 → ('26) 3,203백만원, △35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전파 등 대외(국제)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정규제작 1,850백만원 기타제작 1,353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프로그램 제작실적 (단위: 편)	목표	19,800	17,900	17,900	18,700	20,428	'25년 예산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KBS 대외방송에 지원한 보조금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편수	사업수행주체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23,285	24,540	20,805	21,493	-			
	달성도	117.6%	137.1%	116.2%	114.9%	-			
시청자 및 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1	83	83	87	87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 및 외부환경 등 고려하여 설정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 및 네티즌 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균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88.7	88.0	88.4	88.0	-			
	달성도	109.5%	106.0%	106.5%	101.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방송 : 28개 정규프로그램 및 11개 특집 프로그램(기획, 계기성 특집 포함) 제작, 한민족체험수기 공모사업, 방송모니터링 실시, 사회교육방송 모바일 앱 서비스 지속 실시, 북방동포사업지원 등 기타사업 시행 - 대외(국제)방송 : 11개 언어로 99개 정규 프로그램 및 5개 특집 프로그램(기획, 계기성 특집 포함) 제작, 다양한 인터넷·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 등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방송 : 26개 정규 프로그램 및 12개의 특집 프로그램 제작,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사업 및 방송모니터링 사업 실시 - 대외(국제)방송 : 11개 언어로 104개 정규 프로그램 및 8개 특집 프로그램 제작 완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달률 강화, 공공외교 채널로서의 공영성 및 공적 책무 수행, 세계인과 소통 강화를 통한 한류 확산과 코리아 브랜드 제고, '한국을 보는 창'으로서의 역할 수행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방송 : 25개 정규 프로그램 제작 - 대외(국제)방송 : 11개 언어로 72개 정규 프로그램 (계기성 특별 기획 포함) 제작 완료, 공공외교 채널로서의 공영성 및 공적 책무 수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 플랫폼 서비스 다변화를 통한 도달률 강화로 한류 확산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방송 : 26개 정규 프로그램 및 10개의 특집 프로그램 제작,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사업 및 방송모니터링 사업 실시 - 대외(국제)방송 : 11개 언어로 86개 정규 프로그램 (계기성 특별 기획 포함) 제작 완료, 디지털 뉴스 강화를 통한 공공외교 채널로서의 공영성 강화, 광복 80주년 기념 신규 프로그램 <광복 80, 대한민국> 정규 편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청취자층 확대 및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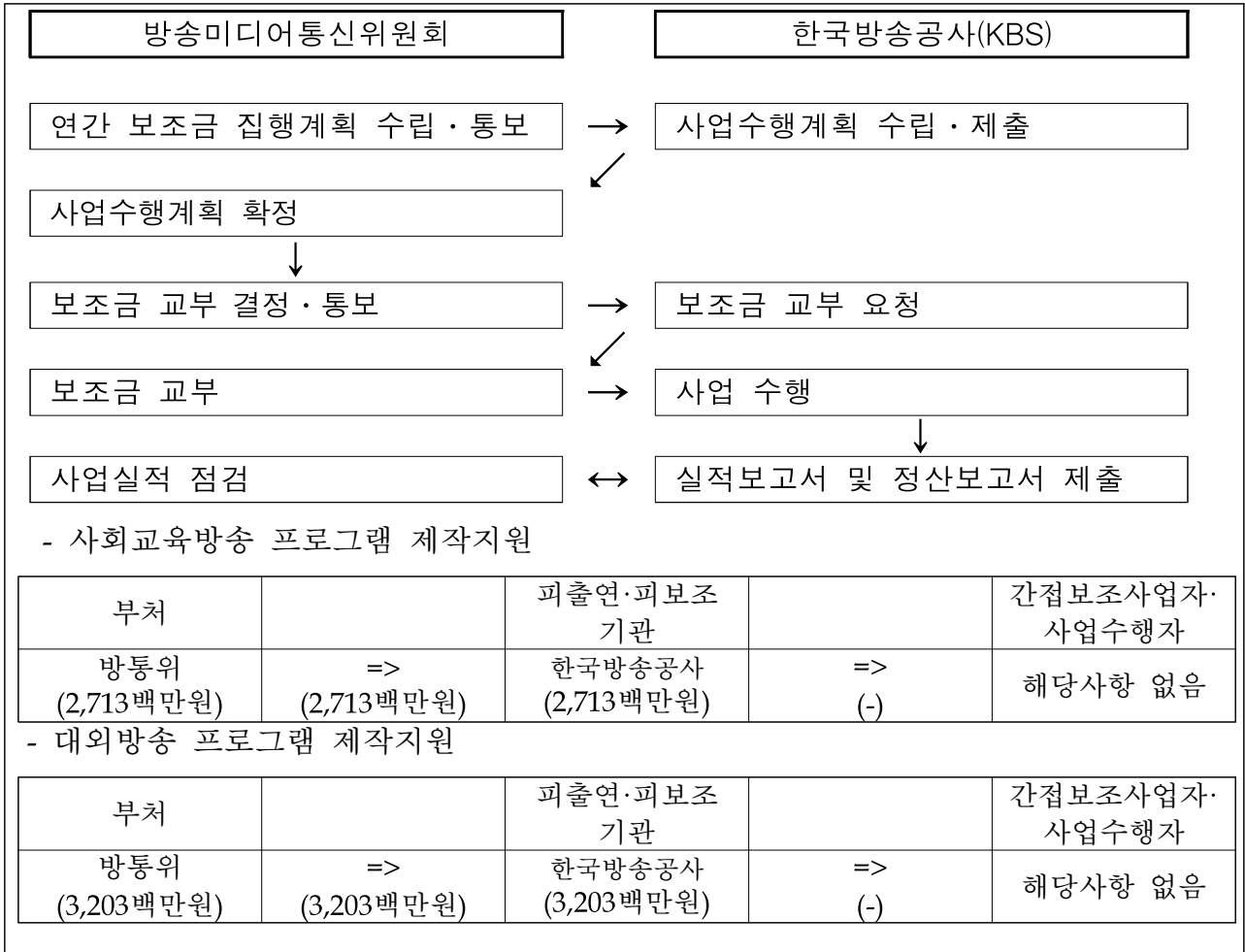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
- 전 세계 한민족 동포들의 한글사랑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세계적 수준의 K-컬처 범위 확대와 보급
- 평화적 남북관계 조성을 위한 정치, 외교, 경제적 현안 분석과 대안 제시
-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확산에 기여
-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한국 뉴스 와 정보 제공, 국제적 이슈에서 한국 주도의 여론 선도
- '한국을 보는 창'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Korea 브랜드 세계화
- 한류의 지속적 확산 및 한국어 세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057	-	7,057	7,057	7,057	100	-	-
2023	6,352	-	6,352	6,352	6,352	100	-	-
2024	5,034	-	5,034	5,034	5,034	100	-	-
2025	6,272	-	6,272	6,272	6,272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3131-308)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8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인프라지원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4,530	4,464	4,464	4,964	5,464	1,000	22.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30	4,530	4,530	-	-	4,464	4,464	4,464	-	-	5,464
· 프로그램 제작지원	3,900	3,900	3,900	-	-	3,900	3,900	3,900	-	-	4,900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360	360	360	-	-	324	324	324	-	-	324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지원	270	270	270	-	-	240	240	240	-	-	2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구현,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지역문화 창달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
- (프로그램 제작지원) 동 내역사업은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지역·중소방송 경쟁력·다양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중소방송사를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경쟁력 강화·신유형 프로그램 등 제작을 지원하는 것임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동 내역사업은 콘텐츠 유통역량이 약한 지역방송사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콘텐츠 마켓, 피칭포럼 참가 지원 및 번역, 자막 등 콘텐츠 재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지원) 동 내역사업은 급변하는 방송환경 대응과 지역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항, 제2항 제6호, 제8호, 제4항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제1항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3호, 제5의2호, 제6호, 제15호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② 추진경위

- '12. 2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에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 마련

- '14. 2월,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진*

* 사업명 변경: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14년)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15년)

- '14. 6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국회 미방위)

- '24. 1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4대 추진전략

: ①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②지역방송의 소통·협력 강화,

③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④공공성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

- '25년 대통령 공약사항(B-2-4-23,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30	4,530	4,530	4,464	5,4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지역·중소방송사 및 지역 시청·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	한국전파 진흥협회	4,900	100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324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지원			24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25) 4,464백만원 → ('26) 5,464백만원, +1,000백만원(+22.4%)

① 프로그램 제작지원 : ('25) 3,900백만원 → ('26) 4,900백만원, +1,000백만원(+25.6%)

- (요구) 지역시청자의 복지향상 및 국가 균형 발전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등 제작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TV 프로그램 4,500백만원
라디오 프로그램 400백만원

②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 ('25) 324백만원 → ('26) 32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콘텐츠 국내·외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현지어 자막, 번역·더빙 등 재제작, 국내·외 콘텐츠 마켓 및 해외 피칭포럼 참가 지원 등 지역방송 유통 확대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콘텐츠 마켓 등 참가 지원 204백만원
콘텐츠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120백만원

③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 ('25) 240백만원 → ('26) 2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역방송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방송환경 및 시청행태 변화 등에 따른 콘텐츠 기획·제작 등 방송 제작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맞춤형 교육과정 등 운영 180백만원
해외방송전문과정 지원 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7.4	87.6	87.8	88.0	88.2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감안하되, 최대 만족도 결과치 한계를 고려하여 목표치 산정	7점 리커트 척도 (100점만점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7.4	87.7	87.8	88.2	-			
	달성도	100	100.1	100	100.2	-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단위: 개)	목표	184	206	231	231	244	최근 4개년 참가 마켓 출품 수(목표치) 평균 증가량*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최근 4개년 연평균 증가량: 약 6%	국내외 참가한 콘텐츠 마켓에 출품된 우수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85	208	233	247	-			
	달성도	100.5	100.9	100.9	106.9	-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신규	80.0	최초 설정 목표치로 최소 '만족' 이상의 평균 평가점수 설정	5점 리커트 척도 (100점만점 환산)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개 지역·중소 방송사에 총 49개 프로그램 제작지원(TV 38편, 라디오 11편) - 다양한 지역뉴스와 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분야를 신설하고, OTT·AR·VR 등 신유형 콘텐츠 분야 지원 등 확대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사 23개 지역방송 프로그램 재제작 - 베트남(Telefilm), 싱가포르(ATF) 콘텐츠 마켓에 25개사 185개 프로그램 출품을 통한 9.1억원 판매성과 - DMZ Docs(한국), ATF(싱가포르) 피칭포럼 참관을 통한 해외 콘텐츠 동향 파악 및 지역방송 콘텐츠 기획 역량 강화 - 왓챠, 웨이브, 네이버TV 내 지역방송 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시청 기반 확대(총 129편)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드론 이론 및 촬영 등) 24회 및 전문가 컨설팅 100회 운영 - 총 476명 교육 참가 및 교육 만족도 92.6점 달성
------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지역·중소 방송사에 총 48개 프로그램 제작지원(TV 37편, 라디오 11편) - 다양한 국내외 공동제작 및 지역협업 제작 프로그램이 다수 선정되어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사 20개 지역방송 프로그램 재제작 - 베트남(Telefilm), 싱가포르(ATF) 콘텐츠 마켓에 25개사 208개 프로그램 출품을 통한 9.3억원 판매성과 - DMZ Docs(한국), ATF(싱가포르) 피칭포럼 참관을 통한 해외 콘텐츠 동향 파악 및 지역방송 콘텐츠 기획 역량 강화 - 왓챠, 웨이브, 네이버TV 내 지역방송 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시청 기반 확대(총 162편)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OIT 유통 전략 등) 26회 및 전문가 컨설팅 50회 운영 - 총 643명 교육 참가 및 교육 만족도 92.9점 달성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지역·중소 방송사에 총 40개 프로그램 제작지원(TV 37편, 라디오 3편) - 해외 방송사 및 지역방송사간 공동제작, 지자체·지역 내 기관 등과 협력 프로그램이 다수 선정되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특성을 담은 지역특화 문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사 21개 지역방송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 베트남(Telefilm), 싱가포르(ATF) 콘텐츠 마켓에 25개사 233개 프로그램 출품을 통한 판매 및 공동제작 협의 등 성과 - 지역방송사 기획 역량강화 및 피칭포럼 참가를 위한 워크숍, 컨설팅, 해외 피칭포럼(GzDocs) 참가접수 등 추진 - 왓챠, 웨이브, 네이버TV 내 지역방송 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시청 기반 확대(총 181편)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방송사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24회, 전문가 컨설팅 45회 및 해외전문과정 1회 운영 - 총 618명 교육 참가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지역·중소 방송사에 총 36개 프로그램 제작지원(TV 34편, 라디오 2편) - 국내외 공동제작 및 지자체·지역 내 기관 등과 협력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소멸, 광복 관련 우수 제작지원 프로그램 선정되어 다양한 소재를 담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사 19개 지역방송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 베트남(Telefilm) 마켓에 25개사 241개 프로그램 출품을 통한 판매 및 공동제작 협의 등 성과 - 싱가포르(ATF) 마켓에 25개사 247개 프로그램 출품을 통한 유통 및 공동제작 협의 등 성과 - 지역방송사 기획 역량강화 및 피칭포럼 참가를 위한 워크숍, 컨설팅 실시 - 왓챠, 웨이브, 네이버TV, LGU+ 내 지역방송 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시청 기반 확대(총 213편)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방송사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48회, 전문가 컨설팅 32회 및 해외전문과정 1회 운영 - 총 888명 교육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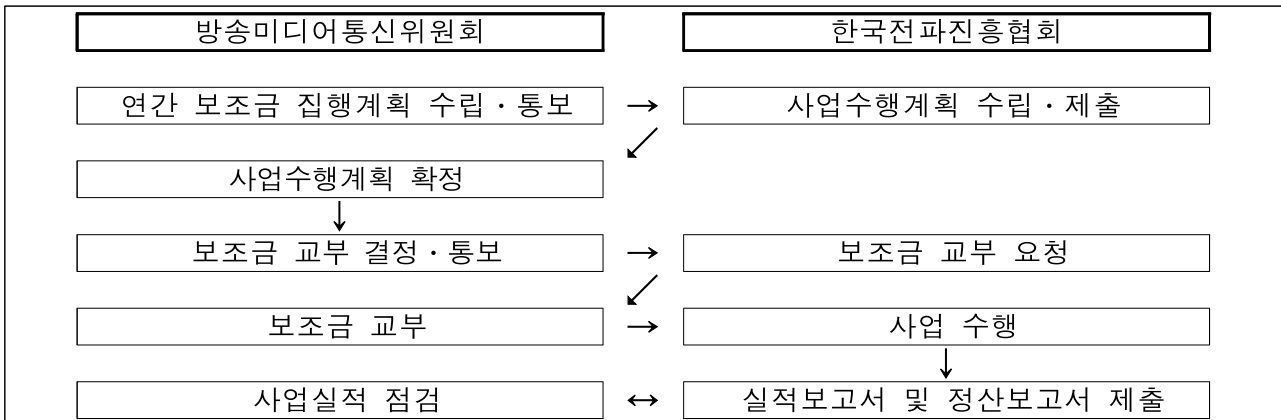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시청자 측면) 고품질의 다양한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을 통해 지역 시청자 복지향상 및 지역문화·정보 접근성 확대에 기여
 - 현실적인 지역민들의 문제, 관심사 등을 지역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진단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한 지역성 구현에 기여
- (산업적 측면)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콘텐츠 품질 제고 →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수익 창출 → 콘텐츠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발전기반 마련
 - 지역방송 콘텐츠의 고품질화를 통한 지역방송사 자생기반 조성으로 지역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프로그램 제작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900백만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4,900백만원)	=>	지역·중소방송 35개사

-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 등 2개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64백만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564백만원)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역방송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예결위, '23년)
 -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과방위, '24년 국정감사)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증액 필요(예결위, '25년)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530	-	4,530	4,530	4,530	100	-	-
2023	4,530	-	4,530	4,530	4,530	100	-	-
2024	4,530	-	4,530	4,530	4,530	100	-	-
2025	4,464	-	4,464	4,464	4,46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AM 라디오 송출 지원 (3131-32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2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인프라지원	AM 라디오 송출 지원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AM 라디오 송출 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AM 라디오 송출 지원	100	100	100	100	1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	100	100 [99]	-	-	100	100	100	-	-	100
· AM 라디오 송출 비용 지원	100	100	100 [99]	-	-	100	100	10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AM 라디오 송출 비용 지원) 공익적·공공적 유지 필요성이 있는 AM 라디오 방송에 대한 송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AM 라디오방송 운영 유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24년 AM 라디오 송출지원 사업 신규 추진 및 지원 대상 사업자 공모·선정
- 2025년 지원 대상 사업자 공모·선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00	100	1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라디오 방송 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M 라디오 송출 비용 지원	보조	한국전파 진흥협회	100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AM 라디오 송출 비용 지원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 전년동

① AM 라디오 송출 비용 지원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공익적 유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방송에 대한 송출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AM 라디오 송출비용 지원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AM 송출 지원 사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80	80	80	전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지원 방송사 만족도 조사 결과치 평균	조사결과보고서
	실적	-	-	80	84	-			
	달성도	-	-	100	10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AM 라디오 송출 방송사 지원
2025	AM 라디오 송출 방송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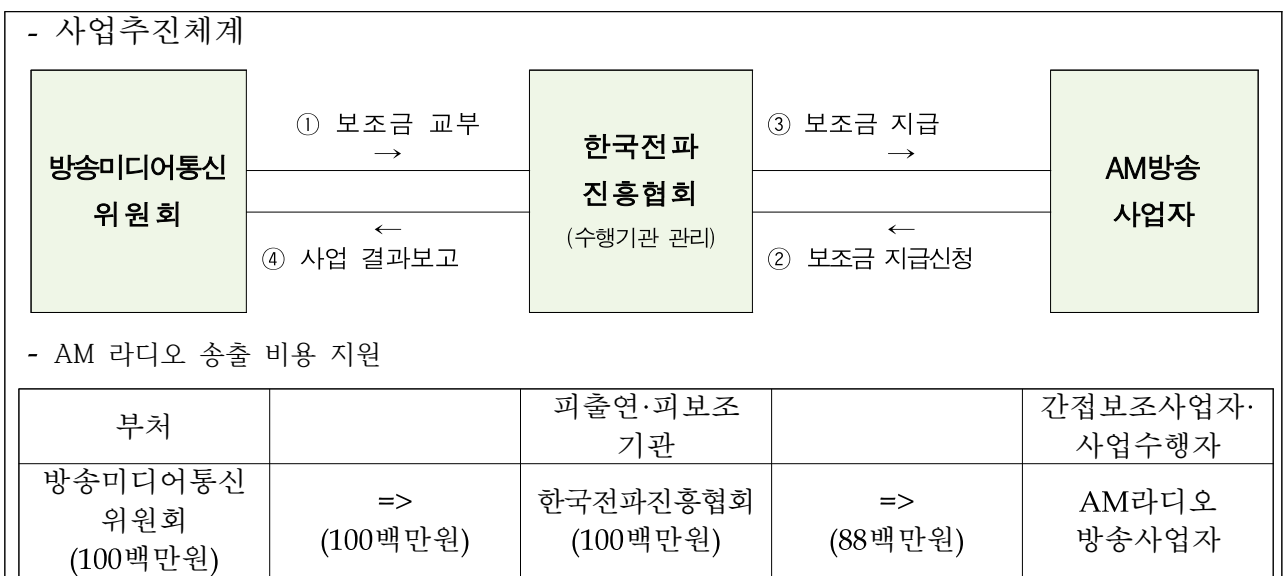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 FM 난시청 지역 등 방송 소외지역에 AM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 등 방송소외 지역 거주민의 청취권 및 방송의 공공성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23								
2024	100	-	-	100	100	100	-	-
2025	100	-	-	10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미디어다양성증진 (3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1
명칭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미디어다양성 증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미디어다양성 증진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미디어다양성 증진	3,290	3,290	3,290	2,155	2,155	△1,135	△3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90	3,290	3,290 [3,114]	-	-	3,290	3,290	3,290	3,290 [3,208]	3,290	3,290 [3,208]	-	-	2,155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853	853	853 [818]	-	-	853	853	853	853 [811]	853	853 [811]	-	-	내역사업 통합
· 시청점유율 조사	918	918	918 [783]	-	-	918	918	918	918 [892]	918	918 [892]	-	-	2,044
· N스크린 시청 기록 산출조사	1,361	1,361	1,361 [1,358]	-	-	1,361	1,361	1,361	1,361 [1,358]	1,361	1,361 [1,358]	-	-	내역사업 통합
· 시청점유율조사 분석 및 검증 등	158	158	158 [155]	-	-	158	158	158	158 [147]	158	158 [147]	-	-	1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디어다양성 증진) 시청점유율 제한규제*(방송법 제69조의2)의 시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산정 및 다양한 매체에 대한 TV시청기록을 조사

*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등으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방송시장의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시청점유율 조사)

- 기초조사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는 미디어 환경 다양화에 따른 시청행태를 파악하고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여, 향후 수행될 시청점유율 조사에 있어 표본

- 대표성 확보와 패널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조사 :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방송법 제69조의2)의 시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산정
 - 방송 프로그램 시청행태가 고정형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뿐 아니라, VOD 등 비실시간 시청행위로 다양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시청행태를 반영한 시청기록 조사
- (시청점유율조사 분석 및 검증 등) 시청점유율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연구 실시를 통해 시청점유율 조사의 방법론적, 통계적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9. 7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11~'23년, '1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90	3,990	3,290	3,290	2,15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방송시청자, 방송사업자, 광고주·광고대행사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	-	내역사업 통합	-	-
시청점유율 조사	보조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2,044	정액	-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	-	내역사업 통합	-	-
시청점유율 조사 분석 및 검증 등	보조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111	정액	-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시청점유율 조사* : ('25) 3,132 → ('26) 2,044백만원 [△1,088]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853), 시청점유율 조사(918),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273) 내역사업 통합

가.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853 → 853백만원 [-]

- 면접조사 (산출) 10,610가구 × 6.9만원 = 733백만원
- TV·신문이용행태조사 (산출) 60백만원 × 2회 = 120백만원

나.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점유율 조사 918 → 918백만원 [-]

- 실시간 방송조사 (산출) 2,750가구 × 2.7만원 × 12개월 = 903백만원
- 미디어다양성인식 조사 (산출) 15백만원 × 1건 = 15백만원

다. 고정형TV 비실시간 시청기록 조사* 1,361 → 273백만원 [△1,088]

- (산출) 273백만원 × 1건 = 273백만원
- * 기존 VOD·PC·스마트폰 실시간/비실시간 시청기록 조사 사업 중 고정형TV 비실시간(VOD) 시청기록 사업만 존치

② 시청점유율 조사 분석 및 검증 등 : ('25) 158 → ('26) 111백만원 [△47]

가. 시청점유율 조사 통합 검증연구* : 80 → 60백만원 [△20]

- (산출) 60백만원 × 1건 = 60백만원
- * 시청점유율 개선 및 N스크린 기록검증(40), 고정형TV 시청점유율 검증연구(20) 내내역사업 통합

나. 미디어다양성 조사 분석 : 78 → 51백만원 [△27]

- (산출) 51백만원 × 1건 = 5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단위: %)	목표	96.5	폐지	-	-	-	패널영업의 변동성을 고려, 전년도 목표치 대비 0.5%p 상향	[(패널실적치)/ (패널목표치)]x100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24.9	-	-	-	-			
	달성도	129.4	-	-	-	-			
시청점유율조사 표본 대표성 개선도 (단위: 점)	목표	신규	80	81	82	폐지	신규지표 첫 해 ('23) 달성도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목표치 1점 상향	100 - [(기초조사 표본 편향성 수준 x 0.2) + (TV 실시간 표본 편향성 수준 x 0.2) + (TV VOD 표본 편향성 수준 x 0.2) + (PC 표본 편향성 수준 x 0.2) + (스마트폰 표본 편향성 수준 x 0.2)]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80.1	81	82	-			
	달성도	-	100.1	81	-	-			
시청점유율조사 표본 균형성 개선도 (단위: 점)	목표	-	-	-	-	57	최근 3개년 실적치 및 신규지표임을 고려, 목표치 57점 설정	100 - [(기초조사 표본 편향성 수준 x 0.5) + (TV 실시간 표본 편향성 수준 x 0.5) +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수립('22.1.) · 202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22.1.~) ·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22.12.)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수립('23.1.) · 2023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23.1.~) ·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23.8.)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수립('24.2.) · 2024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24.1.~) ·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25.2월)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 수립('25.3.) · 2024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25.1.~) · 20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26.1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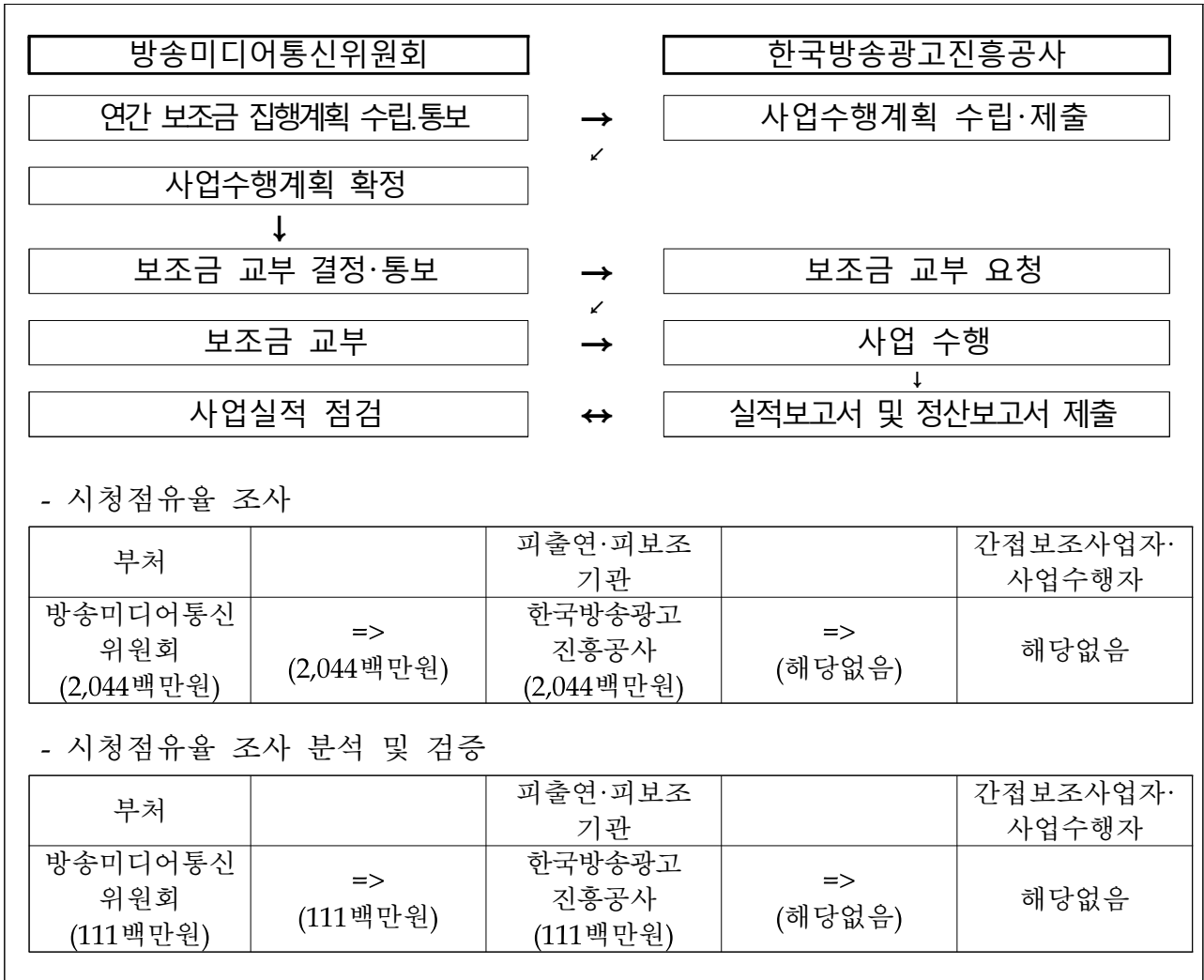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합리적인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한 여론 독과점 방지 등 미디어 다양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행 결과

- 평가결과 : 사업방식 변경
- 주요내용
 - (내역사업 조정) 시청점유율기초조사 및 시청점유율조사 내역사업은 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하어 별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OTT 등 변화하는 방송환경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통합 필요
 - (성과관리 개선) 중장기적 성과지표(시청점유율 표본 대표성 개선도)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치결과 : '26년 예산편성에 반영함

2)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7.9점)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산정하여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음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2.1점)
 -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조사 사업의 신뢰성 개선도를 검증하고 있으며, 사업 결과물인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대국민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490	-	3,490	-	3,490	3,490	100.0	100.0	-	-
2023	3,990	-	3,990	-	3,990	3,990	100.0	100.0	-	-
2024	3,290	-	3,290	-	3,290	3,290	100.0	100.0	-	-
2025	3,290	-	3,290	-	3,290	3,29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1)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3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2
명칭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468	457	457	457	45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8	468	468 [462]	-	-	457	457	457	457 [452]	457 [452]	457 [452]	-	-	457
· 방송시장경쟁 상황평가	468	468	468 [462]	-	-	457	457	457	457 [452]	457 [452]	457 [452]	-	-	4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IPTV 포함)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0. 3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근거 마련
- '10.~'11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예비 연구 수행
 - ※ '10년 및 '11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실시(정책연구 예산)
- '11. 7월 방송법 개정
 -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35조의5)
- '12.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시행
- '13.~'24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국회 보고(매년 3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9	379	468	457	45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정부, 방송사업자,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시장경 쟁상황평가	보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457백만원	정액	-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25) 457→ ('26) 457백만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조사 및 분석, 자료 구매, 설문조사 등 - (산출) 평가인력 : 245 → 245백만원 평가수행경비 : 89 → 89백만원 설문조사 : 123 → 12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추진실적 (점)	목표	100	100	100	100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내실화를 위한 회의개최 및 성과를 목표치로 설정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위원회 개최 건수 (3회 만점)x30) +(연구협력 전문가 회의 개최(4회 만점)x30)+(최종 보고서 발간(1건 만점)x40)	회의록 및 의견조사 결과, 최종보고서
	실적	100	100	100	-	-			
	달성도	100	100	100	-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실적 및 만족도(점)	목표	-	-	-	-	신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추진실적 및 전문 조사기관 만족도를 목표치로 설정	[추진실적(기본계획 마련여부*0.3+단위 시장획정여부*0.3+ 평가결과발표여부* 0.4)*0.5]+[만족도 (평가절차의 타당성*0.3+평가항목의 적절성*0.3+평가결과 활용성*0.4)*0.5]	추진실적 자료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1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국회 보고('22. 3월) · 제6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22. 6월)
2023	· '2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국회 보고('23. 1월)
2024	· '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국회 보고('24. 4월)
2025	· '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국회 보고('25.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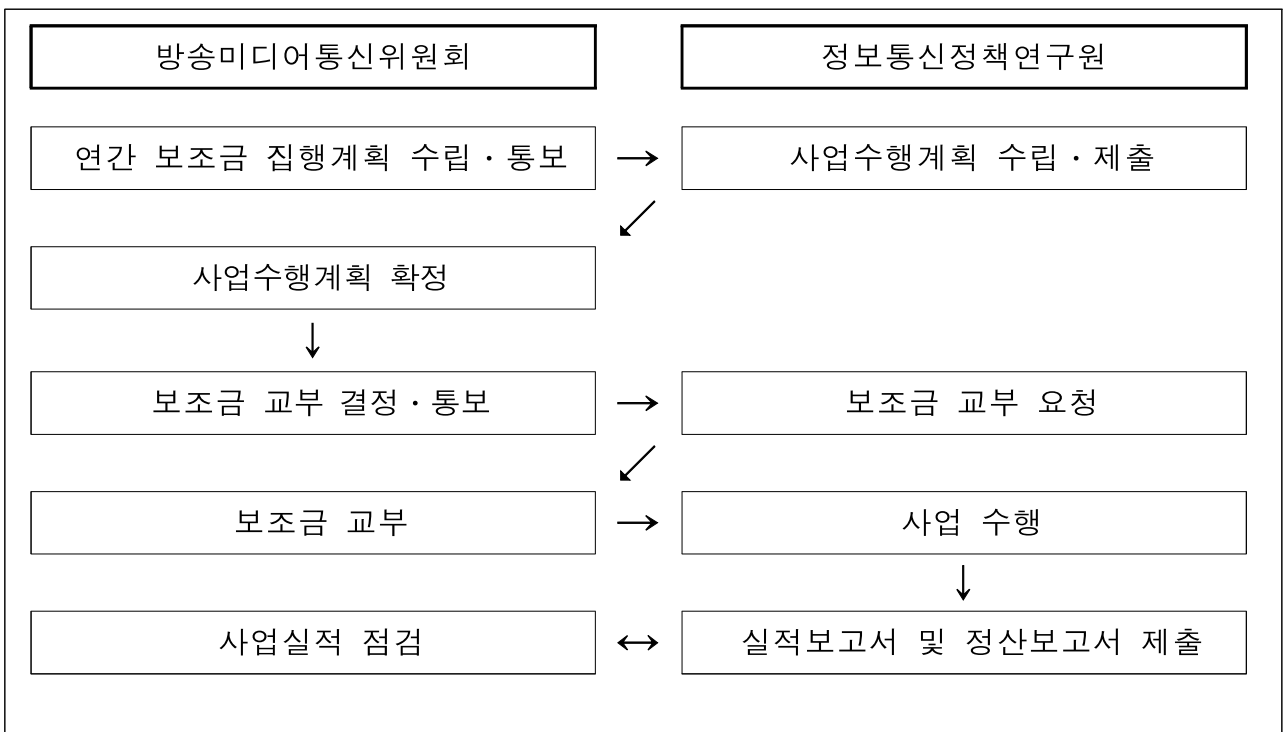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방송분야 경쟁·규제정책의 합리성 확보에 기여
- 방송시장과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457백만원)	=> (457백만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457백만원)	=> (해당없음)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p>○ 보조사업 연장평가('22.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의견) 사업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사업을 조정하고 단순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일 필요 - (조치) '23년 예산편성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내역사업을 기존 내역사업으로 통합 <p>○ 보조사업 연장평가('25.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의견) 사업운영 및 성과지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관리 및 연구성과의 실질적 정책 반영 효과가 있는 지표개선 필요 - (조치) '26년 예산편성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의 실질적 정책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개선함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79	-	379	-	379	379	100.0	100.0	-	-
2023	379	-	379	-	379	379	100.0	100.0	-	-
2024	468	-	468	-	468	468	100.0	100.0	-	-
2025	457	-	457	-	457	457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3132-308)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계정명	060	061
명칭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8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외계층방송 접근권보장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각 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음성인식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조성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소외계층방송접근 권보장	20,176	21,870	21,870	19,677	20,077	△1,793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176	20,176	20,176	-	-	21,870	21,870	21,870	-	-	20,077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	9,000	9,000	9,000	-	-	11,065	11,065	11,065	-	-	13,750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8,130	8,130	8,130	-	-	7,759	7,759	7,759	-	-	3,581
·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	646	646	646	-	-	646	646	646	-	-	646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1,700	1,700	1,700 [1,642]	-	-	1,700	1,700	1,700	-	-	-
·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접근 환경 조성	700	700	700 [642]	-	-	700	700	700	-	-	-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방송 시스템 조성	-	-	-	-	-	-	-	-	-	-	2,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을 돕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이용 맞춤형 TV 보급, 기술 개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이용 방송수신기(TV) 보급 및 활용 실태조사, 맞춤형TV 전용 리모컨 개발 등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방송사업자의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방송) 제작 지원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이행 모니터링 및 실적 평가,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 격차 해소 기여
-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수어영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 방송서비스 운영 등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
-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조성)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단계별 개발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대상 의견수렴 등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의 국민참여)

-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국정과제 7.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 o 실천과제 3.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권익 제고)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자막표시, 음성안내 등) TV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방송) 제작 지원 및 리모컨 개발 등을 통한 편의성 개선
 - 장애인 방송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시청각장애인→전체 장애인) 하고 장애인 방송제도 개선 및 품질평가를 통해 장애인방송 품질제고 추진
 - 수어방송 품질제고를 위해 ‘공공영역 전문수어통역 인증제’(보건복지부 주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00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시작
- '02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시작
- '06년 방송수신기 활용 실태조사 실시
- '15~'17년 저소득층 보급 확대를 위한 광역시·도 지자체 MOU 체결
- '20년 유료방송 장애인 방송 셋톱 호환 기술 개발 추진(KT)
- '21년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누적보급률 100% 달성
유료방송 장애인 방송 셋톱 호환 기술 개발 추진(SKB)
- '22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추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139,348대 누적 보급)
유료방송 장애인방송 셋톱 호환 기술 개발 추진(LG U+)
- '23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추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159,928대 누적 보급)
유료방송 장애인방송 셋톱 호환 기술 개발 추진(LG헬로비전)
- '24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추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191,928대 누적 보급)
- '25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추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226,928대 누적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06~'08년 지상파방송사 및 공익 PP 지원('06년 9사, '07년 22사, '08년 28사 지원)
- '08.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 '11년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화('11.7월 방송법 개정),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11.12월)
- '20년 장애인방송 VOD 제작지원 시범사업 시행(KBS·MBC·SBS)
- '21년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방송 제작지원(93개사), VOD 제작지원 확대(EBS 추가)
교육방송물(3,799편)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42편) 제작·보급
- '22년 '2022년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장애인방송 제작지원(91개사), VOD 제작지원 확대(JTBC, TV조선 추가)
장애인방송 고시 일부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7호, '22.12.20)
교육방송물(4,400편)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43편) 제작·보급
- '23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9개사), VOD 제작지원 확대(채널A, MBN 추가)
교육방송물(4,384편)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48편) 제작·보급
- '24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9개사), VOD 제작지원 확대(총 10개사, 연합뉴스, YTN 추가)
교육방송물(4,194편)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58편) 제작·보급
- '24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7개사), VOD 제작지원 확대(총 10개사)
교육방송물(4,491편)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63편) 제작·보급
- '25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7개사), VOD 제작지원(총 10개사) 및 방송사별 장애인 서비스 웹페이지 표준안 마련, 장애인 교육방송물(4,491편)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63편) 제작·보급,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 마련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 '14.11월 지상파(KBS) 실험방송 실시 및 기술방식 검증
- '14.12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기술표준안 개발 완료
- '15. 4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송·수신정합 기술표준 제정
- '15.11~12월 유료방송 매체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실험방송 실시
- '16~'18년 참여사업자 확대 및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시범방송 실시
- '19. 7월~ 스마트 수어방송 본서비스 개시

- ※ 채널 : KBS·MBC·SBS·YTN·JTBC·TV조선, 플랫폼 : SKB·LG헬로비전·KTSkyllife
- '20년.12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기술표준 개정(R3)
 - ※ UHD 방송 서비스 환경에서의 자막 방송 송수신 규격 추가
- '23년.12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기술표준 개정(R4)
 - ※ 장애인 시청 편의 기능 요구사항 추가
- '24년.12월 방송 수신기의 음성 안내 기능 기술표준 개정(R2)
 - ※ 음성인식 기능 추가
- '25년.12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기술표준 개정(R5)
 - ※ EPG 및 재난방송 인지 향상을 위한 기능 추가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 '18. 4월 국민 사업 제안 및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제안명)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용 방송수화, 자막 시스템 개발

(제안내용) 유료방송과 VOD, 인터넷 등 신규미디어에서 아직 자막, 수화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여, 최근 발전된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자막 및 수화방송을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 개발 요구

- '18. 5월~ 예산안 요구 및 제안사업 논의(예산국민참여단 발족)
- '18. 8월 제안사업 선정 및 정부 예산안 반영
- '19. 1월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착수
- '19.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1차 시제품 제작 완료
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 환경 조사 완료
- '20.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2차 시제품 제작 완료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1차 시제품 시범서비스 완료
- '21.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3차 시제품 제작 완료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수어번역 기능 고도화를 위한 병렬말뭉치 제작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시제품(이어쥬) 1차 시범서비스 추진
- '22.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4차 시제품 제작 완료
음성-자막-수어 통합 앱 개발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제작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시제품(이어쥬) 2차 시범서비스 추진
- '23. 12월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5차 시제품 제작 완료
음성-자막-수어 통합 앱 안정화 개발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2차 구축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시제품(이어쥬) 3차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시제품(이어쥬-아바타수어) 1차 시범서비스 추진
- '24년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6차 시제품 제작 완료
음성-자막-수어 통합 앱 안정화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3차 구축
이어쥬(자막) 앱 배포 및 이어쥬(수어) 2차 시범서비스 추진
이용자 대상 이어쥬 앱 자막, 수어 기능 의견수렴 조사 실시

- '25년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고도화 완료(7차)
-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고도화 완료(4차)
- 음성-자막-수어 변환 통합 앱(이어줌) 배포
- 이용 편의성 측정을 위한 이용자 의견수렴 조사 문항 개선 및 조사 실시
- 통합 앱 서비스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외부기관 연계 홍보활동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568	15,718	20,176	21,870	20,077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보조	시청자 미디어 재단	13,750	정액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보조	시청자 미디어 재단	3,581	정액	-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	보조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646	정액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조성	보조	시청자 미디어 재단	2,100	정액	-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25) 11,065백만원 → ('26) 13,750백만원, (+2,685백만원, +24.3%)**
- (요구) 국정과제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 전용 방송수신기(TV) 단가 인상 및 물량 확대, 전용 리모컨 개발 및 만족도 조사
 - (산출) 시각·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37,000대 × 34.5만원 = 12,765백만원(1,740백만원, +15.8%)
 방송수신기 전용 리모컨 편의기능 개선 및 구조 개발 : 945백만원 × 1식 = 945(순증)
 시각·청각장애인용TV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40백만원 × 1건 = 40(전년 등)
- ②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25) 7,759백만원 → ('26) 3,581백만원, (△4,178백만원, △53.8%)**
- (요구) 방송사업자 대상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산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 : 1,852백만원 (△3,413백만원, △64.8%)
 - 장애인방송물(지상파, 유료방송) 제작 지원 등 : 1,369백만원 (△3,413백만원, △71.4%)
 - 장애인방송 인식 및 품질 제고 : 483백만원 (0)
 - (산출)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 425백만원 (△765백만원)
 - (산출) EBS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 372백만원 (0)
 - 청각장애인용 교육방송물 보급 : 37백만원 → 20백만원 (△17백만원, △45.9%)
 - 시각장애인용 교육방송물 보급 : 330백만원 → 344백만원 (+14백만원, +4.24%)
 - 홈페이지 운영 : 5백만원 → 8백만원 (+3백만원, +60%)
 - (산출)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보급 : 564백만원 (0)
 - 기존 방송물 재제작·보급 지원 : 200백만원 → 200백만원 (0)
 - 신규 방송물 제작·보급 확대 : 364백만원 → 364백만원 (0)
 - (산출) 장애인 방송접근환경 조사 : 368백만원 (0)
 - 장애인방송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50백만원 (0)
 -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25백만원 (0)
 - 지역사회 장애인방송 제작 활성화 : 93백만원 (0)
- ③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 내역: ('25) 646백만원 → ('26) 64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장애인방송 기술표준 보완 및 검증 지원 및 스마트 수어방송 참여 사업자 지원
 - (산출) 장애인방송 기술표준 보완 및 검증지원 : 125백만원 (0)
 - 기술표준 보완 : 60백만원 → 60백만원
 - 지원 환경구축 : 65백만원 → 65백만원
 - (산출) 스마트 수어방송 참여 사업자 지원 : 521백만원 (0)
 - 스마트 수어방송 참여사업자 지원(9개 사업자) : 500백만원 → 500백만원 (0)
 -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적용 지원 : 21백만원 → 21백만원 (0)
- ④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조성: ('25) 2,400백만원 → ('26) 2,100백만원, (△300백만원, △12.5%)**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내역사업과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환경 조성' 내역사업 통합에 따른 예산 조정 (※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내용 반영)
 - (요구)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 (산출)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 1,400백만원 (△300백만원)
 -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 : 1,100백만원(△300백만원)
 - 시제품 검증용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300백만원 (0)
 - (요구) 음성·자막·수어 변환 앱 서비스 운영·유지 및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등
 - (산출)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접근 환경 조성 : 700백만원 (0)
 - 서비스 운영 및 홍보 : 250백만원 (△50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 : 450백만원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수신기 시·청각장애인 전체 누적 보급률 (단위 : %)	목표	- (35)	- (40)	- (45)	- 32	36*	시각·청각장애인의 증가추세 반영 및 맞춤형TV 보급 실적 현실화 (기존 보급 목표율) * '13년 이전 보급한 셋톱 박스를 실적에서 제외	(전체 누적보급 대수 /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수) x100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37	40.2	45.1	32.6	-			
	달성도	105.7	100.5	100.2	-	-			
장애인방송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94.5	95	폐지	-	-	폐지	(자막방송만족도x0.87)+(수어방송만족도x0.04)+(화면해설방송만족도x0.09)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94.5	95.1	-	-	-			
	달성도	100	100.1	-	-	-			
장애인방송 편성분량 (단위 : 시간)	목표	-	신규	750,000	760,000	718,000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사업자의 제공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장애인방송 필수지정방송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분량	장애인방송시 청보장위원회 의결
	실적	-	-	771,004	-	-			
	달성도	-	-	102.8	-	-			
음성-자막 변환 시스템 시제품 음성인식률 (단위 : %)	목표	87	89	90	폐지	폐지	폐지	음절단위 인식률 측정 산식에 따름 $(1 - \frac{S+D+I}{N}) \times 100$ * N : 전체음절수 S : 잘못된인식된 음절수 D : 빠진 음절수 I : 잘못된 추가된 음절수	전문 시험기관 결과보고서
	실적	88	89.2	90.2	-	-			
	달성도	101	100.3	100.2	-	-			
음성 변환 앱 서비스 국민 참여 및 소통 (단위 : 건)	목표	9	10	11	12	폐지	전년 목표치 대비 10% 증가	수혜자 의견수렴 횟수, 홍보 실적, 정보제공 실적 등 합산	사업 결과 보고서
	실적	9	10	11	12	-			
	달성도	100	100	100	100	-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학습 데이터 확대 (단위 : 건)	목표	-	-	-	신규	750,000	'25년 기준 누적 학습데이터의 5% 상향 값으로 설정	학습 문장 누적 데이터 수 + 수어 단어 누적 데이터 수	사업 결과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음성-자막 변환 앱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75.7	79.5	81.1	81.5	82.3	전년 목표치 대비 1% 증가	서비스 종합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7점 척도 기준) *종합만족도 측정산식 = (기능만족도x0.33)+(디자인만족도x0.33)+(서비스만족도x0.33)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78.6	81.2	81.4	81.8	-			
	달성도	103.8	102.1	100.3	10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p>2022</p>	<p>[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스마트TV) 15,300대 보급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성능개선(높은 음량에 대한 안내경고, 채널변경 시 장애인방송 유형 안내, 폐쇄자막 폰트 변경 등) · 유료방송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셋톱 호환성 기술 개발(LG U+) <p>[장애인방송 제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91개사) · 장애인 교육방송물(4,400여편) 및 발달장애인용 방송물(43편) 제작·보급 ·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 확대(KBS·MBC·SBS·EBS·JTBC·TV조선) <p>[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사업자(6개 채널(KBS·MBC·SBS·JTBC·TV조선·YTN)), 3개 플랫폼(SKB·LG헬로비전·KTSkylife) 스마트 수어방송 실시 <p>[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인식 기반 음성-자막 변환 4차 시제품 제작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구축 ※ '21년 시범서비스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음성인식률 고도화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검증용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p>[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 대상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확대 실시 ※ (기간) '22.7~12월 (대상) 안드로이드OS·iOS 기반 기기 이용 시청각장애인
<p>2023</p>	<p>[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스마트TV) 20,580대 보급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성능개선(장애인 특화기능 즐겨찾기 메뉴) · 유료방송 장애인방송 특화기능 셋톱 호환성 기술 개발(LG 헬로비전) <p>[장애인방송 제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9개사) · 장애인 교육방송물(4,384여편) 및 발달장애인용 방송물(48편) 제작·보급 ·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KBS·MBC·SBS·EBS·JTBC·TV조선·MBN·채널A) <p>[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사업자(6개 채널(KBS·MBC·SBS·JTBC·TV조선·YTN)), 3개 플랫폼(SKB·LG헬로비전·KTSkylife) 스마트 수어방송 실시 <p>[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인식 기반 음성-자막 변환 5차 시제품 제작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2차 구축 ※ '22년 시범서비스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음성인식률 고도화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검증용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p>[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p>2024</p>	<p>[방송소의계층 방송접근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스마트TV) 32,000대 보급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성능개선(적·녹·청색 및 흑백 필터 개발) <p>[장애인방송 제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9개사) · 장애인 교육방송물(4,194편) 및 발달장애인용 방송물(58편) 제작·보급 ·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 확대(8개사'23년→10개사'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KBS·MBC·SBS·EBS·JTBC·TV조선·MBN·채널A → ('24년) +YTN,연합뉴스 · 지역 장애인방송 제작 활성화 사업 추진(5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협업(부산·광주·강원·대구·경남) <p>[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사업자(6개 채널(KBS·MBC·SBS·JTBC·TV조선·YTN), 3개 플랫폼(SKB·LG헬로비전·KTSkylife) 스마트 수어방송 실시 · 장애인 시청 편의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 표준에 추가(방송수신기의 음성 안내 기능 개정-TTAK.KO_07.0132/R2) · EPG 및 재난방송 인지 향상을 위한 기능을 기술 표준에 추가(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개정-TTAK.KO_07.0093/R5) <p>[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인식 기반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6차 제작 및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3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시범서비스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음성인식률 고도화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변환 검증용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p>[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 대상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및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추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자막 : (기간) '24.7~12. (대상) 안드로이드OS·iOS 기반 기기 이용 시청각장애인 자막-수어 : (기간) '24.9~12. (대상) 안드로이드OS·iOS 기반 기기 이용 시청각장애인
<p>2025</p>	<p>[방송소의계층 방송접근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스마트TV) 35,000대 보급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성능개선(TV크기 확대, 인식속도 개선) <p>[장애인방송 제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총 57개사) ·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총 10개사, 지상파 4개사, 보도·종편PP 6개사) · EBS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지원(4,491편) 및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제작·보급 지원(63편) <p>[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사업자(6개 채널(KBS·MBC·SBS·JTBC·TV조선·YTN), 3개 플랫폼(SKB·LG헬로비전·KTSkylife) 스마트 수어방송 실시 <p>[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인식 기반 음성-자막 변환 7차 시제품 제작 및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4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시범서비스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음성인식률 고도화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검증용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p>[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음성 변환시스템 이용자 의견수렴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앱 서비스 개선 및 '25년 이용자 의견수렴 조사 추진(편의성 측정 문항 신규 반영) · 음성-자막-수어 변환 통합 앱 배포 완료, 서비스 이용 안내를 위한 홍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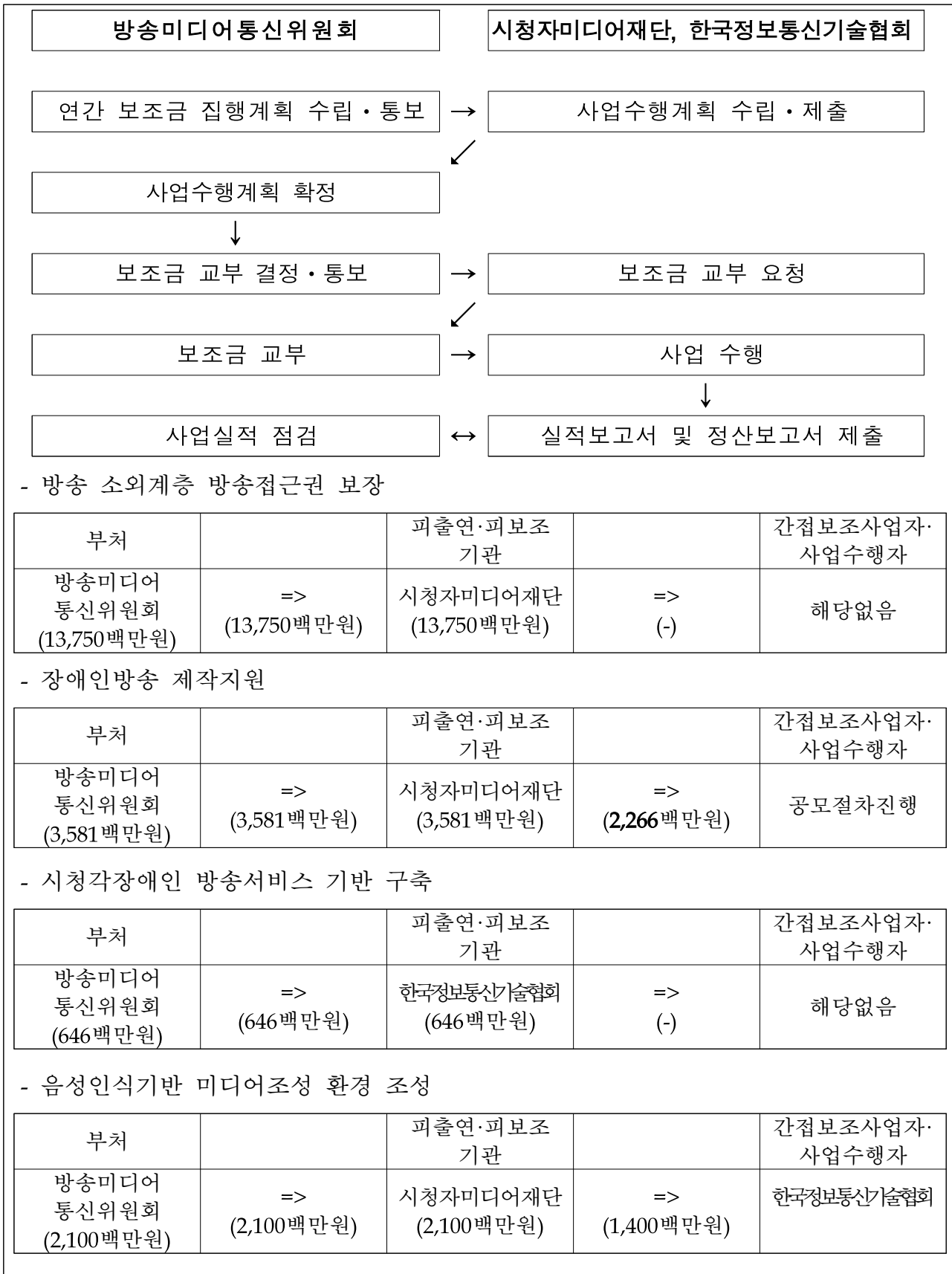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방송수신기(TV)의 보급 및 방송수신기(TV)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리모컨 개발·보급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
-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장애인 교육방송물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 격차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방송접근권 인식 제고
- 수어 화면 제어(위치·크기조정 등)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드라마·예능 등 주요 시간대 편성을 확대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증대
- 음성-자막-수어 변환 통합 앱 서비스(이어쥬) 운영 및 기능 고도화로 청각장애인의 모바일 미디어 접근성 지속 확대
-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을 통해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내역사업과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내역사업을 통합하고 사업관리 개선 노력이 필요함('24회계연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Hub 내 이미 공개된 학습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예산 일부를 절감할 수 있을 것('23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568	-	-	13,568	13,568	100.0	-	-
2023	15,718	-	-	15,718	15,718	100.0	-	-
2024	20,176	-	-	20,176	20,176	100.0	-	-
2025	21,870	-	-	21,870	21,87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	-

사 업 명
(13)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3132-309)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 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9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언론중재 위원회 지원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언론중재위원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언론중재 위원회 지원	13,802	14,545	14,545	14,719	14,819	274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802	13,802	13,802	-	-	14,545	14,545	14,545	-	-	14,819
· 인건비	8,229	8,229	8,229	-	-	8,476	8,476	8,476	-	-	8,773
· 경상비	2,718	2,718	2,718	-	-	2,740	2,740	2,740	-	-	2,703
· 사업비	2,855	2,855	2,855	-	-	3,329	3,329	3,329	-	-	3,3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언론중재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의 심의 등 법정직무 수행 지원
 - (인건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 인건비 지원
 - (경상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등 운영경비 지원
 - (사업비) 언론분쟁 관련 조정중재 신청 처리(언론중재법 제18조), 시정권고(언론중재법 제32조), 선거기사심의(공직선거법 제8조의3) 등 법정업무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의 사업 수행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자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자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80. 12. 「언론기본법」 제정,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 '81. 3.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조정 및 심의업무 실시
- '87. 11. 「언론기본법」 폐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00.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現 공직선거법) 개정,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05.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조정 외 중재업무 실시
- '09.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 확대
 - ※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 '10. 1. 「공직선거법」 개정,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964	13,186	13,802	14,545	14,81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언론중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고 조정신청을 한 개인 또는 단체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건비	보조	언론중재 위원회	8,773	정액	-
경상비			2,703		
사업비			3,343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5) 8,476백만원 → ('26) 8,773백만원, 297

- 기존인력(100인) : 8,476 → 8,773백만원(297)
- * 처우개선비 3.5% 반영(297)

② 경상비 : ('25) 2,740백만원 → ('26) 2,703백만원, △37

- 운영비 : 2,333 → 2,326백만원(△7)
- * 공공요금 및 제세(4), 임차료(16), 시설장비유지비(10), 복리후생비(7), 관리용역비(3) 증액 소요분 반영, 일반수용비(△26), 특근매식비(△19), 차량비(△2) 지출구조조정
- 여비 : 48 → 28백만원(△20)
- * 국내여비(△15), 국외교육여비(△5) 지출구조조정
- 업무추진비 : 110 → 110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 210 → 210백만원
- 보전금 : 3 → 3백만원
- 유형자산 : 36 → 26백만원(△10)
- * 지출구조조정(△10)

③ 사업비 : ('25) 3,329백만원 → ('26) 3,343백만원, 14

- 조정 및 심의 : 2,371 → 2,407백만원(36)
 - 조정·중재심리 : 526 → 526백만원
 - 시정권고소위 : 579 → 605백만원(26)
 - * 심의원 최저임금 반영 및 사례집 제작비 확대 편성(26)
 - 선거기사심의 : 81 → 103백만원(22)
 - * 운영기간 확대(6→8개월)에 따른 위원 직무활동비 등 확대편성 및 심의원 최저임금 반영(22)
 - 중재위원 회의체 : 37 → 37백만원
 - 위원직무수당 : 607 → 595(△12)
 - * 위원장 직무수당 감액편성(△12)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 541 → 541백만원
- 조사 및 연구 : 702 → 680백만원(△22)
 - 토론회 : 6 → 6백만원
 - 중재위원연수 : 26 → 26백만원
 - 발간 및 자료관리 : 142 → 120백만원(△22)
 - * 지출구조조정(△22)
 - 국제협력사업 : 101 → 101백만원
 - 이용만족도조사 : 27 → 27백만원
 - 제도연구센터 : 400 → 400백만원
- 홍보 및 교육 : 256 → 256백만원
 - 홍보 : 147 → 147백만원
 - 교육 : 109 → 10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언론분쟁 피해구제율 (단위:%)	목표	63.5	64.0	64.5	65.0	68.0	'25년도 목표치 65.0%에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권고를 반영한 목표치(+3.0%p) 68.0% 책정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100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자체 통계자료)
	실적	67.8	73.9	72.0	70.5	-			
	달성도	106.8	115.5	111.6	108.5	-			
언론조정중재제도 이용자 만족도 (단위:점)	목표	폐지	신규	83.2	83.4	83.8	'25년도 목표치 83.4점에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권고를 반영한 목표치(+0.4점) 83.8점 책정	(조정중재신청인 만족도+조정중재 피신청인만족도+상당이용자만족도+교육수강자만족도) /4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	-	83.3	83.6	-			
	달성도	-	-	100.1	10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조정사건 3,175건, 상담 3,329건, 시정권고 1,239건, 교육 265회 실시
2023	o 조정사건 4,085건, 상담 3,995건, 시정권고 1,158건, 교육 281건 실시
2024	o 조정사건 3,937건, 상담 4,133건, 시정권고 942건, 교육 257건 실시
2025	o 조정사건 4,023건, 상담 3,865건, 시정권고 1,049건, 교육 300건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통한 방송·통신 등 언론피해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국민권의 향상 도모함으로써 언론분쟁 피해구제율 목표 달성도 100% 상회
- 원스톱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 매체 및 SNS를 통한 잘못된 언론 보도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해 언론조정중재제도 이용자 만족도 목표 달성도 100% 유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당해년도 확정예산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언론중재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사업수행계획 승인 및 사업비 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 사업비 청구 및 지급		언론중재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중간보고서 제출		언론중재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언론중재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인건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773백만원)	=> (8,773백만원)	언론중재위원회 (8,773백만원)	=> (-)	-

- 경상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703백만원)	=> (2,703백만원)	언론중재위원회 (2,703백만원)	=> (-)	-

- 사업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343백만원)	=> (3,343백만원)	언론중재위원회 (3,343백만원)	=> (-)	-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 편성·집행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 보다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예산지원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22결산 과방위 검토보고서)
 - 개별 중재부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24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된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의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함(‘26예산 과방위 부대의견)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964	-	12,964	12,964	12,964	100.0	100.0	-
2023	13,186	-	13,186	13,186	13,186	100.0	100.0	-
2024	13,802	-	13,802	13,802	13,802	100.0	100.0	-
2025	14,545	-	14,545	14,545	14,545	100.0	100.0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6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0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건비, 경상비, 방송심의 활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활동	소관부처	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지원	36,052	33,040	33,630	34,893	34,751	1,121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560	36,560	36,052		508	33,040 [590]	33,630	32,724		906	34,751
· 인건비	20,817	20,817	20,552		265	21,468	21,468	20,969		499	22,047
· 경상비	5,186	5,186	5,143		43	3,745 [590]	4,335	4,335			4,730
· 방송심의 활동	7,346	7,346	7,146		200	4,577	4,577	4,293		284	4,698
· 통신심의 활동	3,211	3,211	3,211		0	3,250	3,250	3,127		123	3,2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법정직무 수행 지원
 - (인건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제외) 및 사무처 임직원 보수 및 법정부담금
 - (경상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울 및 5개 지역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 (방송심의 활동)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심의 등 법정직무 수행경비
 - (통신심의 활동)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분쟁조정 등 법정직무 수행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② 추진경위

- '08.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25.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139	36,824	36,560	33,630	34,75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건비	민간 경상 보조	방송미디어 어통신 심의위원회	22,047	정액	-
경상비			4,730		
방송심의 활동			4,698		
통신심의 활동			3,276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 ('25 추경) 33,630백만원 → ('26) 34,751백만원, 1,121백만원 증액</p> <p>① 인건비 : ('25) 21,468백만원 → ('26) 22,047백만원, 579백만원 증액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제외) 및 사무처 임직원 보수 및 법정부담금 ※ 공공기관 인건비 공통인상률 3.5% 반영</p> <p>② 경상비 : ('25) 4,335백만원 → ('26) 4,730백만원, 395백만원 증액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울 및 5개 지역사무소 운영 기본경비</p> <p>③ 방송심의 활동 : ('25) 4,577백만원 → ('26) 4,698백만원, 121백만원 증액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심의 등 법정직무 수행경비 · 방송심의 지원 : 3,031백만원, 121백만원 증액 ※ 모니터요원 최저임금 인상분 등 반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기간 확대(6개월→8개월) 반영 ·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 : 236백만원 ·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 운영 : 1,431백만원</p> <p>④ 통신심의 활동 : ('25) 3,250백만원 → ('26) 3,276백만원, 26백만원 증액 -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분쟁조정 등 법정직무 수행경비 · 통신심의 지원 : 1,802백만원, 26백만원 증액 ※ 모니터요원 최저임금 인상분 등 반영 · 이용자 권익보호 : 119백만원 ·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 484백만원 ·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 체계구축 : 831백만원 · 국제협력 강화 : 40백만원</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통신심의활동 효과 만족도(단위 점)	목표	67.2	67.3	67.4	63.9	65.9	방송·통신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와 최근 3년도 실적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8개 측정항목, 7점 척도 환산 점수의 평균 * 측정항목 ①방송프로그램 품질저하방지 기여도 ②심의규정위반 방송프로그램 제재수준 적절성 ③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기여도 ④불법유해정보 제재수준 적절성 ⑤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만족 ⑥방송통신심의활동의 서비스 품질 ⑦방송통신심의활동의 사회적 책임 ⑧방송통신심의활동 성과 평가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68.1	67.5	63.8	65.5	-			
	달성도	101.3	100.3	94.5	102.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 770건 및 제재건수 676건 · 통신심의 248,130건 및 시정요구 234,263건 · 명예훼손 분쟁조정 593건,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1,209건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 933건 및 제재건수 786건 · 통신심의 264,920 건 및 시정요구 254,818건 · 명예훼손 분쟁조정 581건,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959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 673건 및 제재건수 580건 · 통신심의 356,945건 및 시정요구 346,686건 · 명예훼손 분쟁조정 767건,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742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 166건 및 제재건수 163건 · 통신심의 181,892건 및 시정요구 179,621건 · 명예훼손 분쟁조정 1,164건,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60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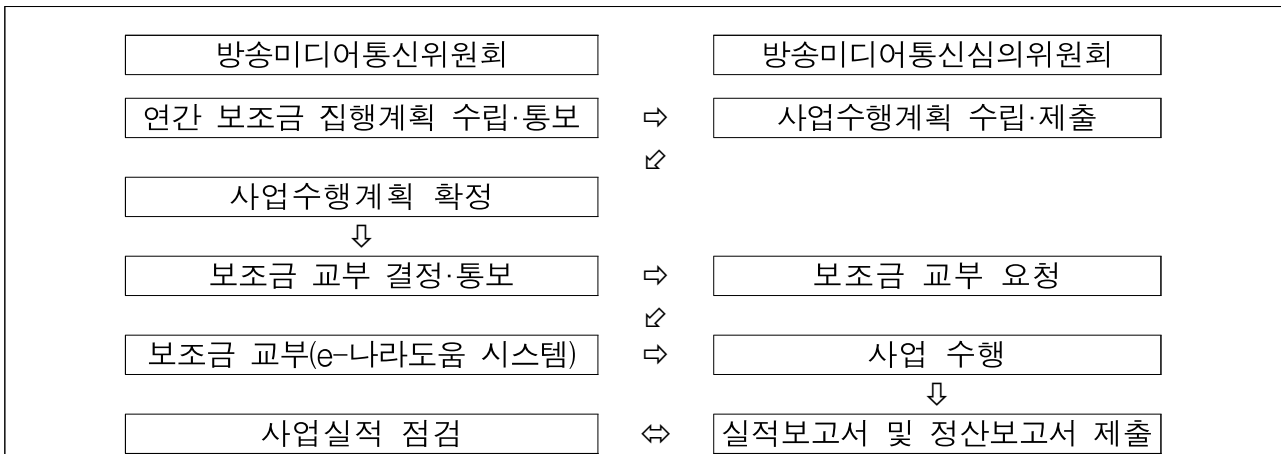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방송심의를 강화하여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인터넷 권리침해 피해 구제를 통해 방송시청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건비 등 4개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미통위 (22,047백만원)	⇒ (22,047백만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2,047백만원)	⇒ (-)	해당없음
방미통위 (4,730백만원)	⇒ (4,730백만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730백만원)	⇒ (-)	해당없음
방미통위 (4,698백만원)	⇒ (4,698백만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698백만원)	⇒ (-)	해당없음
방미통위 (3,276백만원)	⇒ (3,276백만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276백만원)	⇒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도박, 마약, 불법 무기류,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 심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22 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를 심의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해외출장 일정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성 있는 출장 일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출장 시 기관장의 언행을 주의하도록 할 것('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성과 없는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동일한 불법정보에 대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각 기관이 제공한 증거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심의지원 업무를 철저히 할 것(감사원, '24.5. 국민제안 감사)
- 3)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25.3) : 보통, 83.0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139	-	36,139	-	36,139	35,835	99.2	99.2	-	304
2023	36,824	-	36,824	-	36,824	36,593	99.4	99.4	-	231
2024	36,560	-	36,560	-	36,560	36,052	98.6	98.6	-	508
2025	33,040	590	33,630	-	33,630	32,724	97.3	97.3	-	906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 변경'의 상세 내역 기술 - 계획 변경 사유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2023	-
2024	-
2025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2025.5.1.) 의결로 인한 사업수행계획 변경 - 제6기 위원 미구성 등(약 7개월)으로 인한 집행을 부진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2025.5.29.)	경상비			590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5.1.) 의결(방송통신발전기금 운 용계획 변경)
합 계				590	

사 업 명

(15)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3132-31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 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1,770	1,640	1,640	1,692	1,692	52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70	1,770	1,770	-	-	1,640	1,640	1,640	-	-	1,692
· 모니터링 분석시 스템 구축	556	556	556	-	-	431	431	431	-	-	109
· 방송광고·협찬고 지 모니터링 운영	1,214	1,214	1,214	-	-	1,209	1,209	1,209	-	-	1,5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을 통해 과도한 방송광고·협찬고지로부터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강화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제74조(협찬고지)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제59조의2(가상광고), 제59조의3(간접광고), 제60조(협찬고지),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을 통해 과도한 방송광고·협찬고지로부터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운영) 광고시간,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 운영 및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방송통신발전기 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② 추진경위

- '05. 5. 방송광고를 유형별로 세분화(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등)
- '09. 5. 방송광고 법규위반 조사업무 중앙전파관리소 위임(13명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지원)
- '10. 1. 방송광고 유형에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를 추가
- '10. 10. 방송광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중관소에 위임
- '13.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관소 위임을 위탁으로 변경
- '14. 1.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
- '14. 11.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 방송통신위원회로 환원
- '15. 5.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법 시행에 따라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이관
- '15. 9.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상광고 고시 제정
- '16. 3.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16. 5. 협찬고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법규 준수 여부 조사 실시
- '18. 10.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21. 4. 방송법 시행령 개정
- '21. 9.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08	1,743	1,770	1,640	1,692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
- 사업시행주체 : 사업 시행 기관명 적시
- 사업 수혜자 : 방송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	보조	시청자미 디어재단	109백만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운영			1,583백만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 : ('25) 431백만원 → ('26) 109백만원, 322백만원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도화 비용 - (산출) 분석시스템 H/W 구축 ('25) 99 → ('26) 99백만원, 전년동 분석시스템 S/W 구축 ('25) 10 → ('26) 10백만원, 전년동 분석시스템 운영비 ('25) 322 → ('26) 0백만원, -100%(내역사업간 항목 이동) <p>②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운영 : ('25) 1,209백만원 → ('26) 1,583백만원, 374백만원 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기존 모니터링 인건비 및 내역사업간 항목(내내역: 분석시스템 운영비)이동 - (산출) 기존 인력 인건비 ('25) 1,209 → ('26) 1,244백만원, +2.9% 분석시스템 운영비 ('25) 0 → ('26) 339백만원, +1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광고 법규준수율 (단위: %)	목표	89	88	88	89	90	개정된 규제 기준 정착화로 전년 대비 1% 상향 목표	$\frac{\{\text{전체 채널수} \times (n \text{회 위반 방송채널수} \times n)\}}{\text{전체 채널수}} \times 100$	행정처분 자료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실적	80.3	87.8	91.4	94.4	-			
	달성도	90.2	99.7	103.9	106.1	-			
법규준수율 개선 노력도(건)	목표	-	-	-	20	22	전년 대비 10% 상향 목표	$\frac{\text{위반사업자대상}(70\%)\text{교육실시건수} + \text{일반사업자대상}(30\%)\text{교육실시건수}}{\text{총건수}} \times 100$	사업자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실적	-	-	-	25	-			
	달성도	-	-	-	12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정기모니터링 12회, 집중모니터링 4회) · 지역현장점검 모니터링(64개 채널)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1회) · 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수시교육(18회) 및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2회), 책자 발간 및 리플렛 발송 ·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파일시스템 이중화 1차 작업 등 모니터링 환경 안정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정기모니터링 12회, 집중모니터링 4회) · 지역현장점검 모니터링(47개 채널) 실시 완료 · 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수시교육(23회) 및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2회) 완료, 책자 발간 및 리플렛 발송 ·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파일시스템 이중화 2차 작업 완료로 모니터링 환경 안정화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정기모니터링 12회, 집중모니터링 4회) · 지역현장점검 모니터링(46개 채널) 실시 완료 · 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수시교육(20회) 및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2회) 완료 · 파일시스템 이중화 작업 완료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장착 및 스토리지 증설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정기모니터링 12회, 집중모니터링 4회) · 지역현장점검 모니터링(45개 지역) 실시 완료 · 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수시교육(25회) 및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2회) 완료 · 자체녹화 인코더 및 관리장비 교체 등 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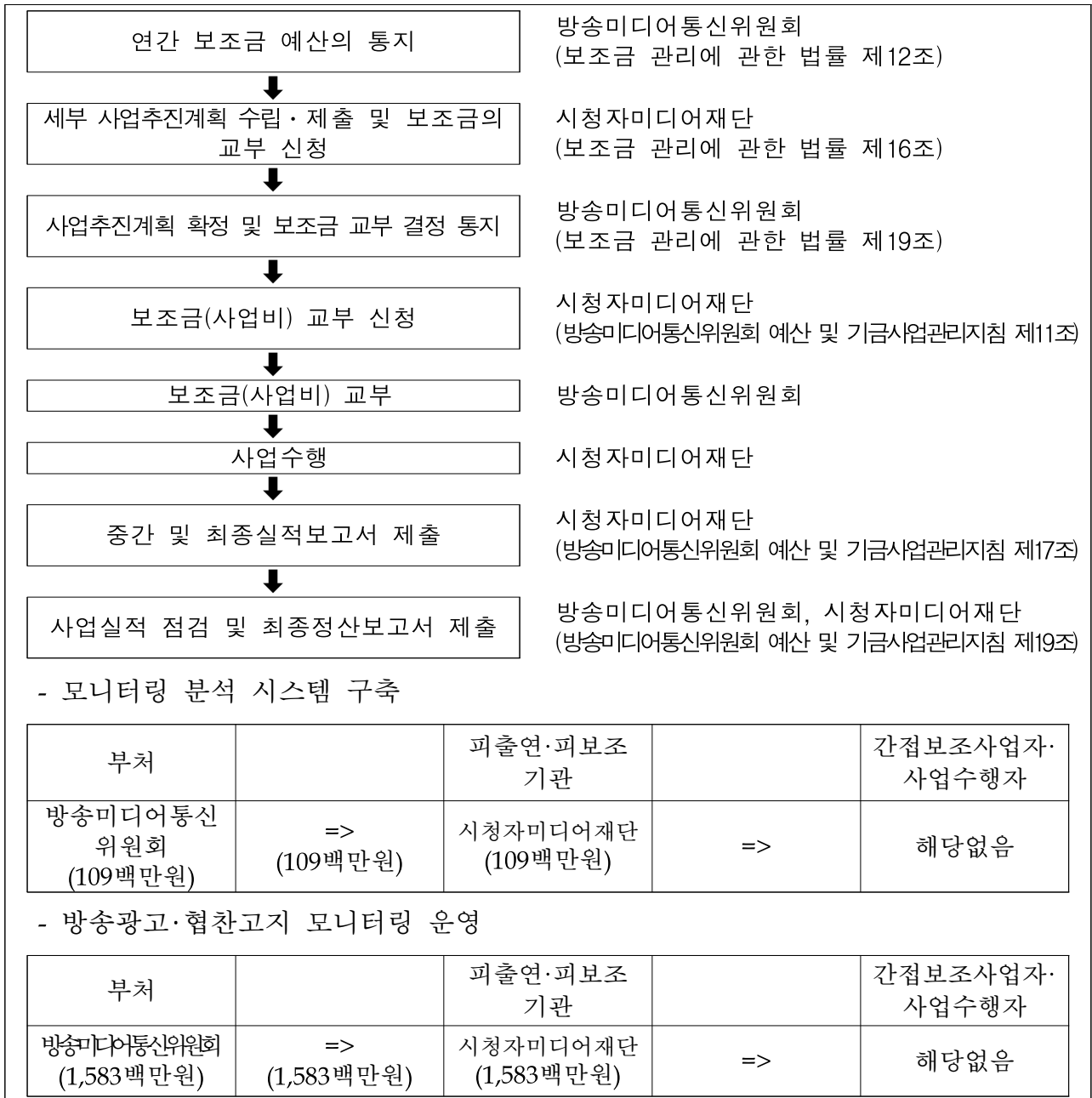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광고 정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방송광고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 시청권 보호에 기여
-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미달 여부를 조사·제재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적극적인 편성을 유도하고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강화
- 사업자의 자발적인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준수 유도 등 정책연계를 통해 건전한 방송광고·협찬 시장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해당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예정처,24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특이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 74점(2021 보조사업 연장평가)
-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 81.7점(2024 보조사업 연장평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특이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성과지표 산식의 가중치 조정 및 '24년 대비 1%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로 '25년 성과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성과지표에 범규준수를 개선 노력도를 추가하여 기존 단일지표에서 복합지표로 설정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08	-	-	1,708	1,708	100%	-	-
2023	1,743	-	-	1,743	1,743	100%	-	-
2024	1,770	-	-	1,770	1,770	100%	-	-
2025	1,640	-	-	1,640	1,64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3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계획변경'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6)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3132-31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음자	국고보조율(%)	음자율 (%)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622	565	565	620	620	55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2	632	622	-	10	565	565	564.9	-	0.1	620
· 중소기업 대상 공정경쟁 실태 서면조사	92	92	92	-	-	80	80	80	-	-	80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360	360	350	-	10	315	315	314.9	-	0.1	320
· 방송사, 미디어랩사 회계자료 검증 조사	180	180	180	-	-	170	170	170	-	-	2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방송법 등의 금지행위 제도* 시행에 따라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의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상시적인 시장 감시 체계 구축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등

-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의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널 및 방송광고, 방송편성 계약 등의 거래실태와 불공정행위 발생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주요 유료방송사업자*의 직전 분기 민원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위반 의심사례 등을 분석하고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업자 자율개선을 유도하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지원을 통해 시장행태 개선

* IPTV 3개사, MSO 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9개사(개별SO 9개사 제외)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의 공표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의 회계자료 검증을 통한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8. 2월, 방미통위 설치에 따라 방송시장에 대한 감시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자료 검토·분석 업무 강화
- '08. 4월, IPTV 및 IPTV콘텐츠 사업자 등에 대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1월, 유료방송사업자 및 PP 등에 대한 방송법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5월, 방송사업자, 광고판매대행자, 광고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법률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5월,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 6월,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12. 7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12월,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12월, 중소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3.12월, 유료방송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14. 1월,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
- '14. 7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
- '14.10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5. 3월, 홈쇼핑PP의 납품업체 대상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
- '15.12월, 홈쇼핑PP의 납품업체 대상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 '16.12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관련 시정조치
- '17. 9월,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17.11월,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 개선
- '17.12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18.10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차단 관련 시정조치
- '18.12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체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19.10월, 프로그램 사용료 과다지급 관련 시정조치
- '20. 6월,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거래조건 차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21. 2월, 유료방송사-PP 간 투명한 광고계약 진행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권고
- '22. 2월·11월, 보험상담방송의 시청자정보 부당제공을 통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22. 6월, 유료방송사업자의 과다위약금 부과를 통한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
- '22. 12월,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실시를 통한 행정지도
- '25. 5월,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현황점검 실시를 통한 행정지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22	629	632	565	62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보조	시청자미디어재단	80백만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319백만원		

3) 2026년도 기금 산출 근거

<p>①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 ('25) 80백만원 → ('26) 80백만원,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를 통해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조사 : 39 → 39백만원(-) ■ 조사자료 분석 : 24 → 24백만원(-) ■ 전문가 자문 : 17 → 17백만원(-)
<p>②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 ('25) 315백만원 → ('26) 320백만원, (+5백만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방송 민원 분석,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운영, 인포그래픽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 282→287백만원(+5백만원) ■ 연구분석 : 22→22백만원(-) ■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 10→10백만원(-) ■ 현장점검 : 1→1백만원(-)

③ 방송사, 방공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 ('25) 170백만원 → ('26) 220백만원, (+50백만원)

■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여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방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조사·검토 : 80→80백만원(-)
- 방공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 60→60백만원(-)
- 회계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 : 30→80백만원(+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방송 및 방공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도(점)	목표	71.0	71.0	71.0	71.0	71.0	최근 3년치 평균 반영	사업자 유형별*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도 평균 * 유료방송시장, 방송 광고시장, 흡수필시장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73.5	71.3	71.5	72.2	-			
	달성도	103.5	100.4	100.7	101.7	-			
②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개선 제고율(%)	목표	-	-	-	신규	100	최근 3년치 평균 반영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개척)*×0.5 + (모니터링을 통한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분석건수**)*0.5 * 연간 개척 목표: 분기별 1회 총 4회 ** '26년 목표치: 과거 3년('23'25년) 실적의 평균과 목표여표준 편차 방식을 활용하여 목표치 산출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	-	신규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 방송사업자 대상 서면조사 설문문항 개선 및 시행 등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 금지행위 시정조치 지원, 유료방송 민원 분석, 인포그래픽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 연계편성 실태 모니터링, 방송사업자 대상 서면조사 설문문항 개선 및 시행 등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 IPTV 금지행위 실태점검 지원, 유료방송 민원 분석, 인포그래픽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 연계편성 실태 모니터링, 방송사업자 대상 서면조사 설문문항 개선 및 시행 등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 IPTV 금지행위 사실조사 지원, 유료방송 민원 분석, 인포그래픽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 연계편성 실태 모니터링, 방송사업자 대상 서면조사 설문문항 개선 및 시행 등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 케이블TV 단체계약 현황점검 지원, 유료방송 민원 분석, 인포그래픽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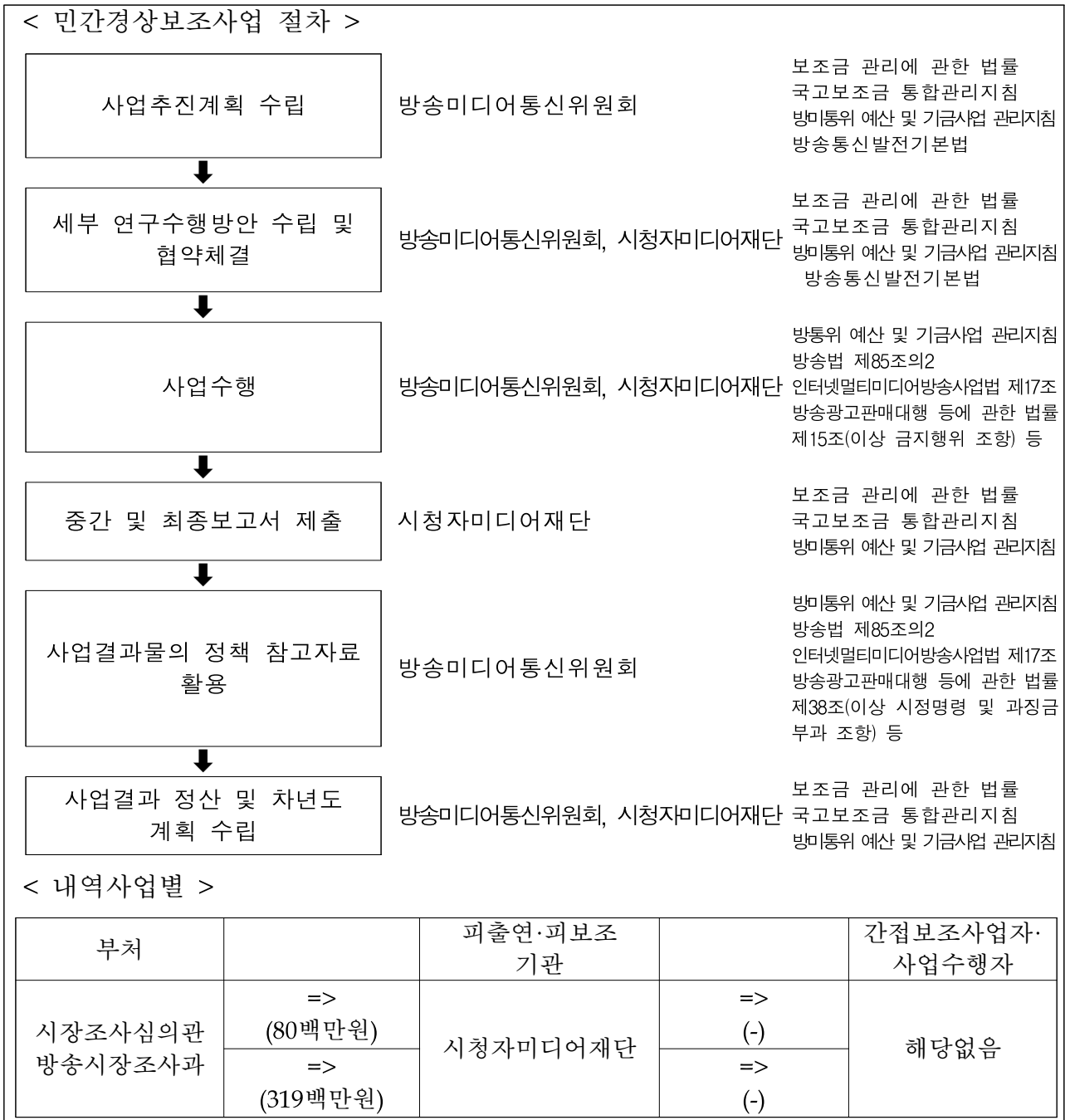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기적인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유료방송 민원분석(분기별, 총 4회)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관련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개선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26년 개선 인식 목표 71.0점)하여,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자 간 자율 협의(분기별, 총 4회)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개선('26년 개선 제고율 목표 100점)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가. 비도전적으로 목표치가 설정된 재정사업의 2024년 성과지표 도전적 설정 필요
(‘24년 예산 예정처 분석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22	-	622	622	610	98.1	-	12
2023	629	-	629	629	614	97.6	-	15
2024	632	-	632	632	622	98.4	-	10
2025	565	-	565	565	564.9	100.0	-	0.1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o 불용액 발생 사유 : 출장비 차액 및 용역 낙찰차액 발생
2023	o 불용액 발생 사유 : 출장비 차액 및 용역 낙찰차액 발생
2024	o 불용액 발생 사유 : 출장비 차액 발생
2025	o 불용액 발생 사유 : 출장비 차액 발생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7)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3132-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 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업시행주체	공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공모
외주제작 제도 점검지원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공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270	270	270	27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	300	300	-	-	270	270	270	-	-	270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200	200	200	-	-	170	170	170	-	-	170
· 외주제작 제도 점검지원	100	100	100	-	-	100	100	10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물의 인정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지원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외주제작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연구·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실시(문체부와 공동조사)
 -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물 인정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을 실시하여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방송기반국) 제5항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및 운용

② 추진경위 :

- '17. 12. 19.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5개 부처 합동

- '19. 7. 17.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 '19년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연회) 실시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상·하반기) 시행

- '24. 1. 31. : 지상파TV(20개사) 재허가 조건* 부과

*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	300	300	270	2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보조사업 공모 예정
- 사업 수혜자 :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및 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민간 경상 보조	공모 선정기관	170백만원	정액 (100%)	-
외주제작 제도 점검지원			100백만원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input type="checkbox"/>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 (‘25) 270백만원 → (‘26) 270백만원, 전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방송사-제작사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실시 - (산출) ①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170백만원 (전년동) ②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100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4	85	85.5	86	86	최근 3년의 실적치(평균)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상향	외주제작 정책만족도 조사 1차·2차 평균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설문조사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84.4	85.2	85.6	86.2	-			
	달성도	100.5	100.2	100	100	-			
②표준계약서 활용률 (단위: %)	목표	-	신규	98	98	98	최근 3년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을 고려하여 98점으로 설정	상·하반기 외주제작거래 이행점검을 통한 표준계약서 11개 핵심조항 반영실적 (상하반기 평균)	사업자 제출 표준계약서
	실적	-	-	98	98	-			
	달성도	-	-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상, 하반기) ○ 순수외주제작물 판정 심의(연2회 이상)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22.12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상, 하반기) ○ 순수외주제작물 판정 심의(연2회 이상)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23.12월)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상, 하반기) ○ 순수외주제작물 판정 심의(연2회 이상)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24.12월)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상, 하반기) ○ 순수외주제작물 판정 심의(연2회 이상) 진행중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예정('26.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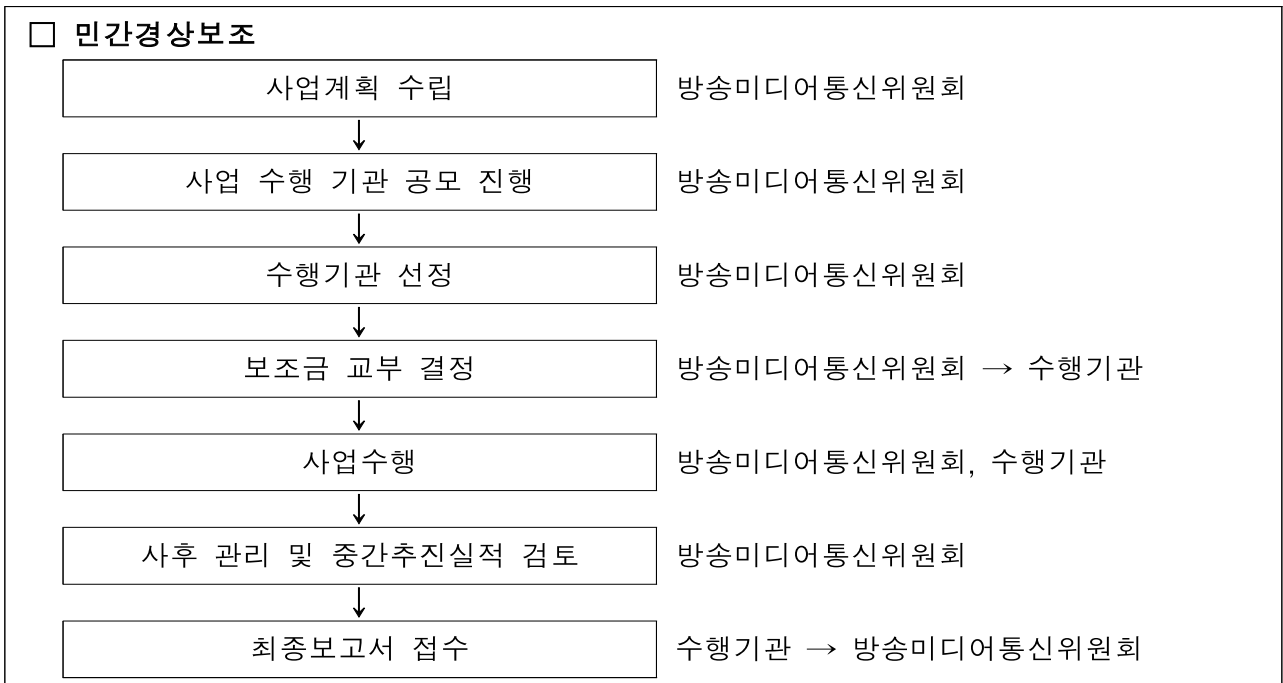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0	-	-	300	300	100		
2023	300	-	-	300	300	100		
2024	300	-	-	300	300	100		
2025	270	-	-	270	270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통신이용자		060	06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정책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7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 확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팩트체크 활성화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허위조작정보정책팀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허위조작정보정책팀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939	475	475	404	1,061	586	123.4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7	1,027	939	-	88	475	475	475	-	-	1,061
· 팩트체크 활성화	357	357	270	-	87	-	-	-	-	-	657
·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611	611	611	-	-	475	475	475	-	-	404
·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 제고	59	59	58	-	1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팩트체크 플랫폼 활성화) 인터넷상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확산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재개 및 관련 기반 확충
-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허위정보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 국민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과 국제협력 등을 통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및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운영원칙)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정보통신망법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26조(기금의 용도)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경위

-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18년)

- 인터넷에서 신뢰도 높은 정보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팩트체크 활성화가 제시되었고, 관련 시스템 및 기술이 개발될 필요성 제안

-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 ('19년)

- 플랫폼사업자·시민·언론·정부 등 분야별 제안사항을 마련하여 발표, 발표 내용 중 정부에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성 제안

- 국무회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정보는 경계의 대상' ('19.8월)

-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정보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

- 국회 예결위에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세부사업 추진 요청('19.12월)

-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으로 사회 구성원 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해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기반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40	610	1,027	475	1,0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팩트체크 활성화	보조	시청자미디어재 단	657	100	방송법 제90조의2 제7항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보조	시청자미디어재 단	404	100	방송법 제90조의2 제7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팩트체크 활성화 : ('25) 0백만원 → ('26) 657백만원(순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산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357백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팩트체크 활동 지원 : 300백만원 <p>②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 ('25) 475백만원 → ('26요구) 404백만원, △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맞춤형 교육 운영 및 국제 협력 강화 - (산출) 맞춤형 교육 : 285백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국제 컨퍼런스 개최 : 11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팩트체크 결과물 (단위: 건)	목표	156					-	-	-
	실적	195							
	달성도	125%							
교육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88.9	90.7			-	-	-
	실적	신규	89.7	91.3					
	달성도	신규	101%	101%					
교육 활성화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1.9	92.8	전년 목표 대비 1% 상향된 목표치 설정	((교육수료인원/교육 수강인원)×100)×0.7+ (교육만족도×0.3)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92.2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100%	-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기반 조성지수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	신규 플랫폼 구축에 따른 목표치 설정	(플랫폼 구축×0.6) +(전문가 개설편역도×0.2) +(월평균 콘텐츠 수×0.2) <전문가 개설편역도> : (실제 반영 건수 / 자문 의견 채택 건수) × 100 <월평균 콘텐츠 수> : (콘텐츠 업로드 수 / 13개* × 100 * 22년 운영 당시 월 평균 콘텐츠 업로드 수	사업 결과보고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활성화(멘토링 프로젝트, 전문가 자문, 취재 지원 등) ○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팩트체크 모델 개발 연구(1회) ○ 실시간 이슈 발굴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팩트체커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팩트체크 전문교육 운영(18회) ○ 예비 언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4개교) ○ 시민 정보 판별력 제고를 위한 팩트체크 시민교육 운영(72회) ○ 수업지도안 등 교수·학습자료(2종) 및 교육 콘텐츠 개발(6종) ○ 팩트체크 기술·제도 연구 시행(3종), 팩트체크 동향 리포트 발행(5종) ○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2회) ○ 국제 컨퍼런스 '제2회 팩트체크 주간' 행사 개최(1회) ○ 허위정보 예방 공익광고 제작(1종)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국민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96회) ○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88팀 참여) ○ 허위정보 대응 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3회) ○ 팩트체크 정책 연구 및 분석 보고서(1종) ○ 허위정보 예방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1회) 및 수상작 전시 ○ 시민참여 이벤트 등 SNS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및 홍보 채널 운영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국민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121회) ○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64팀 참여,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 예비 언론인 대상 대학 특강 지원(6개교, 23회) ○ 허위정보 대응 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3회) ○ 허위정보 대응 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분석 보고서(1종) ○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발간(3회) ○ 허위정보 예방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시상(1회) 및 수상작 전시 ○ 허위정보 인식 개선 콘텐츠(웹드라마) 및 실감형 교육 콘텐츠(VR) 등 제작(2종)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국민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137회) ○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153팀 참여) ○ 허위정보 대응 교육 강사 역량강화 지원(4회) ○ 허위정보 대응 교육 교재 개편(6종) ○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발간(4회) ○ 허위조작정보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1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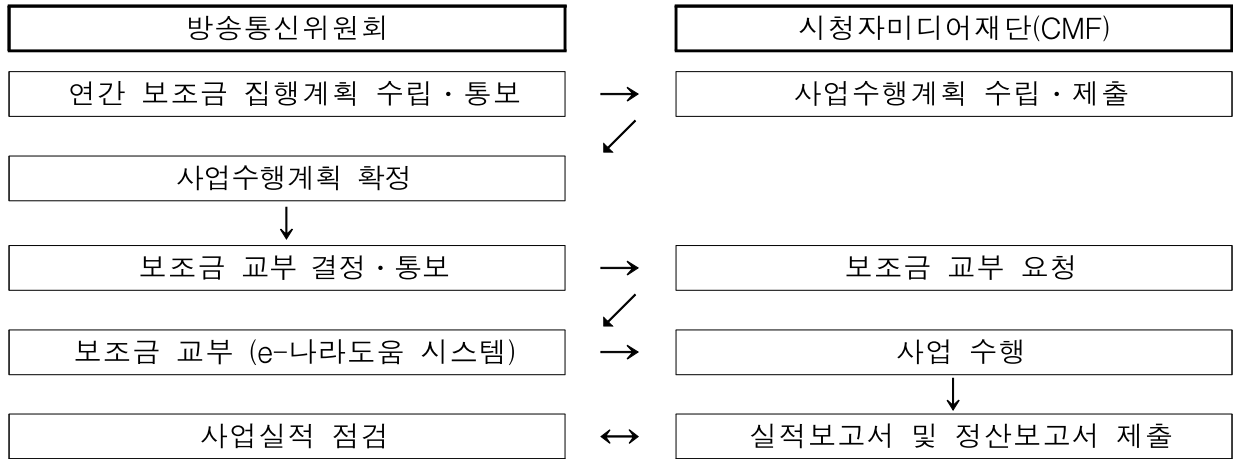
- 팩트체크 시스템 관련 기반 확충 및 고도화를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플랫폼 1식)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전 국민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26년 57회)
- 허위정보 공동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국제컨퍼런스 1회 개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련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팩트체크 활성화 내역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657백만원)	=> (357백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357백만원)	-	-
	=> (300백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300백만원)	=> (300백만원)	미정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내역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04백만원)	=> (404백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404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민에게 그릇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결산 국회, '22.9)
- 팩트체크넷 해산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간접보조사업자와 협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필요(결산 국회, '23.9)
- 팩트체크넷 사업과 같이 성과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결산 국회, '24.9)

2) 대외 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미흡 / 78.0점 (24회계 재정사업자율평가, '25.03.)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40	-	1,740	1,740	1,740	100	-	-
2023	610	-	610	610	313	51.3	-	297
2024	1,027	-	1,027	1,027	631	61.4	-	87
2025	475	-	475	475	475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던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진해산('23.1) 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관련 예산 미교부(297백만원)
2024	- 팩트체크 활성화 내역 사업 중단('24.6)에 따른 관련 잔여예산 미교부(87백만원) 및 미집행(345백만원), 환율변동성을 고려한 적정액 산출(43.2백만원)에 따른 집행 잔액 불용(1백만원)
2025	- 해당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9)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3132-32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20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	-	-	신규	100	1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신규								100
·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플랫폼 간 형평성을 맞추고 방송·통신 쇼핑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25년: 방송 통신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라이브커머스, SNS 등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통신 환경에 따라가지 못해 연구용역 필요성 제기('26년 예산 과방위, 예결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직접수행	직접수행	100백만원	-	-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 ('25 본예산) - → ('26 요구) 1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내역사업 신설)] - (요구) 디지털·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송통신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규제 불균형이 심화에 따른 플랫폼 간 형평성과 공정경쟁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필요 -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 용역 : ('26) 92백만원 ■ 정책연구 수행경비 : ('26) 8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신규사업)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통해 플랫폼 간 형평성 제고 및 방송·통신 쇼핑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연구과제(범위) 선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공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	
연구자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계약 체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연구 진행	수행기관
↓	
중간점검 실시	수행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연구결과(연구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연구결과 환류	수행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역량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증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 (신규사업)

라. 기타 추가자료

사 업 명
(20)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3133-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지원	1,444	1,276	1,276	894	894	△382	△29.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8	1,468	1,444	-	24	1,276	1,276	1,276	-	-	894
·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1,303	1,303	1,289	-	14	1,011	1,011	1,011	-	-	708
·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서비스*	-	-	-	-	-	100	100	100	-	-	70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165	165	155	-	10	165	165	165	-	-	116

* '24년도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에 포함하여 운영하던 것을 '25년부터 별도 관리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가 제작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공익성 강화 유도
-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 서비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신청·접수, 중복검증, 방송 채택료 지급까지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참여 활성화 촉진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시청자평가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진술 활동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51조(시청자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89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89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지상파방송 지원

- 2001 : KBS의 경우 방송법 제69조제7항에 의해 매월 100분 이상 편성 의무화 사업자로 '01년부터 제작 지원
- 2005 : 지역 지상파방송사로 지원 확대
- 2011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체라디오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원

- 2002 : 시민방송에 대한 방송채택료 및 제작비를 직접지원
- 2003 : 방송법 제70조제7항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방송채택료 지원 시작
- 2009 :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통하여 시민방송을 포함한 일자리방송 등 6개 PP를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지원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서비스>

- 2024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 온라인서비스 구축 시작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 2000 : 방송법 제정(2000.1) 이후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 지원
- 2015 :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 운영 개시
- 2017 :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방송사 배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68	1,368	1,468	1,276	8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시청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청자 및 시청자평가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민간경상 보조	시청자 미디어재단	708	100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 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서비스	민간경상 보조	시청자 미디어재단	70	100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민간경상 보조	시청자 미디어재단	116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 ('25) 1,011백만원 → ('26) 708백만원 (△303백만원) - 방송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708백만원* *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등 포함
②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 서비스 : ('25) 100백만원 → ('26) 70백만원 (△30백만원) - 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 온라인서비스 구축 등 통합관리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70백만원
③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 ('25) 165백만원 → ('26) 116백만원 (△49백만원) - 방송사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116백만원*(15개사**×0.64백만원×2개월+12개사**×0.8백만원×10개월) *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등 포함 ** 개정 방송법 시행에 따른 대상 방송사업자 변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지원 총 방영시간 (단위:분)	목표	67,486	69,716	82,201	87,829	47,137	'25년 실적 대비 '26년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	지상파, SO 및 PP 등 지원사업 수행 방송사의 방송편성 분량의 합	사업수행주체 사업실적보고서
	실적	67,595	77,184	82,391	67,338	-			
	달성도	100.2	110.7	100.2	76.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KBS 『열린채널』, 지역지상파, SO 및 위성방송 방송채택료 지원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 KBS, MBC, SBS, OBS, JTBC, TV조선, MBN, 채널A, YTN, 연합뉴스TV, YTN DMB, 한국DMB, tbs-eFM, 부산영어FM, 광주영어FM, YTN라디오 (16개사)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KBS 『열린채널』, 지역지상파, SO 및 위성방송 방송채택료 지원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 KBS, MBC, SBS, OBS, JTBC, TV조선, MBN, 채널A, YTN, 연합뉴스TV, YTN DMB, 한국DMB, tbs-eFM, 부산영어FM, 광주영어FM, YTN라디오 (16개사)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KBS 『열린채널』, 지역지상파, SO 및 위성방송 방송채택료 지원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 KBS, MBC, SBS, OBS, JTBC, TV조선, MBN, 채널A, YTN, 연합뉴스TV, YTN DMB, tbs-eFM, 부산영어FM, 광주영어FM, YTN라디오 (15개사) ※'23.12월 폐업한 한국DMB 제외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KBS 『열린채널』, 지역지상파, SO 및 위성방송 방송채택료 지원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 KBS, MBC, SBS, OBS, JTBC, TV조선, MBN, 채널A, YTN, 연합뉴스TV, YTN DMB, tbs-eFM, 부산영어FM, 광주영어FM, YTN라디오 (1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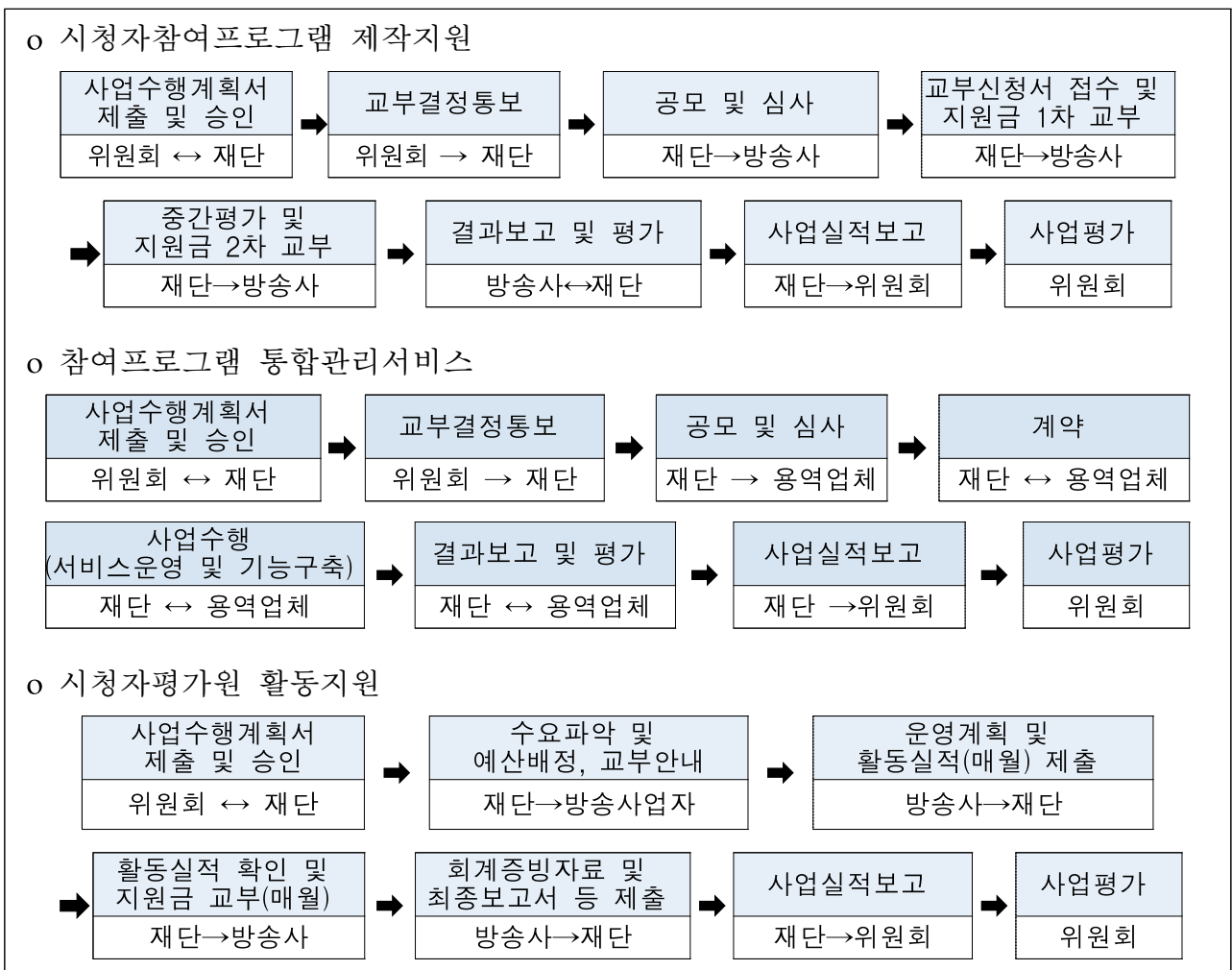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시청자의 자발적인 방송참여 활성화 및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송에 반영하여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강화를 통한 공론의 장 역할 수행
- 시청자와 방송사의 방송참여 편의 제고 및 대국민 공유 확산을 통하여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
- 시청자평가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진술 등 활동지원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시청자 권익보호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비선호 시간대 편성으로 시청자 접근권 제약에 따라 활성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증액 필요(“23회계연도 예산안 과방위 검토보고서)
 - ISP 수립 없이 편성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통합 관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ISP에 준하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24회계연도 예산안 과방위 검토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정상추진(88.2점)
 - 2022년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 변경(77.3점)
 - 2025년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일정수준 감축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68	-	1,368	1,368	1,368	100.0	-	-
2023	1,368	-	1,368	1,368	1,368	100.0	-	-
2024	1,468	-	1,468	1,468	1,444	98.4	-	24
2025	1,276	-	1,276	1,276	1,276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1)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3133-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1,655	22,433	22,433	18,863	21,363	△1,070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665	21,665	21,655	-	10	22,433	22,433	22,418	-	15	21,363
·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15,716	15,716	15,716	-	-	16,046	16,046	16,046	-	-	16,963
·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5,085	5,085	5,085	-	-	4,947	4,947	4,947	-	-	1,183
·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347	347	337	-	10	343	343	328	-	15	171
·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517	517	517	-	-	1,097	1,097	1,097	-	-	3,0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을 지원
-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통하여 국민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방송서비스의 다변화로 시청자의 서비스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권익침해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시청자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송서비스 이용 지원
-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지역적 격차 없는 시청자 권익증진 기반 제공과 시청자의 방송참여, 미디어교육 접근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인프라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② 추진경위

- '05년 11월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06년 1월 :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통한 미디어교육 체계화 모색
- '07년 6월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09년 1월 : 미디어센터운영 및 시청자지원 사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 운영/관리
- '12년 1월 :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지원 사업 시행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미디어교육,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 통합)
- '14년 7월 : 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 '14년 8월 :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 '15년 5월 :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 설립
- '15년 6월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시개관('20년 8월 현 소재지 정식개관)
- '16년 2월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16년 1월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19년 11월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0년 12월 : 충북·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3년 1월 : 공공기관 유형 변경(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 '23년 12월 : 경남·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568	25,284	21,665	22,433	21,36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전국민(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 재단 운영지원	보조	시청자 미디어재단	16,963	100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7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7·8·10호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보조	시청자 미디어재단	1,183	100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보조	시청자 미디어재단	171	100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보조	시청자 미디어재단	3,046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 ('25) 16,046백만원 → ('26) 16,963백만원(+917백만원)
 - 재단 본부 및 12개 지역센터 인건비 11,868백만원, 경상비 5,095백만원
- ②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25) 4,947백만원 → ('26) 1,183백만원(△3,764백만원)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1,109백만원,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74백만원
- ③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 ('25) 343백만원 → ('26) 171백만원(△172백만원)
 -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운영 171백만원
- ④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25) 1,097백만원 → ('26) 3,046백만원(+1,949백만원)
 - 신규센터 1차 구축비 2,500백만원, 신규센터 설계비 133백만원, 센터 노후 인프라 개선비 363백만원, 구축부대비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미디어 역량 향상도(%)	목표	신규	6	6.5	7	7.6	'23년 실적 대비	((교육 후 미디어 역량 점수 - 교육 전 미디어 역량 점수) / 교육 전 미디어 역량 점수) * 100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온라인)
	실적	신규	6.18	6.75	7.47	-	'24년 실적 증가율을		
	달성도	-	103	103.8	106.8	-	'25년 목표치에 적용하여 설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92.8	93.0	80	81	81.1	'26년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7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온라인)
	실적	92.8	93.0	80.1	81.1	-	'25년 실적치를		
	달성도	100	100	100.1	100.1	-	목표치로 설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연인원 : 97.3만명 · 경남, 대구권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 추진, 미디어 나눔버스 6대 추가 구축 완료 - 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50개 기관), 청소년(389개교), 성인(646개 상설강좌), 마을공동체(60개 마을), 소외계층(115개 기관)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및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미디어 체험 운영(235회) ·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조사, 강사 양성(2회)·연수(16회), 관련 연구 추진(2건) 등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시청자권익정보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미디어인) 개시('22.12월, 시범운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연인원 : 102.6만명 · 경남, 대구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단계별 상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664개 강좌) · 유아(55개 기관), 청소년(403개교·기관), 마을공동체(63개 마을), 소외계층(124개 기관) 등 미디어교육 참여기관 선정 및 지원 · 강사 양성·연수, 관련 연구 추진(2건) 등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플랫폼 '미디어인' 디자인 개편 및 권익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시청자권익정보 통합 서비스 안정화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연인원 : 116.4만명 - 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단계별 상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697개 강좌) · 유아(50개 기관), 청소년(403개교·기관), 마을공동체(66개 마을), 소외계층(118개 기관) 등 미디어교육 참여기관 선정 및 지원 · 강사 자격증 제도 운영, 미디어교육 정책연구 추진(1건), 교재개발(2건) 등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플랫폼 '미디어인' 모바일 환경 구현 및 권익 콘텐츠 개선(1,665건)을 통한 시청자권익정보 통합 서비스 내실화 및 활성화 기반 조성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연인원 : 145만명 - 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단계별 상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811개 강좌) · 유아(64개 기관), 청소년(253개교·기관), 마을공동체(36개 마을), 소외계층(118개 기관) 등 미디어교육 참여기관 선정·지원 및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973회) · 강사 자격증 제도 운영, 미디어교육 정책연구 추진(2건), 교재개발(2건) 등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시청자권익증진 제고를 위한 플랫폼 ‘미디어인’ 전략 및 진입 유도형 등 콘텐츠 강화(1,174건),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 및 권익교육(6회) 등의 사업 다양화로 시청자권익보호 지원 강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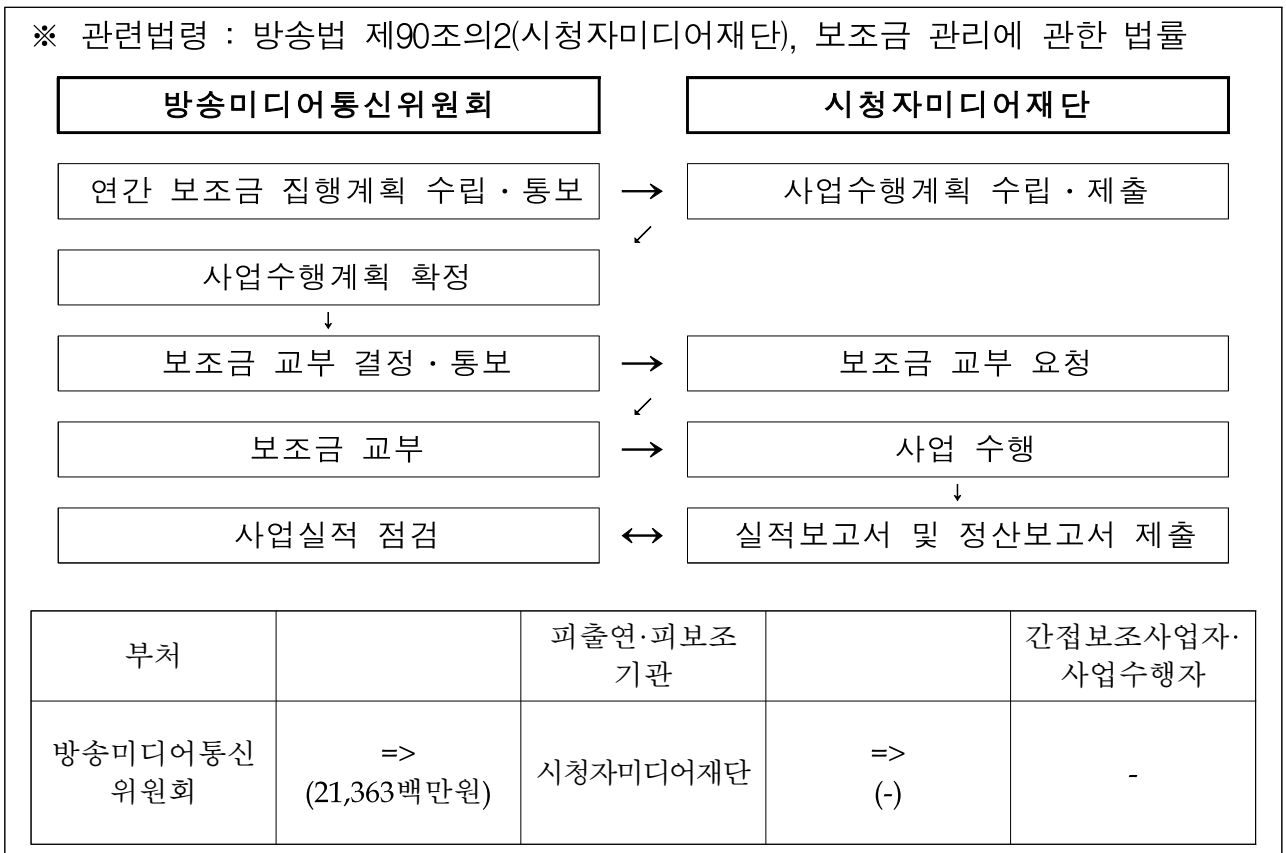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미디어 이해·활용 능력이 향상되어 미디어 이용 격차가 완화되고, 시청자 권익 보호 수준이 강화됨으로써 미디어 공공성과 국민 미디어 주권이 실질적으로 제고
- 지역 미운영 권역의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균등한 시청자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 미디어 격차가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경남·대구센터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집행 지연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의 신청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22결산 예결위)
- 재단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망분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액은 연구용역비(또는 연구개발비)로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22결산 과방위)
- '22년도 '시청자피해예방 지원' 사업의 인건비 계획액 편성 시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전담인력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22결산 과방위)
- 대구·경남센터 구축 지연 등으로 '22년 '시청자 권익증진 인프라 마련' 사업 불용 발생, 향후 센터 건립 사업 수행 시, 공사일정을 면밀히 확인 후 집행가능한 적정 보조금액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필요('22결산 과방위)
-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의 고도화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ISP에 준하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24예산 과방위)
- 미디어교육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노력, 협약사업 적극 발굴 등 수입 다변화 필요('26예산 과방위)
2) 대외공개 평가
- '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88.9점)
- '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91.8점)
- '25년 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 감축(일정수준)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88.9점)
3) 자체평가
- '25년 재정사업 방미통위 자체평가 결과 (보통 88.9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568	-	25,568	25,568	25,568	100	-	-
2023	25,284	-	25,284	25,284	25,284	100	-	-
2024	21,665	-	21,665	21,665	21,655	100	-	10
2025	22,433	-	22,433	22,433	22,418	99.9	-	15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22년 대구·경남센터 지자체(창원시·대구시) 센터건물 건립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장비 구축비(4,733백만원) 사고이월 및 집행 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 '25년 미디어나눔버스 차량 제작 및 납품 지연에 따른 구축비 잔금(202백만원) 사고이월 및 집행 잔액 발생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2)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3133-3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4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동체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공모(미정)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공동체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	-	200	2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200
· 프로그램 제작지원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익성·지역성 구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프로그램 제작지원) 동 내역사업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생활·환경, 사회적 약자 등 소규모 지역밀착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② 추진경위

- 2018년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 마련('18.12월)
- 2020년 :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개시
- 2021년 : 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20개소 신규 허가('21.7월)
- 2023년 :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종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 ~ '23년, '26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0	200	-	-	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공모(미정)
- 사업 수혜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라디오 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프로그램 제작지원	민간 경상 보조	미정	200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2025) 0 → (2026 요구) 200백만원, 순증</p> <p>① 프로그램 제작지원 : (2025) 0 → (2026 요구) 200백만원, 순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익성·지역성 구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 (산출) 프로그램 제작지원 20편 x 10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 프로그램 제작실적 (단위:편)	목표	20	21	-	-	20	세부사업 예산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 보조금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편수	사업수행자 사업실적보고서
	실적	21	21	-	-				
	달성도	105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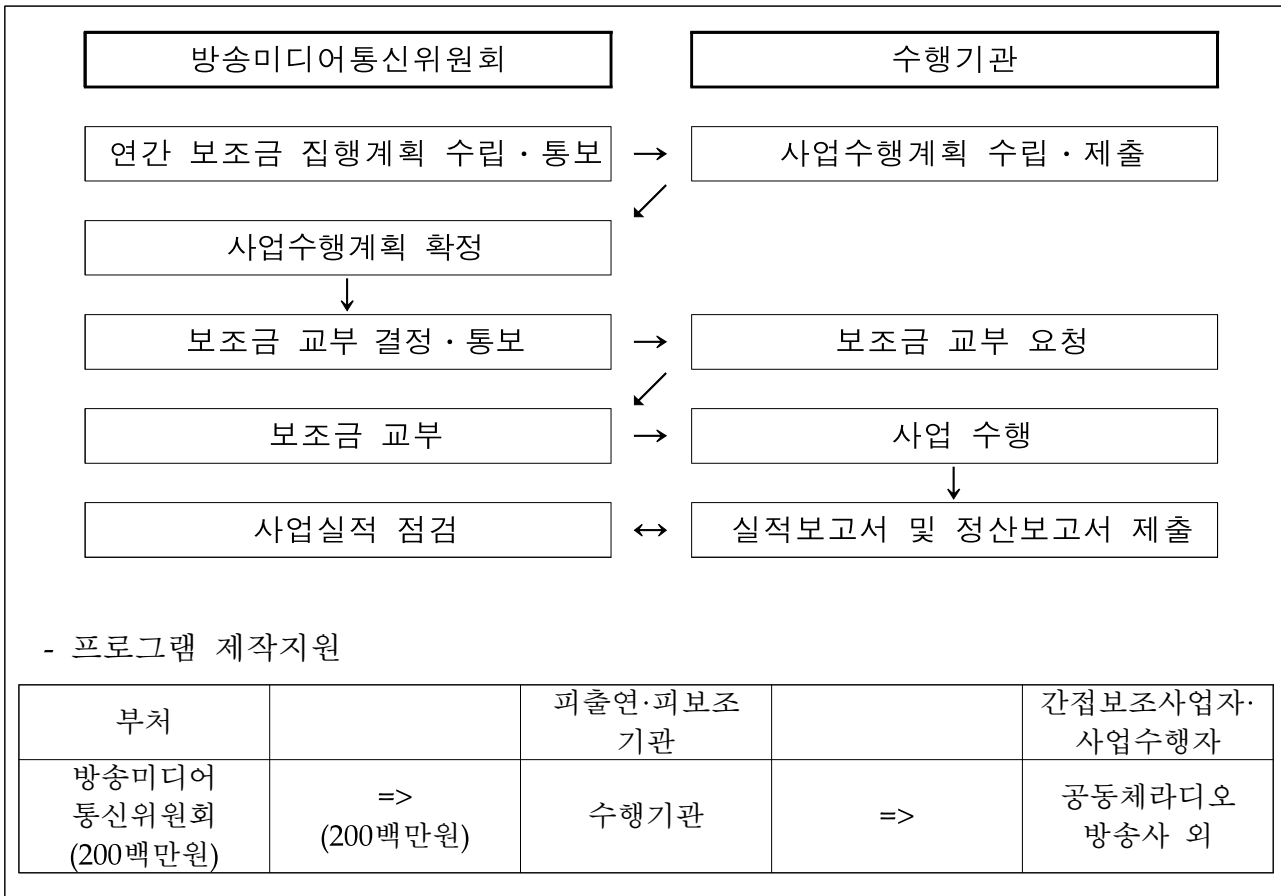
2022	- (3월) 공익·자유주제의 단편·장편·시리즈 형태의 프로그램 공모 (41개 프로그램 접수) - (4월) 심사위원회를 통한 총 21개 프로그램 선정 (공익주제 18개, 자유주제 3개) - (4~12월) 21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완료
2023	- (3월) 공익·자유주제의 단편·장편·시리즈 형태의 프로그램 공모 (37개 프로그램 접수) - (4월) 심사위원회를 통한 총 21개 프로그램 선정 (공익주제 20개, 자유주제 1개) - (4월~12월) 21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완료
2024	-
2025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지역 청취자 확보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0	-	-	200	200	100	-	-
2023	200	-	-	200	200	100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23)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3134-30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 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1
명칭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296	290	290	270	270	△20	△6.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0	310	296	-	14	290	290	290	-	-	270
· 방송대상 시상금	100	100	100	-	-	100	100	100	-	-	100
· 방송대상 시상 운영비	210	210	196	-	14	190	190	179	-	11	1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제작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자의 만족도 향상과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 (방송대상 시상금) 방송대상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특별상 등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
 - (방송대상 시상운영비) 예·본심 심사위원회 운영 및 방송대상 행사 위탁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4조

제8조(방송기반국)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② 추진경위

- '96년 방송위원회 대상 제정 및 시상
- '00년 舊 방송위원회가 방송제작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해 '방송위원회 대상' 자체 수행
- '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방송위원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으로 변경
- '11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훈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
- '16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최우수상(총리상)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0	310	310	290	2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 ('25) 290백만원 → ('26) 270백만원, 20백만원 감액</p> <p>① 방송대상 시상금 : (2025 당초 계획) 100백만원 → (2026 계획안) 100백만원, 전년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방송대상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특별상 등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 (산출) 대상(대통령상) 20(1편 x 20백만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2(1편 x 12백만원), 우수상(위원장상) 54(9편 x 6백만원), 특별상(위원장상) 14(4편 x 3.5백만원) <p>② 방송대상 시상운영비 : (2025 당초 계획) 190백만원 → (2026 계획안) 170백만원, 20백만원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긴축 편성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방송대상 시상운영비 전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 (산출) 위탁사업비 153(1식 x 153백만원), 운영비 17(1식 x 1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8편, 특별상 5인(팀) 선정 · 시상
2023	·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9편, 특별상 4인(팀) 선정 · 시상
2024	·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9편, 특별상 4인(팀) 선정 · 시상
2025	·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9편, 특별상 4인(팀) 선정 ·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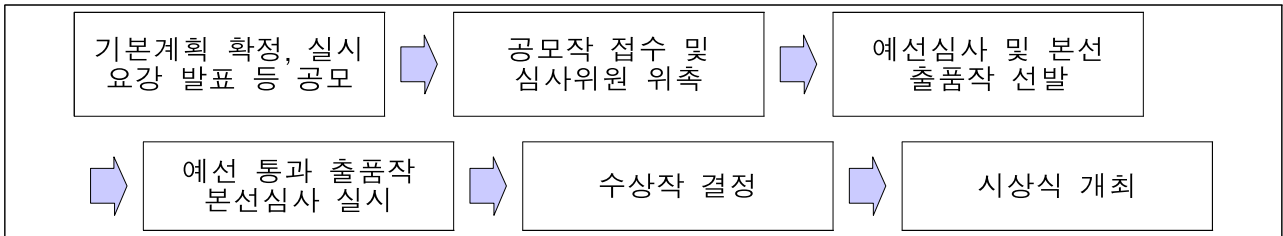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방송제작인의 창작 의욕 고취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품질 향상과 건전한 방송 문화 창달에 기여
- 정부주관 방송분야 대표 시상식으로서의 위상 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10	-	310	-	310	295	95.2	95.2	-	15
2023	310	-	310	-	310	296	95.5	95.5	-	14
2024	310	-	310	-	310	296	95.5	95.5	-	14
2025	290	-	290	-	290	279	96.2	96.2	-	11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24) 방송평가 기반조성 (3134-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평가기반조성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 내용·편성· 운영 영역 평가 KI 시청자평가 지수 조사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공모
방송매체이용 행태조사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평가 기반조성	871	850		508	508	△342	△40.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71	871	871	-	-	850	850	850	-	-	508
· 방송 내용·편성· 운영 영역 평가	136	136	136	-	-	136	136	136	-	-	136
· 방송매체이용 행태조사	372	372	372	-	-	372	372	372	-	-	372
· KI 시청자평가 지수 조사	213	213	213	-	-	192	192	192	-	-	-
·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150	150	150	-	-	150	150	15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청자 만족도 및 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을 통해 방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적 책임을 확보
 -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적을 평가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매체 이용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시청행태 변화를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164002호, '08.10.14.)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표·지수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 '00. 방송법 제정 시 방송평가 근거조항 제31조 신설
- '01. 8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08.10월 방송평가 결과 공개 시작
- '1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중편PP) 평가대상 추가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00.10월 「TV 시청행태 연구」로 제1회 조사 실시
- '08.10월 정부승인통계 인증(통계청 승인번호 제164002호)
- '09. 6월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로 명칭 변경
- '09. ~ 매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실시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9	829	871	850	5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및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공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위탁)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내용·편성· 운영 영역평가	보조	공모	136백만원	정액	-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	보조 (~23년) 민간위탁 (24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72백만원	정액	-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 방송평가 기반조성 : (2025) 850백만원 → (2026 계획안) 508백만원, △342백만원</p> <p>①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 (2025) 136 → (2026 계획안) 136백만원, 전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원단 운영 : 45 → 45백만원(0) * 자료검증 및 분석 등 : 91 → 91백만원(0) <p>②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2025) 372 → (2026 계획) 372백만원, 전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전국민(표본조사)의 방송매체 이용행태를 매년 조사하고,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시청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286 → 286백만원(0) * 조사자료 분석 등 : 86 → 86백만원(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평가 만족도(점)	목표	76.5	76.6	77.2	77.4	폐지	최근 3년간 실적치에 평균증가량을 반영하여 전년목표 대비 향상된 값을 목표치로 설정	평가절차의 타당성+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절차의 활용성/3 x 100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77	78.7	74.2		폐지			
	달성도	100.6	100.2	96.1		폐지			
방송평가 개선추진 실적(점)	목표				신규	70	방송평가 개선회의 개최실적 및 평가결과 만족도를 목표치로 설정	(사업자 의견수렴회의 실시*0.4 + 평가 위원회·평가지원단 의견수렴 회의 실시*0.3 +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실시*0.3)×0.5 + 평가만족도×0.5	사업실적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실적				신규	-			
	달성도				신규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평가결과 재허가(승인) 심사 반영 - 지상파 :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22.12.14. 방통위 의결) - 지상파 라디오 : 도로교통공단(‘22.12.14. 방통위 의결) - PP : (주)씨제이이엔엠, (주)지에스리테일(‘22.2.25. 과기정통부) ○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발행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평가결과 재허가(승인) 심사 반영 - PP : (주)조선방송(‘23.3.21, 방통위 의결), (주)공영홈쇼핑(‘23.4.7. 과기정통부) ○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발행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위원회 의결(‘24.3.27) - 평가대상 사업자/방송국 : 153개 사업자 / 370개 방송국 ○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발행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 위원회 의결(‘25.4.23) - 평가대상 사업자/방송국 : 153개 사업자 / 371개 방송국 ○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발행(‘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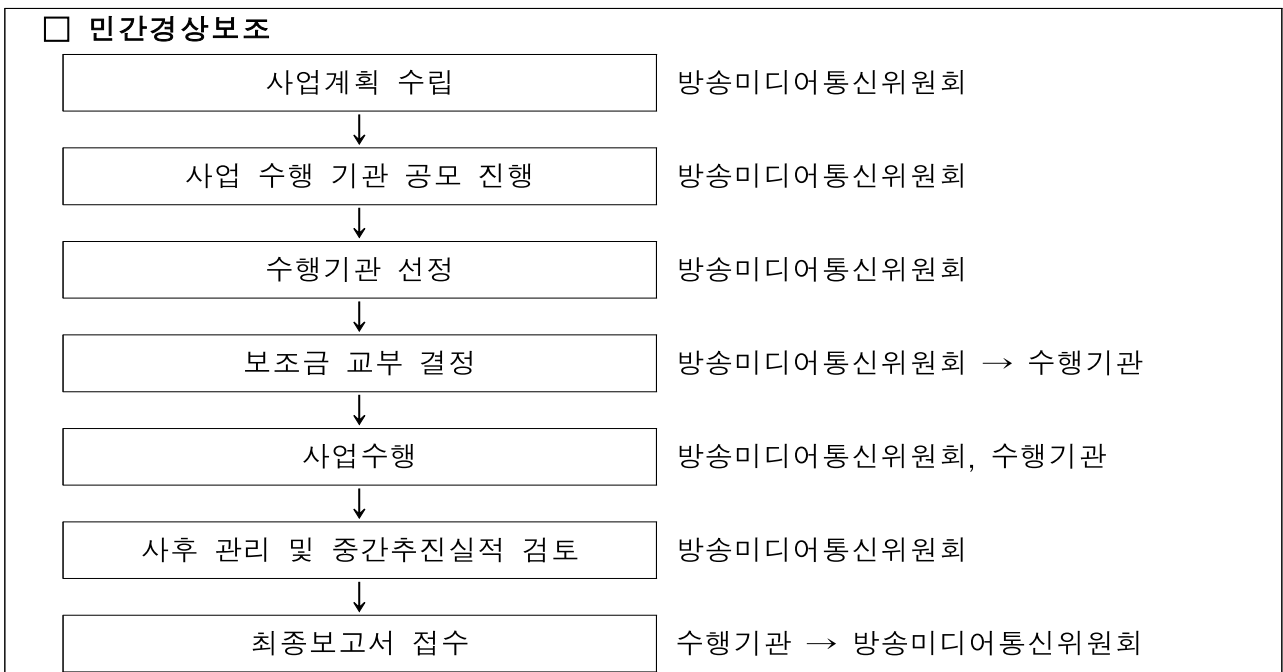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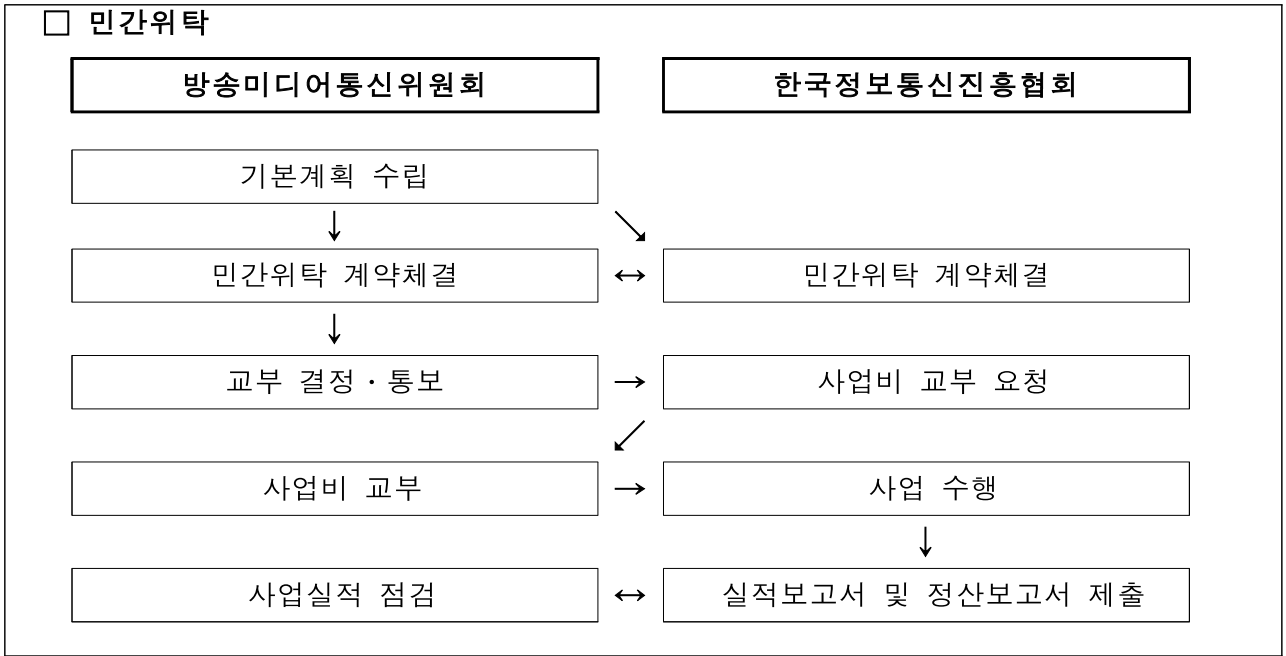
-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방송평가 결과를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
-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조사결과를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방미통위 방송통계포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특이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특이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 특이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99	-	-	799	799	100	-	-
2023	829	-	-	829	829	100	-	-
2024	871	-	-	871	871	100	-	-
2025	850	-	-	850	85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5)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3134-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한국광고총연합회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한국광고총연합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한국광고총연합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2,449	1,932	1,932	1,552	1,552	380	△19.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49	2,449	2,449	-	-	1,932	1,932	1,932			1,552
·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1,592	1,592	1,592	-	-	1,075	1,075	1,075	-	-	753
·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857	857	857	-	-	857	857	857	-	-	7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광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을 구현
 -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의식 확산을 유도하고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
 -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방송광고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방송광고 및 관련 자료의 DB를 구축하여 방송사, 학계, 광고계 등에 제공하고 우수 방송광고물 시상지원을 통해 방송광고의 질적 향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추진경위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 '81.12.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 구성 및 공익광고 첫 방영
- '83. 2.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공익광고향상자문위원회로 개편
- '88. 7. 공익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공익광고협의회로 개편
- '00. 1. 방송법 73조제4항,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제정
- '14. 1.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지원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 '97. 8. 정부, 광고정보센터 구축 계획 확정
- '98.11. 광고정보센터 인터넷 서비스 개시 및 방송광고자료 DB화
- '99. 6. 광고정보센터 방문자 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69	2,449	2,449	1,932	1,5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광고총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광고계 및 학계, 방송사업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보조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753백만원	정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보조	한국광고 총연합회	799백만원	정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 ('25) 1,075백만원 → ('26) 753백만원, △3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30.0% 감액 - (산출) 공익광고 제작 150백만원x4편=600백만원 공익광고 확산 12.75백만원x12월=153백만원 <p>②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 ('25) 857백만원 → ('26) 799백만원, △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6.8% 감액 -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정보센터 시스템 유지 보수 : 329백만원 2. 광고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 : 153백만원 3. 방송광고 관련자료 수집·가공·DB구축 및 제공 : 254백만원 4. 국내·외 뉴스 및 정보 수집·제공 : 58백만원 5. 상장 및 트로피 제작 : 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익광고 통합 광고효과 지수 (단위: 점)	목표	74.0	75.0	75.5	76.0	76.3	전년 3개년 평균 실적(73.5)을 감안하여 '25년 목표치(76.0)대비 0.3점 상향한 목표치(76.3) 설정	[(주제 적절성 ×0.21)+(사회적 기여 및 공익 성×0.27)+(태도 및 행동 변화 ×0.3)+(크리에 이티브×0.22)]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68.9	76.0	75.6	-	-			
	달성도	93.1	101.3	100.1	-	-			
광고정보센터 이용자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1.5	81.9	82.2	82.4	82.6	최근 4년간 평균 실적(81.9점) 대비 0.7점 상향한 목표치	(정보 활용도 × 0.7) + (시스템 편의도 × 0.3)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81.6	82.1	82.4	82.5	-			
	달성도	100.1	100.2	100.2	10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p><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광고 주제 선정 : 환경, 올바른 언어 사용, 운전 문화 등 7개 주제 선정 ·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 대국민 실천력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집행(7편) · 공익광고 캠페인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확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CU 편의점 음성광고 및 포스기 등 “환경 I (탄소중립) - 좋은 습관” 편 캠페인 배너 및 영상 게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과 MOU체결을 통한 고속국도변에 인쇄물 옥외광고 게재(11개 22면) · 찾아가는 공익광고 활용교육(PAIE) : 지리적 여건 상 소외되던 지역 위주로 비대면 교육 확대(40개교 → 93개교)와 대면교육 10교 병행실시 · 공익광고제 개최 : 오프라인 시상식 개최 및 유튜브 동시 생중계를 통하여 하이브리드형 온·오프라인 공익광고제로 국민 점점 확대. 공익광고제 통합 홈페이지 리뉴얼 및 메타버스 플랫폼 ‘세페토’ 오픈을 통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공익광고 플랫폼 운영으로 방문자 만족도 제고 · 매체 협업 : 지자체 보유 모니터,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등 총 80개 기관 매체, 투게더스 협업 전국 중소마트 400여개 업체 보유 매체, 올포캠 협업 서울시 택시 3천대 내부 광고 단말기, 롯데시네마 전국 74개 영화관 등 · 찾아가는 공익광고 활용교육(PAIE) : 상반기 전국 58개교 대상 교육 실시 · 공익광고 작품 무료 이용 신청 건수 : 상반기 약 1.2만여건 신청 접수 <p><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35,952건) · 광고정보센터 DB 활용도(29,373만건) · 광고정보 전문책자 ‘광고계동향(격월)’ 제작 및 배포(약 12,000부 무료배포) · 우수광고물 시상지원(총 출품 120개사, 2,800편), 73개 작품시상
2023	<p><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광고 주제 선정 : 디지털 매너, 안전, 환경, 마약근절 등 7개 주제 선정 ·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 대국민 실천력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송출(7편) · 공익광고협의회 등 운영 : 전체회의(6회), 기획소위원회(4회), 제작소위원회(8회), 편성전략소위원회(4회)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시 반영 · 공익광고제 개최 : 공모전 1,882편 응모(‘17년 이후 최다), 시상식 개최(유튜브 생중계 병행), 수상작 전시/DDP 특별 전시/온라인 전시 등 3월 전시 · 공익광고 매체 기부 확산 : 지자체(7개), 공공기관 및 협회(3개), 민간업체(11개) 등 21개 기관과 매체 기부 협업 지속, 현대오일뱅크, SK브로드밴드,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김포시 등 26개 기관과 신규 매체 기부 협업 실시 · 찾아가는 공익광고 활용교육(PAIE) : 초등학교 온라인 94개교(7,833명), 초등학교 대면 17개교(407명), 고등학교 대면 14개교(214명) 교육 실시 · 공익광고 청년자문단 신설 및 운영 : 공익광고 청년자문단 7명 선발, 공익광고 주제 제안 3회, 제작 참여 5회,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활동, 공익광고 리뷰, 사전의견서 제출 등 공익광고 제작 자문 및 홍보 활동 진행 <p><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35,545건) · 광고정보센터 DB 활용도(29,169만건) · 광고정보 전문책자 ‘광고계동향(격월)’ 제작 및 배포(약 12,000부 무료배포) · 우수광고물 시상지원(총 출품 108개사, 2,600편), 73개 작품시상

2024	<p><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광고 주제 선정 : 저출생 극복, 공공매너, 다문화(학생,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청소년 도박예방, 환경보호 등 주제 선정 ·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 대국민 실천력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송출(7편) · 공익광고협의회 등 운영 : 전체회의(4회), 기획소위원회(3회), 제작소위원회(4회), 편성전략소위원회(5회)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시 반영 · 공익광고 매체 기부 확산 : 지자체(8개), 공공기관 및 협회(19개), 민간업체(14개) 등 41개 기관과 매체 기부 협업 지속 · 찾아가는 공익광고 활용교육(PAIE) : 초등학교 온라인 78개교(8,503명), 초등학교 대면 18개교(416명), 중학교 자유학년제 67개교(7,639명), 고등학교 대면 14개교(238명) 교육 실시 · 공익광고 청년자문단 신설 및 운영 : 공익광고 청년자문단 7명 선발(3월), 공익광고 리뷰, 사전의견서 제출 등 공익광고 제작 자문 및 홍보 활동 진행 <p><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35,086건) · 광고정보센터 DB 활용도(28,652만건) · 광고정보 전문책자 '광고계동향(격월)' 제작 및 배포(약 12,000부 무료배포) · 우수광고물 시상지원(총 출품 152개사, 2,100편), 69개 작품시상
2025	<p><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 저출생 극복, 디지털 범죄예방, 광복80년-공동체의식, 기후변화, 안전, 정서적 치유, 경제활성화 등 7편 제작 및 방영 ·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효과평가 : 국민여론조사 기반(연간 3회) 공익광고 주제선정(1차 1월, 2차 4월, 3차 9월 실시 완료) 및 공익광고 편별 효과평가 실시 · 온라인, 옥외매체 등 공익광고 주제별 특성에 맞는 매체 집행 · 공익광고 청년자문단 7명 선발(2월), 공익광고 제작 과정 참관 및 의견제시, 공익광고 홍보 활동 진행 <p><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33,979건) · 광고정보센터 DB 활용도(27,132만건) · 광고정보 전문책자 '광고계동향(격월)' 제작 및 배포(약 12,000부 무료배포) · 우수광고물 시상지원(총 출품 158개사, 3,900편), 69개 작품시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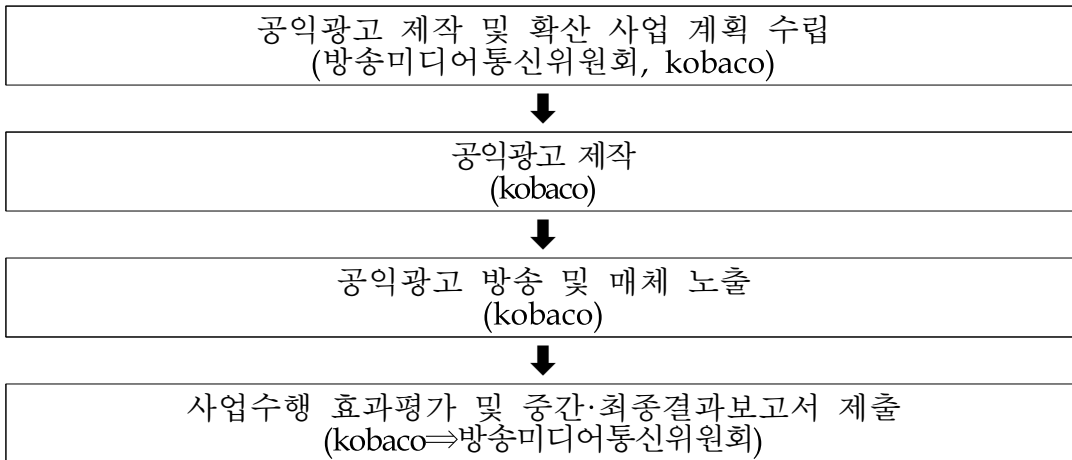
-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공익광고의 제작과 방영을 통한 공익광고 활성화로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과 소통을 유도하고 실천의식을 확산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지난 20여년 동안 구축된 광고정보센터(www.adic.or.kr) 방송광고물, 광고관련 문헌 자료 등(25년말 누적 79만여 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광고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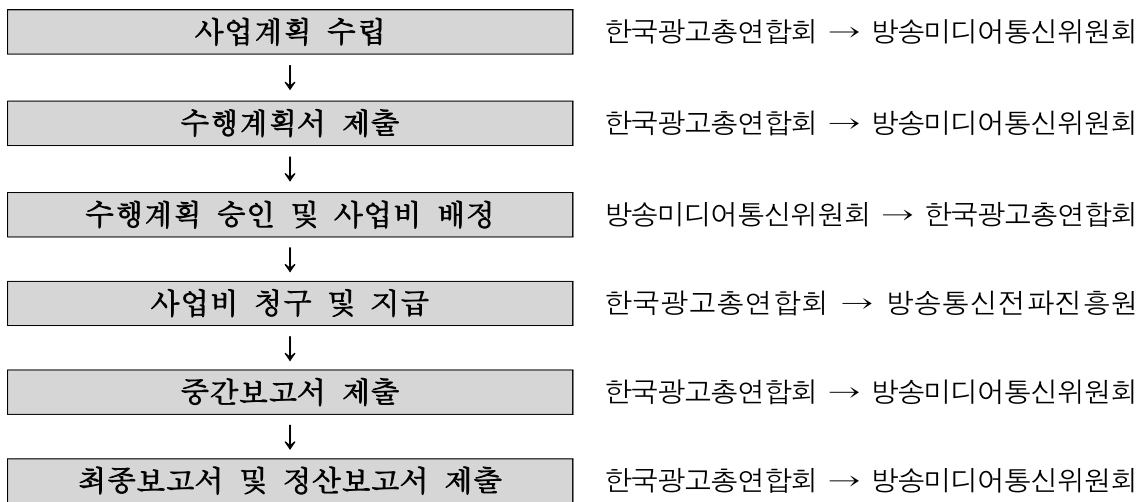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53백만원)	=> (753백만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53백만원)	=>	해당없음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99백만원)	=> (799백만원)	한국광고총연합회 (799백만원)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익광고 주제선정 시 주제선정 회차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시의적절한 공익광고 제작·방영 필요 ('24 결산 과방위)
 - 공익광고가 부적절한 유튜브에서 송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필요 ('22년 국정감사)
 - 광고산업현황조사 및 책자 제작비 3천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는데,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할 것 ('22 결산 과방위)
- 2) 대외공개 평가
 - '24년 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 : 정상추진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69	-		2,569	2,569	100.0	-	-
2023	2,449	-		2,449	2,449	100.0	-	-
2024	2,449	-		2,449	2,449	100.0	-	-
2025	1,932	-		1,932	1,932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6)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3134-315)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15
명칭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2,356	1,883	1,883	944	944	△939	△49.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56	2,356	2,356	-	-	1,883	1,883	1,883	-	-	944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제작 지원 및 컨설팅 지원	2,356	2,356	2,356	-	-	1,883	1,883	1,883	-	-	9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방송광고시장 외연 확대 및 활성화 유도
-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 녹색인증 중소기업 / 글로벌 IP스타기업 / 사회적 기업 / 우수조달 중소기업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15.1 ~ 현재)
-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제작비 추가 지원('16.1)
- 정부기관, 지자체 등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우대('18.1)
- 예비사회적 기업 제작비 추가 지원('20.1)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 기업 추가 지원('20.4)
- 수도권 외 소재 기업 우대('21.1)
- 지역혁신선도기업, 그린뉴딜우수기업 추가 지원('22.1)
-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추가 지원('22.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추가 지원('23.2)
-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 우대('23.2)
- 서울형강소기업 추가 지원('24.2)
- 하이서울기업, 소셜벤처기업, 스마트공장 인증기업, 우수조달 중소기업, G-PASS 지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근무 혁신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지원기업 추가 지원('25.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91	1,591	2,356	1,883	94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사,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혁신형중소기업 광고 제작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보조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944백만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 ('25) 1,883백만원 → ('26) 944백만원, △9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25년 대비 49.9% 감액 (지원기업 수 50개사 → 25개사 축소) -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광고 제작지원 : 78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소재 제작지원 : 765백만원 (90백만원×17개사×50%) - 라디오소재 제작지원 : 24백만원 (3백만원*8개사) ② 방송광고 컨설팅 지원 : 18.9백만원 ③ 지원협의회 운영 및 효과평가 : 130.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협의회 운영 : 19백만원 - 효과평가 조사 등 : 23백만원 - 인건비 : 88.9백만원 ④ 광고교육 및 사업설명회 : 5.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기여도 (단위: 배)	목표	6.72	6.78	6.84	6.90	6.96	'25년 목표치(6.90)에 1% 상향기중치를 부여한 적극적인 목표치(6.96) 설정	방송광고 집행액/ 방송광고 제작 지원액	외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사업효과평가 조사
	실적	6.74	6.79	6.86	-	-			
	달성도	100.3%	100.1%	100.3%	-	-			
지표명: 경영개선 기여도 (단위: 점)	목표				70	7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70점을 목표치로 설정	경영개선 도움정도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의 100점 환산값	외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사업효과평가 조사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기업 선정 및 제작 지원(TV 34개사, 라디오광고 17개사 등 총 51개사) · 방송광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협약기업 대상 비대면 설명(사업매뉴얼 송부, 유선 상담 등), 희망기업 대상 직접 방문하여 사업목적 설명·교육 및 사업프로세스 등 안내 - 제작비 지원 기업 중 방송광고 컨설팅을 희망하는 23개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 · 방송광고 제작지원 개선방안 수립·시행 - 연 2회 복수 공모 등을 통한 중도포기 관리 강화 및 효과평가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 수립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기업 선정 및 제작 지원(TV 30개사, 라디오광고 20개사 등 총 50개사) · 방송광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선정기업 대상 협약식 실시, 사업 안내 및 광고마케팅 강의 제공 - 제작비 지원 기업 중 방송광고 컨설팅을 희망하는 41개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 · 방송광고 제작지원 개선방안 수립·시행 - 컨설팅 지원기업 확대, 연 2회 복수 공모 등을 통한 중도포기 관리 강화 및 효과평가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 수립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기업 선정 및 제작 지원(TV 49개사, 라디오광고 18개사 등 총 67개사) · 방송광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선정기업 대상 협약식 실시, 사업 안내 및 설명 제공 - 제작비 지원기업 컨설팅 실시(48개사) · 방송광고 제작지원 개선방안 수립·시행 - 최초 3차 복수 공모 실시 등을 통한 중도포기 관리 강화 및 효과평가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 수립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기업 선정 및 제작 지원(TV 37개사, 라디오광고 14개사 등 총 58개사 계획) · 방송광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선정기업 대상 협약식 실시, 사업 안내 및 광고마케팅 강의 제공 - 제작비 지원기업 컨설팅 실시(38개사) · 방송광고 제작지원 개선방안 수립·시행 - 사업신청자격 확대(16개 인증기업→23개 인증기업), 우수기업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 변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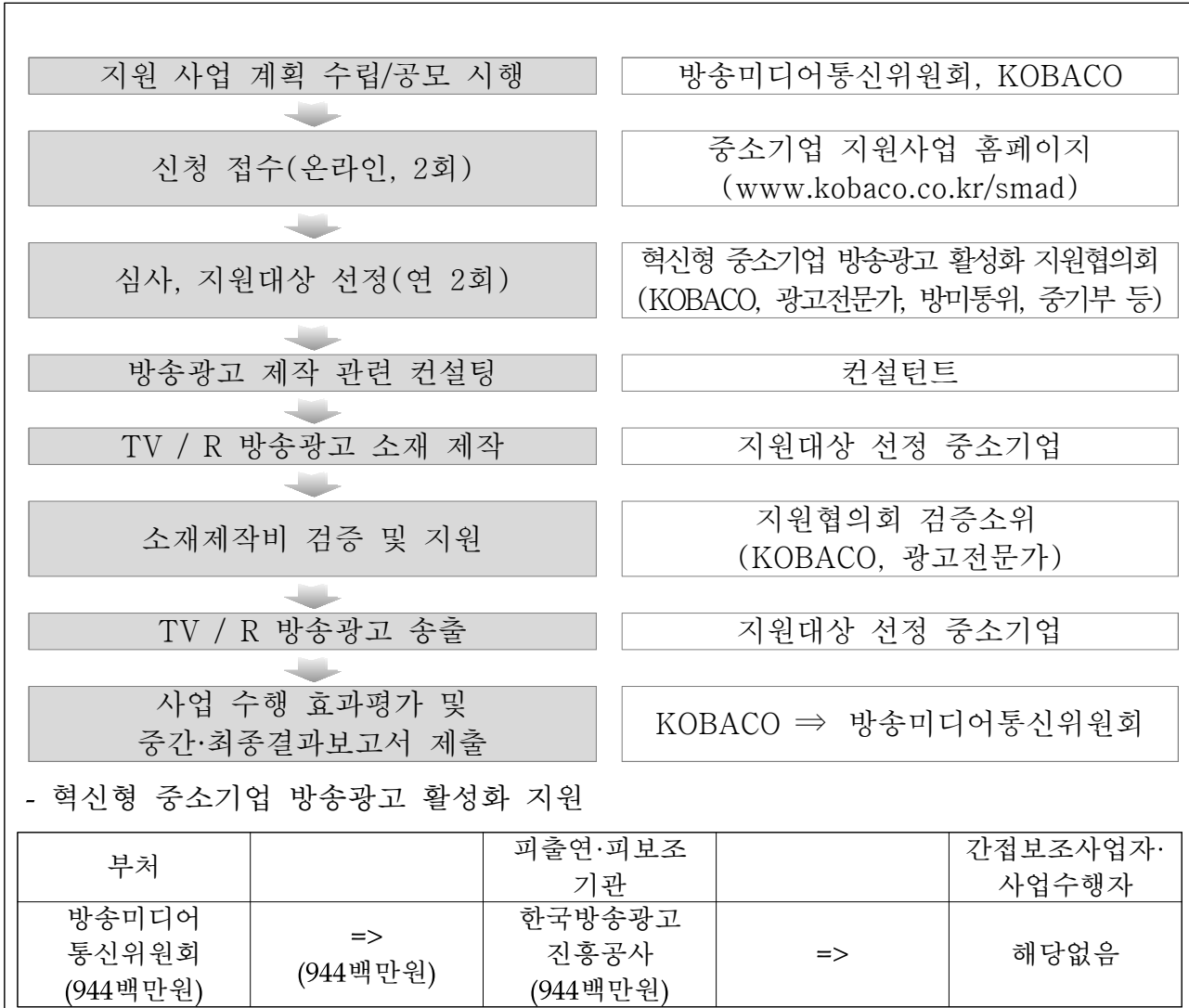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증대 및 매출 확대 기대
-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시너지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의 집행 부진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자부담 집행 가능성 확인 등 개선 노력 필요 (23결산, 과방위)
- 2) 대외공개 평가
 -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통'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91	-	1,591	1,591	1,591	100.0	-	-
2023	1,591	-	1,591	1,591	1,591	100.0	-	-
2024	2,356	-	2,356	2,356	2,356	100.0	-	-
2025	1,883	-	1,883	1,883	1,88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7)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3134-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034	317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202	452	452	407	407	△45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 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	202	202 [199]	-	-	452	452	452	452 [436]	452	452 [436]	-	-	407
· 방송콘텐츠 가치 정보 분석	-	-	-	-	-	250	250	250	250 [236]	250	250 [236]	-	-	220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200	202	202 [199]	-	-	202	202	202	202 [200]	202	202 [200]	-	-	1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반응 데이터를 제공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편성·유통·광고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
- (방송통계 통합정보체계 구축)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 통계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정리,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 '16. 5월 빅데이터 기반 방송콘텐츠 이용 예측 모델 관련 정책연구 실시
- '17. 3~12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18. 1~12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추진
- '18. 1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I) 개설, 데이터 제공 개시
- '18. 12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I) 리뉴얼 오픈
- '19.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추진
- '24. 1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중단
- '25. 1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재개
- '25. 5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I) 재개, 정성분석 제공 개시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 '16. 5월 방송분야 정책통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관련 정책연구 실시
- '18. 1월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서비스 개시
- '19. 1~12월 2019년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 추진
- '20. 12월 방송통계포털 서비스 전면 개편
- '21. ~ 매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 추진
- '24.~ '25.12월 통합검색엔진 개발 사업 추진
- '25 5~8월 멀티콘텐츠뉴스, 방송키워드트렌드 등 신규 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4	454	202	452	40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콘텐츠 가치정보분석	보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0백만원	정액	-
방송통계 통합 정보 제공체계 구축	보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7백만원	정액	-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2025) 250 → (2026) 220백만원 (-30백만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이용자 반응 데이터를 측정·공개하여 제작·광고 업계 및 학계·언론 등이 K-콘텐츠 수출 확대 요인을 발굴하고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반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다양화 시대에 콘텐츠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유일한 공공 지표로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 ① (요구) 국내에서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온라인 반응 분석을 위해 190백만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 국내 콘텐츠 반응 분석 조사: (200개 방송 프로그램+33개 OTT 오리지널 콘텐츠) × 6.8만원 × 12개월 = 190백만원 ② (요구) 방송콘텐츠 이용자 반응 데이터 제공·분석시스템 운영을 위해 30백만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 방송콘텐츠 분석시스템 운영: 1식 × 30백만원 = 30백만원 ○ (방송통계 통합정보체계 구축) (2025) 202 → (2026) 187백만원 (-15백만원),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각종 방송통계자료의 통합적 관리와 다양한 형태의 통계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송통계의 체계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 수준 예산 필요 - (산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 18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DB 업데이트 및 신규통계 DB 구축: 59백만원 - 통합 DB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고도화: 33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85백만원 - 방송통계포털 인식 및 이용자 수요조사: 10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통계포털 활용도 (단위: 점)	목표	69	71	73	75	77	전년목표 대비 2.6%p 상향	(주요 방송통계 인지도 × 0.4) + (방송통계 포털 만족도 × 0.6)	전문조사기관 및 방송통계포털 설문조사결과
	실적	77	80.6	80.5	81.8	-			
	달성도	111.6	113.5	110.2	109.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 주·월간별 인터넷반응지표 제공 및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 웹서비스 고도화(해외반응 메뉴 신설 등 웹사이트 개선)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 통계자료 현행화 DB 구축 및 Open API 개발, 유관통계 연계 서비스 제공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 주·월간별 인터넷반응지표 제공 및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 국내 콘텐츠에 대한 해외(2개국) 인터넷반응 정보 수집·제공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 통계자료 현행화 DB 구축 및 UI 개선 추진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 통계자료 신규 통계 DB 구축 - 통합 DB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고도화 추진 - 오픈소스 기반 통합검색시스템 개발 1단계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 주·월간별 인터넷반응지표 제공 및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 국내 콘텐츠에 대한 해외(2개국) 인터넷반응 정보 수집·제공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 통계자료 현행화 DB 구축 및 UI 개선 추진 - 멀티콘텐츠 뉴스, 방송키워드트렌드 신규 서비스 - 상세통합검색시스템 개발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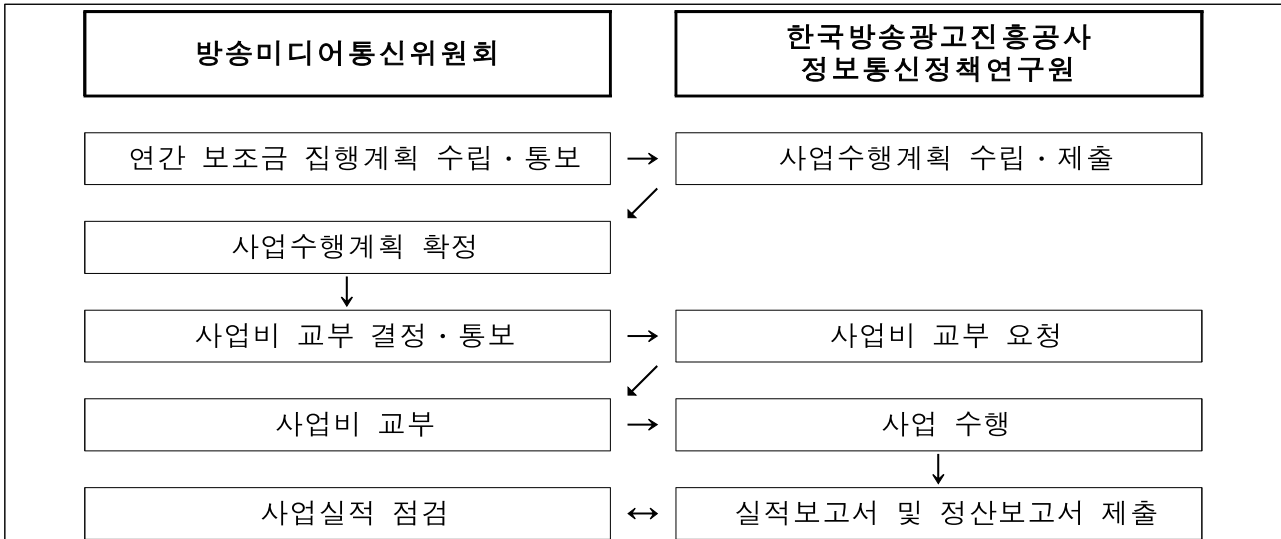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한 신뢰성 높은 방송콘텐츠 가치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여 중소제작·광고 업계, 학계·연구계 등에서 폭넓게 활용하여 K-콘텐츠 수출 확대 요인을 발굴하고,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운영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산발적으로 공개되는 방송 관련 통계·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통계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해 방송통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정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220백만원)	=> (220백만원)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220백만원)	=> (해당없음)	해당없음

-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187백만원)	=> (187백만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187백만원)	=> (해당없음)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22년)
 - (최종의견 및 점수)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결과 요약) 신규 내역사업을 기존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 효율화를 모색할 것
 - (조치) '23년 예산 '22년 대비 10% 감축, 신규 내역사업을 기존 내역사업으로 통합
- 보조사업 연장평가('24년)
 - (최종의견 및 점수)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결과 요약) 민간에서도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하여 공공 지원 필요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조치) '26년 예산 '25년 대비 10% 감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504	-	504	-	504	504	100.0	100.0	-	-
2023	454	-	454	-	454	454	100.0	100.0	-	-
2024	202	-	202	-	202	202	100.0	100.0	-	-
2025	452	-	452	-	452	45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28)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3134-3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통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신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40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2,868	2,278	2,278	1,442	1,442	△836	△36.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68	2,868	2,868	-	-	2,278	2,278	2,278	-	-	1,442
·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지원	2,313	2,313	2,313	-	-	1,737	1,737	1,737	-	-	1,028
· 방송광고마케팅 컨설팅 지원	299	299	299	-	-	266	266	266	-	-	139
·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	256	256	256	-	-	275	275	275	-	-	2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 소상공인 성장환경 구축 및 지역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소재 제작 및 지역매체 송출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1)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지원

- 선발된 소상공인 대상(지역 권역별 쿼터 적용 선발)으로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광고 송출비 지원하며, 전체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광고 매체 송출비 중 90% 지원(지원 한도 9백만원)

(2) 방송광고마케팅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대상 광고 제작·집행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광고전문가를 활용하여 광고/소재 제작, 지역 송출 매체 청약 등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

(3)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지원대상 기업선정 심사 및 사업 필요사항 의결을 위한 협의회 운영,광고 제작·집행 기본 교육 및 설명회 실시,성과 측정 및 사업 개선·발전을 위한 사업효과 평가조사 실시, 권역별 소상공인 간담회 실시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 제9호

제26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 제6호

제29조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20. 1 ~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신규 도입
- '22. 1 ~ : 지원대상 확대(136개사→177개사) 및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가점 부여
- '23. 1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대상 가점 부여
- '24. 1 ~ : 지원대상 확대(177개사→257개사)
- '25. 1 ~ : 조직개편(전북지소 폐소) 등으로 권역별 지원센터 재편(6개 권역→5개 권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32	2,132	2,868	2,278	1,4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지역 방송사업자, 지역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보조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	1,442 백만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지원 : ('25) 1,737백만원 → ('26) 1,028백만원, △7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 등에 따른 감액 요구(지원대상 △79개사) - (산출)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1,028백만원(10백만원 × 90% × 114개사) <p>②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지원 : ('25) 266백만원 → ('26) 139백만원, △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 등에 따른 감액 요구(지원대상 △79개사) - (산출)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139백만원(1.22백만원× 114개사) <p>③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25) 275백만원 → ('26) 275백만원, 전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사업 신청 경쟁률 증가에 따른 지원기업 선정 업무(지원협의회 운영 등), 사업 효과평가조사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275백만원(2.41백만원× 114개사) <p>지원협의회 운영 및 검증 등 : 212.52백만원/ 사업효과평가조사, 회계 감사 등 : 45.4백만원/ 협약식·기본교육·설명회 등 : 8.75백만원/ 유관기관 협력 등 : 8.33백만원</p> <p>* 사업 신청 경쟁률 : 24년 2.7:1 → 25년 4:1</p>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기여도 (단위: %)	목표	69	71	72	73	74	'25년 목표치에 1.5% 상향 가중치를 부여한 목표치 설정	(매출향상 지원기업 비율×0.4)+(익년도 방송광고 집행예정 기업 비율×0.4)+(지역방송광고 사업자 만족도×0.2)	외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사업 효과평가 조사
	실적	71.5	71.8	74.4	-	-			
	달성도	103.6%	101.1%	103.3%	-	-			

※ 과거 성과지표 측정산식('20~'23) : (매출향상 지원기업 비율×0.5) + (익년도 방송광고 집행예정기업 비율×0.5)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소상공인 지원(177개사) · 2차례 공모, 권역별 쿼터 적용,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57개사 선정 - 1대1 맞춤형 광고마케팅 컨설팅 제공(177개사) · 방송광고 효과 측정 및 지원사업 종료후 광고계획 수립 위한 사후컨설팅 확대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협의회' 및 '소상공인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센터' 운영(6개 권역)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소상공인 지원(177개사) · 2차례 공모, 권역별 쿼터 적용,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66개사 선정 · 정부 청년 지원사업 연계하여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자에 신규 가점 부여 - 1대1 맞춤형 광고마케팅 컨설팅 제공(177개사)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협의회' 및 '소상공인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센터' 운영(6개 권역)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소상공인 지원(257개사) · 2차례 공모, 권역별 쿼터 적용,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87개사 선정 · 지원사업 신청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신규 가점 부여 - 1대1 맞춤형 광고마케팅 컨설팅 제공(257개사)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협의회' 및 '소상공인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센터' 운영(6개 권역)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소상공인 지원(193개사) · 권역별 쿼터 적용,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사 선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가점 상향(2점→4점) - 1대1 맞춤형 광고마케팅 컨설팅 제공(193개사) · 컨설팅 시간 기존 5.5시간→6.5시간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 실적 향상 도모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협의회' 및 '소상공인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센터' 운영(5개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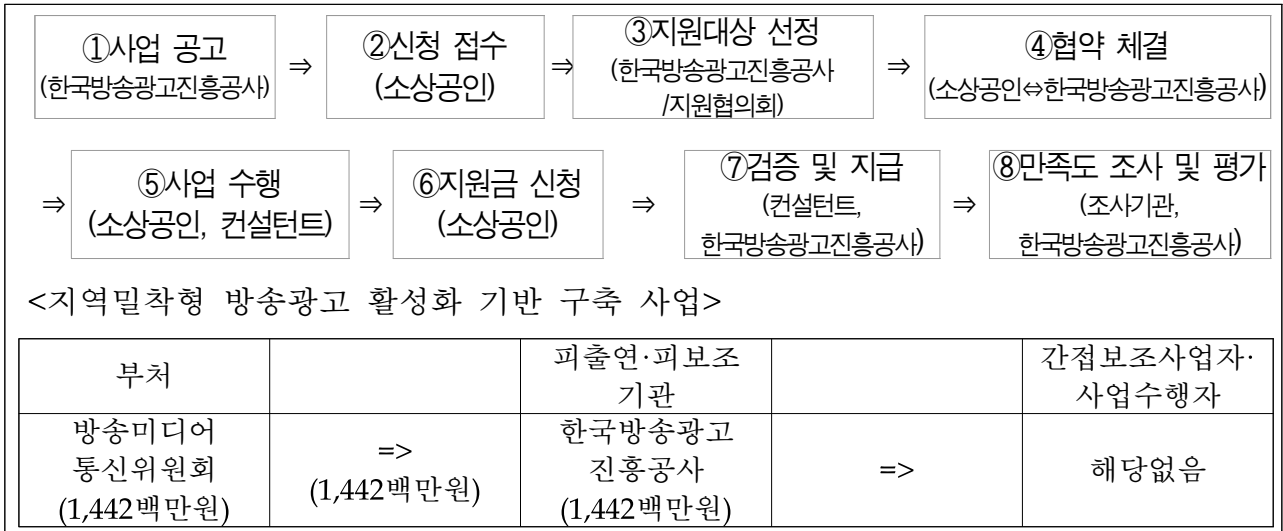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지역 방송광고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소상공인과 지역방송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기반 조성 ('28년 219사 지원 목표, 사업 지속 확대)
-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방송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로 언론의 다양성,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중기부 사업 내 중복 지원 의심, 컨설턴트와 지역 내 특정 광고회사 유착관계 의심 등 ('23년 예결위 결산)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큰 만큼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21년 국정감사)
- 2) 대외공개 평가
 -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통'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132	-	2,132	2,132	2,132	100.0	-	-
2023	2,132	-	2,132	2,132	2,132	100.0	-	-
2024	2,868	-	2,868	2,868	2,868	100.0	-	-
2025	2,278	-	2,278	2,278	2,278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9) OTT산업 경쟁력 강화 (3134-34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방송기반국	-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 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41
명칭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KCC)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OTT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OTT 해외 진출 지원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업시행주체	공모
OTT 해외 진출 지원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공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OTT 산업 경쟁력 강화	600	600	600	600	6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0	600	600	-	-	600	600	600	-	-	600
· 내역사업명	600	600	600	-	-	600	600	600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OTT 해외진출 지원)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조사(시장조사, 이용행태 조사)를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임
- (국제 OTT 포럼) 국내 OTT 사업자와 국내·외 업체, 학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OTT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포럼 개최
- (해외 OTT 조사) 국내 사업자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규제, 법률, 선호 장르, 요금제, 타겟 포인트 등의 종합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장진출 전략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 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동법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 동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 동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 및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범정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24.3.) 추진전략 3-1.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지원 다각화

② 추진경위

-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발표(’22.8월)
 - 1.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해외시장 기반 마련
-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발표(’23.2월)
 - 1-3. 디지털·미디어 혁신전략 추진,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 - OTT 해외진출 지원
-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발표(’24.3월)
 - 1-2. 혁신 성장 기반 조성-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미디어·콘텐츠 해외진출 및 신산업 활성화 지원-OTT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발표(’25.3월)
 - 2-3.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디지털 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글로벌 협력 기반 조성-OTT 해외 진출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24.3월)
 - 추진전략 3-1(국내 OTT의 해외 진출 지원 다각화)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2023~2025년('23.9월)
(관계부처 합동)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24.10월)
 - 전략1.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5.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_ K-OTT 수출 기회 확대
- 국제 OTT 포럼 개최('22년~)
 - 2022년: (일자/장소/참석자) '22.11.16./ 전경련 회관/ OTT 관계자 190여명
 - 2023년: (일자/장소/참석자) '23.11.16./ 앰버서더 서울폴만 호텔/ OTT 관계자 450여명
 - 2024년: (일자/장소/참석자) '24.10.31./ 앰버서더 서울폴만 호텔/ OTT 관계자 427여명
 - 2025년: (일자/장소/참석자) '25.11.6 / 앰버서더 서울폴만 호텔/ OTT 관계자 433여명
- 해외 OTT 시장조사·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발간('22년~)
 - 2022년: (시장조사 국가)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이용행태조사 국가)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 2023년: (시장조사 국가)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이용행태조사 국가) 영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 2024년: (시장조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이용행태조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 2025년: (시장조사 국가) 인도, 미국, 프랑스, 태국
(이용행태조사 국가)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튀르키예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0	600	600	600	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보조사업 공모 예정
- 사업 수혜자 : OTT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일반국민(OTT이용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OTT 해외진출 지원	민간 경상 보조	공모 선정기관	600백만원	정액 (100%)	-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 OTT 해외진출 지원 : ('25) 600백만원 → ('26) 600백만원, 전년동</p> <p>- (요구) 국내 OTT 사업자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지원 (산출) ① 국제 OTT 포럼 250백만원 x 1식 = 250백만원 (전년동) ② 해외 OTT 조사 350백만원 x 1식 = 350백만원 (전년동)</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60	70	75	77	80	전년 대비 3점 향상 목표 설정	[사업필요성*0.5]+ [사업만족도*0.5] (100점 환산)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실적	79.3	82.3	85.5	-	-			
	달성도	132.2	117.5	11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OTT 포럼) 제1차 국제 OTT 포럼 개최('22.11.16.) ○ (해외 OTT 시장조사) 중국, 멕시코,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OTT 시장상황, 법적·제도적 규제 현황 등 ○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이용자들의 OTT 이용행태 및 K-콘텐츠 선호도 등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OTT 포럼) 제2회 국제 OTT 포럼 개최('23.11.16.) ○ (해외 OTT 시장조사)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OTT 시장상황, 법적·제도적 규제 현황 등 ○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영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이용자들의 OTT 이용행태 및 K-콘텐츠 선호도 등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OTT 포럼) 제3회 국제 OTT 포럼 개최('24.10.31.) ○ (해외 OTT 시장조사) 사우디,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OTT 시장상황, 법적·제도적 규제 현황 등 ○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사우디,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이용자들의 OTT 이용행태 및 K-콘텐츠 선호도 등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OTT 포럼) 제4회 국제 OTT 포럼 개최('25.11.6.) ○ (해외 OTT 시장조사) 미국, 프랑스, 인도,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OTT 시장상황, 법적·제도적 규제 현황 등 ○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이용자들의 OTT 이용행태 및 K-콘텐츠 선호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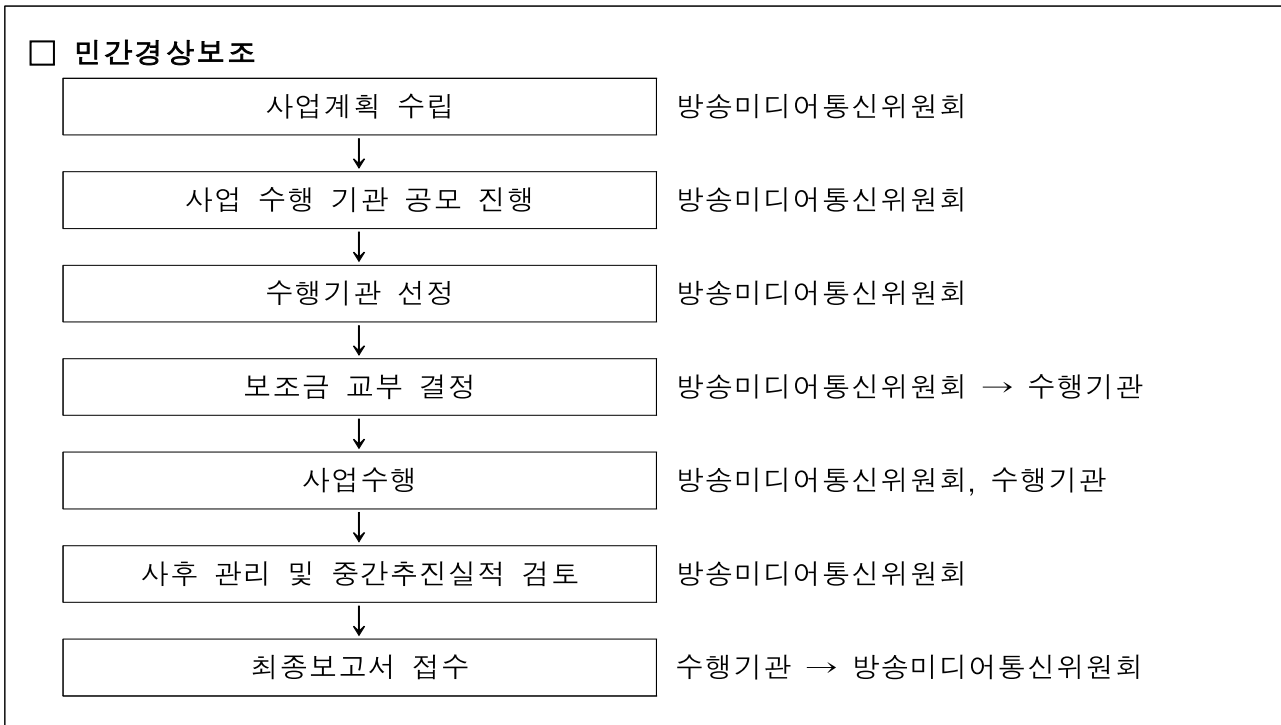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OTT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국내 OTT 산업 경쟁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외 OTT 이용행태 조사'는 문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한류실태조사'와 조사 대상 및 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음.(22년도 예산안 예정처 검토보고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바코가 수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은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공모방식 검토 필요(22년도 예산안 예정처 검토보고서)
 - 기금의 수혜자부담원칙에 어긋남,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 필요 (22~23년도 예산안 과방위 검토보고서/ '24년도 결산 과방위 검토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50	-	-	600	600	100	-	-
2023	600	-	-	600	600	100	-	-
2024	600	-	-	600	600	100	-	-
2025	600	-	-	600	6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2022	- '계획 변경'의 상세 내역 기술 - 계획 변경 사유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2023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4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5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0)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31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6	기획조정관		060	06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2,392	2,400	2,400	2,400	1,768	Δ632	Δ26.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00	2,400	2,392	-	8	2,400	2,400	2,311	-	89	1,768
·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2,400	2,400	2,392		8	2,400	2,400	2,311		89	1,768
-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2,250	2,250	2,250		-	2,250	2,250	2,216		34	1,618
- 방송통신 학술 행사 지원 등	150	150	142		8	150	150	95		55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방미통위 주요 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요 정책 수립 전 전문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사례 파악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
- (방송통신 학술행사 지원 등) 산·학·연 주관 세미나를 지원하여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연구 성과 확산 및 지식 공유 기반 확대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② 추진경위

- '08년 :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시행
- '13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연구 사업을 (신)방송통신 위원회와 미래부 간의 업무분장에 따라 분리
- '25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관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00	2,300	2,400	2,400	1,76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학계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p> <p>: ('25) 2,250백만원 → ('26) 1,618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디지털·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송통신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스팸, 디지털성범죄 등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보호 정책의 전문적인 분석 수요 증가에 따라, 경쟁력있는 연구수행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고품질의 연구결과 도출 필요 - (산출) 정책연구 1,618백만원(53.9백만원 x 30개 과제) <p>② 방송통신 학술행사 지원 등</p> <p>: ('25) 150백만원 → ('26) 1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기획 및 공론화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등을 감안, '24년 대비 동일액 요구 - (산출) 학술행사 140백만원(10백만원 x 14개 과제) 정책연구 수행 경비 10백만원(1.4백만원 x 7회) <p>○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p>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비 (260-02) : 2,390,000천원 가.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2,2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과제 수행 : 52,300,000원×43개= 2,250,000천원 나. 방송통신 학술행사 지원 (1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행사 지원 : 10,000,000원×14개= 14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정책연구 수행경비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1,400,000원×7회=10,000천원 	1,7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비 (260-02) : 1,758,000천원 가.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1,618,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과제 수행 : 53,933,333원×30개= 1,618,000천원 나. 방송통신 학술행사 지원 (1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행사 지원 : 10,000,000원×14개= 14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정책연구 수행경비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1,400,000원×7회=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연구 결과 활용률 (단위: %)	목표	88	89	90	91	92	정책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92%로 목표치 상향 설정	$\frac{\{(\text{법령 제·개정 과제건수} + \text{제도개선 과제건수} + \text{정책반영 과제건수}) / (\text{당해연도 전체과제 건수})\} \times 100}{}$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www.prism.go.kr) 자료
	실적	89.18	89.2	90	-	-			
	달성도	101.3	100.2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37개 과제 (정기과제 30개, 수시과제 7개) 지원 ○ 학술행사 14개 지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37개 과제 (정기과제 27개, 수시과제 10개) 지원 ○ 학술행사 12개 지원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40개 과제 (정기과제 37개, 수시과제 3개) 지원 ○ 학술행사 8개 지원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41개 과제 (정기과제 32개, 수시과제 9개) 지원 ○ 학술행사 6개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바람직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기반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연구과제 신청 및 접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실국별 과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핵심과제 위주로 추진
↓		
② 연구과제 선정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과제의 적합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활용목적의 명확성 등의 기준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
↓		
③ 수행기관 공모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및 방미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행기관 공모 실시
↓		
④ 연구자 평가 및 적격자 선정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공모 결과 입찰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⑤ 계약 체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과제담당관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후 계약 체결
↓		
⑥ 연구 진행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과제 수행기관에서 연구 진행
↓		
⑦ 중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심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과제담당관이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점검결과를 심의
↓		
⑧ 연구결과(연구보고서) 제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과제담당관이 그 결과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제출
↓		
⑨ 연구결과 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연구목표의 달성도, 결과의 활용성, 연구의 질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외부 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
↓		
⑩ 활용상황 점검 및 보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활용상황을 보고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책연구의 과제 내용·기간·연구비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자가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21년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을 개선할 필요('24년·'25년 과방위 예산, '23년 과방위 결산 검토보고서)
 - 정책연구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행사 지원 경비의 비목을 조정할 필요('24년 과방위 예산, '23년 과방위 결산 검토보고서)
- 2) 감사원 지적
 - 추진실적과 다르게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측정('23년 감사원 성과보고서 검사)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수행기관 공모 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연구 과제 선정 시 과제별 연구비 비중을 적정하게 맞추도록 노력중
 - 수행기관 공모 시 정책연구 세부주제에 따라 개별 공고를 진행하여 연구 주제가 쉽게 드러날 수 있게 변경('25년~)
 - 학술행사 지원시, 정책연구 추진 방식에 준하여 사업 추진중('24년~)
 - 성과지표(연구 결과 활용 수준) 실적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달성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00	2,300	2,300	2,300	2,283	99.3	-	17
2023	2,300	2,300	2,300	2,300	2,248	97.8	-	52
2024	2,400	2,400	2,400	2,400	2,392	99.7	-	8
2025	2,400	2,400	2,400	2,400	2,311	96.3	-	89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정책연구 집행 잔액(17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정책연구 집행 잔액(52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정책연구 집행 잔액(8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정책연구 집행 잔액(89백만원)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1)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3135-302)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	방송미디어	기획조정관	-	060	061
명칭	기금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분야 통상대응체계 구축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2,150	1,626	1,626	2,188	1,455	△181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48	2,148	2,148	-	-	1,626	1,626	1,626	-	-	1,455
· 방송통신국제협력 인프라강화	274	274	274	-	-	254	254	254	-	-	254
· 방송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	90	90	90	-	-	90	90	90	-	-	90
· 방송통신분야통상 대응체계구축	270	270	270	-	-	270	270	270	-	-	270
·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81	81	81	-	-	81	81	81	-	-	-
·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306	306	306	-	-	117	117	117	-	-	117
· 북한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153	153	153	-	-	100	100	100	-	-	-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434	434	434	-	-	354	354	354	-	-	354
· 공동제작협정제작지원	540	540	540	-	-	360	360	360	-	-	3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 방송미디어통신 규제 분야 고위급 면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와 규제 분야 국제 현안 공조를 위한 정부 지원
-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방송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 논의에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미디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의 신규 통상 이슈 및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통상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대국민 통일외식 제고 추진
-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정부와의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방송사업자 등 지원 정책 추진
 - FTA에 근거가 마련된 국가들과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국내 프로그램 인정, 제작지원, 인력·장비 출입국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 해외방송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방송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방송 공동 제작 국제 콘퍼런스 매년 개최
-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직접 제작비를 지원
 -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하여 방송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97조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23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건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 교류협력의 지원)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국제협력업무(국제기구 협력, 통상협상 및 협정 체결, 공동 제작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02년부터 예산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06	2,356	2,148	1,626	1,4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모)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방송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254	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방송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	보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90	100%	방송법 제97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방송통신분야 통상대응체계 구축	보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70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제26조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17	100%	방송법 제97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 26조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보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354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제26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보조	한국전파 진흥협회 (공모)	360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 제23조 방송법 제97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 ('25) 254백만원 → ('26) 254백만원, (0, 전년동) - (산출) 해외 정부 간 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의제 대응 등 : 84백만원 민간 통역 인력 지원 : 70백만원
②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 ('25) 90백만원 → ('26) 90백만원, (0, 전년동) - (산출) 방송분야 공동협력 관련 정부 간 의제 발굴 및 연구 지원 등 : 5건x6백만원 = 30백만원 국제기구 공동연구 및 워크숍 개최 : 25백만원 주요 회의 참석 및 대응 등 : 25백만원 전문가/이해관계자 회의 등 운영 : 10백만원
③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 ('24) 270백만원 → ('25) 270백만원, (0, 전년동) - (산출)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통상 협상 대응 : 246.4백만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 13.6백만원 법률자문 : 10백만원
④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25) 117백만원 → ('26) 117백만원, (0, 전년동) - (산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100백만원 심사위원회, 아이템선정 회의 및 운영비 등 : 17백만원
⑤ 방송 공동제작 협력강화 : ('25) 354백만원 → ('26) 354백만원, (0, 전년동) - (산출) 공동제작협정 협상대응 : 60백만원 국내실무협의체(방송업계 및 법률전문가 자문) : 4백만원 FTA 체결 국가의 방송콘텐츠 규제 및 시장조사 : 128백만원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162백만원
⑥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 ('25) 360백만원 → ('26) 360백만원, (0, 전년동) - (산출) 프로그램제작지원 : 300백만원 사업 홍보 및 관리 등 사업 운영 : 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점)	목표	73	74.5	75	75	75	국제 정세 흐름 협력 추진목의 상황 등 외부요소에 의해 성과 달성 여부의 변동성이 크고 해외 협력의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설정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만족도)×0.5+(방송 공동제작 협력강화 만족도)×0.5]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공동제작 관련 설문조사 결과
	실적	73.8	74.8	76	(76.9)	-			
	달성도	101.1	100.4	101	102.5	-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 (횟수)	목표	4	4	4	4	4	전년도 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설정	분석자료 및 회의결과 보고서	주요회의 참석대응 건수 (회의 참석 및 의제 분석 대응 횟수 합산)
	실적	6	4	6	5	-			
	달성도	150	100	150	125	-			

방송통신 통상 대응체계 구축 통상협상 지원 실적(횟수)	목표	18	18	20	22	22	전년도 통상협상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설정	통상협상 의제분석 및 대응횟수 합산	내부 분석자료 및 회의록
	실적	18	18	20	22	-			
	달성도	100	100	100	100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만족도(점)	목표	82	83	83	87	(삭제)	전년도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설정	남북 방송통신 교류 분야 정책 만족도	방송통신 업계 및 학계 등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 수혜기관 설문조사 결과
	실적	86	84.6	86.3	(91.9)	-			
	달성도	104.9	102	104	105.6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만족도(점)	목표	-	-	-	(신설)	85	전년도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설정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만족도	방송프로그램 시청자(청취자) 설문조사 결과
	실적	-	-	-	-	-			
	달성도	-	-	-	-	-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프로그램 제작실적(편수)	목표	2	2	2	2	2	제작지원 예산 대비 제작 편수 설정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수	사업실적 보고서 및 프로그램 완성본
	실적	3	3	3	2	-			
	달성도	150	150	15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전자상거래, 한-GCC FTA, 한-에콰도르 SECA, DEPA 가입협상 등 협상 의제 분석(연중수시) ○ 한-GCC FTA 협상, DEPA 가입협상, 한-에콰도르 SECA 협상 대응 ○ 한-싱 DPA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 대응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선언문 및 디지털경제 협상 대응 (연중 수시) ○ 한-태국 TV프로그램 협정, 한-중국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협상 대응 등 ○ '22년 공동제작 지원 수행기관 선정(KISDI) 및 제작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업자 선정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및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 통일 방송·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방영 ○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표창,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IBCC) 및 한-AIBD 공동세미나 개최 ○ 3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방송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발간(12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전자상거래, IPEF(미국 등 14개국), 한-GCC(사우디 등 6개국) FTA, DEPA(싱·칠·뉴) 가입, 한-에콰도르 SECA, 한-EU DTA, 한-몽골 EPA 등 他국가와 협상 중인 통상이슈 대응 ○ 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과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협력강화(1월) ○ 남북 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및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 통일 방송·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방영 ○ IPEF(미국 등 14개국), DEPA(싱·칠·뉴), 한-GCC(사우디 등 6개국) 등 他국가와 협상 중인 통상이슈 대응 및 한-중국, 한-캐나다, 한-태국 등 방송공동제작협정 추진(상시) ○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표창,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IBCC) 및 한-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공동워크숍 개최 및 AIBD 회원국의 방송 실무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 3개국(중국·스페인·아르헨티나) 방송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발간(12월)

<p>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전자상거래, 한-EU DTA, 한-영국 FTA 개선, 한-조지아 EPA, 한-몽골 EPA, 한-태국 EPA, 한-말레이시아 FTA 등 他국기와 협상 중인 통상 이슈 대응 및 한-캐나다 등 공동제작협정 추진 ○ '24년 공동제작 지원 수행기관 선정(RAPA) 및 제작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업자 선정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 말레이시아(MCMC·RTM), 중국(SMG, AI연구소), 베트남(공산당 중앙선전교육위), 태국(Thai PBS), 싱가포르(Mediacorp) 등 해외 방송통신 관계자 면담 및 글로벌 협력강화 논의 ○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표창,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IBCC) 및 한-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공동워크숍 개최 및 해외 정책 사례 파악 ○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현황 공유 및 논의(미국 FCC, 태국 NBTC 등) ○ 태국 국제방송통신기구(IIC) 국제규제자 포럼(IRF) 및 제55차 연례회의 참석, ○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표창,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IBCC) 및 한-AIBD 공동세미나 개최 ○ 3개국(일본·캐나다·몽골) 방송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발간(12월) ○ 통일 방송·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방영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p>2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수행기관 선정(RAPA) 및 제작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업자 선정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 부산콘텐츠마켓(BCM)에서 방송사 및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공동제작협정 및 제작지원' 홍보를 통해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기반 마련 ○ MWC(모바일 월드 콘그레스) 참관을 통한 국내외 통신 기술 동향 점검 및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공영방송사(RTVE)와 협력체계 구축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글로벌 빅테크(메타, 오픈AI), 방송사(C-SPAN), 한국계 스타트업과 주요 방송통신 정책현안 논의 ○ 한-EU DTA, 한-말레이시아 FTA, 한-영국 FTA 개선 협상 타결 및 한-태국 CEPA, 한-몽골 CEPA 등 신규 통상협정 및 한-중국 FTA 등 기존 협정의 현대화 협상 추진 등 국내 법제와 합치성 확보 방안 마련(연중 계속) ○ 한-페루 FTA 규범 현대화 및 UAE, 페루 등의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관련 쟁점 분석 및 검토 후 최적화 방안 제시 ○ USTR NTE 제기사항,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한-미 기술협의를 등 대미 통상현안 대응 등(연중 계속) ○ 한-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공동워크숍 개최를 통해 '미디어에서의 AI'를 주제로 국내 기술 소개 및 해외 정책 사례 파악 ○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표창,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IBCC) 및 한-AIBD 공동세미나 개최 ○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발간(12월, 튀르키예·대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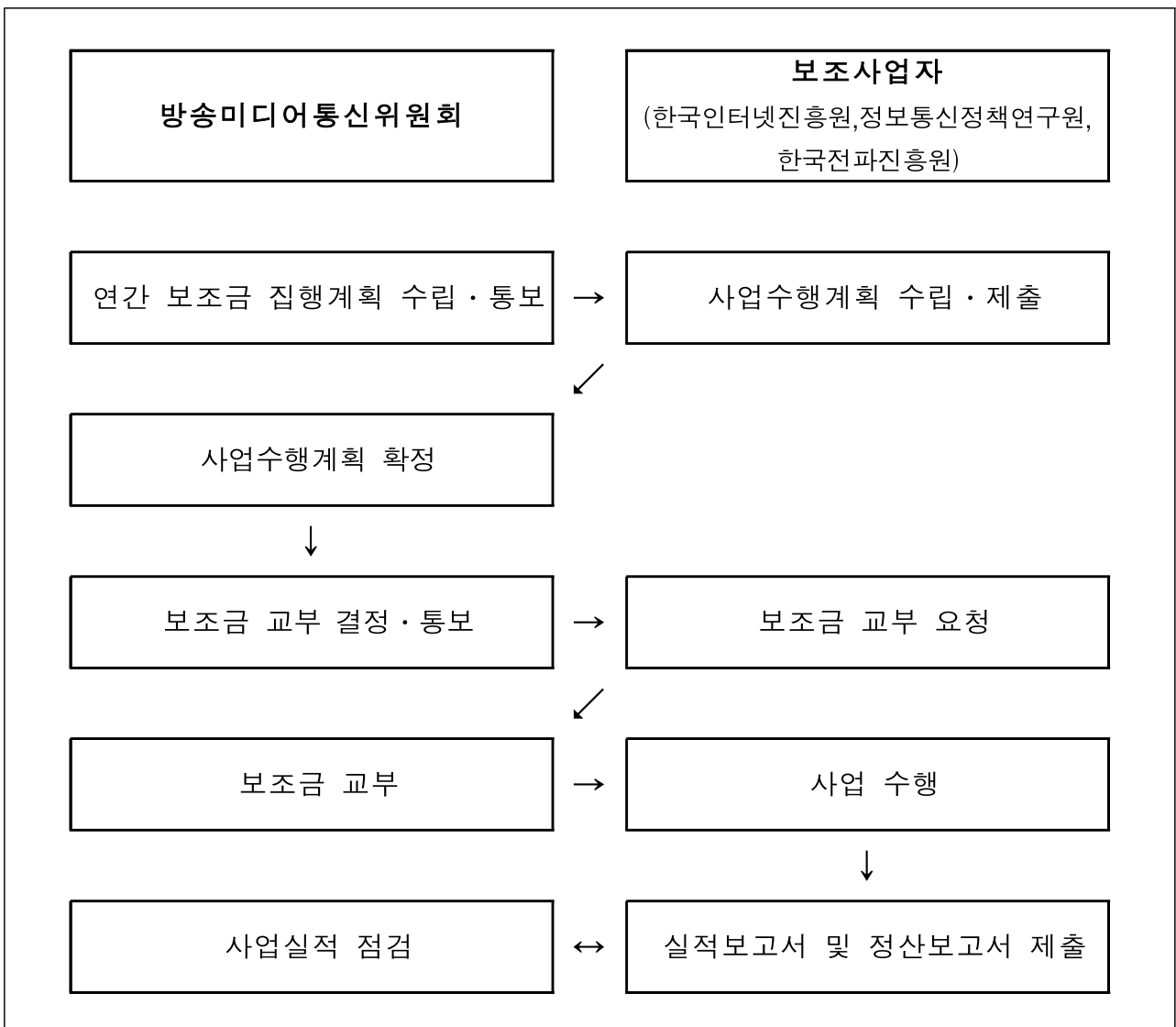
- 방송통신 분야 국제 협력 인프라 구축 활동 및 MoU 이행, 국제회의·행사 준비 등 관련 현안 대응, 방송통신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 강화
- 방송 국제기구에 대한 자문 등 국제기구와 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 논의에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미디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FTA 및 WTO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 전문적으로 대응 체계 고도화
- 비정치적인 분야의 통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와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

-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을 통한 수출증대, 제작기술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등 국제 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방송한류 견인
- 방송 공동제작협정체결 국가와의 공동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여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 활성화 및 한국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촉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254백만원)	=> (254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54백만원)	=> (-)	해당없음
-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90백만원)	=> (90백만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90백만원)	=> (-)	해당없음
- 방송통신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270백만원)	=> (270백만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70백만원)	=> (-)	해당없음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117백만원)	=> (117백만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117백만원)	=> (-)	해당없음
- 방송 공동제작 협력강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354백만원)	=> (354백만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354백만원)	=> (-)	해당없음
-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360백만원)	=> (360백만원)	한국전파진흥협회 (60백만원)	=> (300백만원)	공모절차진행

8) 각종 평가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2년도) 결과 : 내역사업간 통합 및 재구성을 통한 사업관리 제고 및 성과지표 개선을 통한 사업 효과성 강화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06	-	2,606	2,606	2,576	98.8	-	30
2023	2,356	-	2,356	2,356	2,356	100	-	-
2024	2,148	-	2,148	2,148	2,148	100	-	-
2025	1,626	-	1,626	1,626	1,626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2) 재난방송 운영지원 (3135-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	방송미디어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기금	통신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7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방송통신운영지원	재난방송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시행주체
KBS재난방송 운영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재난방송관리팀)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공사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재난방송관리팀)
	사업시행주체	공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재난방송 운영지원	2,738	2,686	2,686	3,286	3,286	600	22.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38	2,738	2,738	-	-	2,686	2,686	2,686	-	-	3,286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2,119	2,119	2,119	-	-	2,119	2,119	2,119	-	-	2,719
· 방송통역 수어 통역사 재교육	52	52	52	-	-	-	-	-	-	-	-
· 재난방송 종합 상황실 운영	567	567	567	-	-	567	567	567	-	-	567
○ 비목별 분류(합계)	2,738	2,738	2,738	-	-	2,686	2,686	2,686	-	-	3,286
· 민간경상보조 (320-01)	2,738	2,738	2,738	-	-	2,686	2,686	2,686	-	-	3,286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2,738	2,738	2,738	-	-	2,686	2,686	2,686	-	-	3,286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2,119	2,119	2,119	-	-	2,119	2,119	2,119	-	-	2,719
- 민간경상보조 (320-01)	2,119	2,119	2,119	-	-	2,119	2,119	2,119	-	-	2,719
· 방송통역 수어 통역사 재교육	52	52	52	-	-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52	52	52	-	-	-	-	-	-	-	-
· 재난방송 종합 상황실 운영	567	567	567	-	-	567	567	567	-	-	567
- 민간경상보조 (320-01)	567	567	567	-	-	567	567	567	-	-	5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난방송 운영지원) 방송을 통한 정확·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을 통해 태풍·지진·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기여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재난방송등 주관방송사인 KBS가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속한 재난방송을 제공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방송 실시현황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상황관리 등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② 추진경위

- 지진,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정확·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인프라 등 개선 필요
- 관련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역량강화 및 역할 수행에 필요
- 대통령 지시사항(제14회 국무회의, '19.4.9.) : 재난방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 강조에 따라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사업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20	2,823	2,738	2,686	3,2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공사(KBS), 공모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보조	한국방송 공사	2,719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5호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보조	공모	567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5호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 ('25) 2,119백만원 → ('26) 2,719백만원, 600백만원
- (요구) 600백만원 증액한 2,719백만원 요구
 - (산출)
 - 수어방송 제작 지원 : 인건비, 3.2백만원x4명x12개월=154백만원
 - 재난콘텐츠 제작 지원(1,000백만원)
 -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10백만원x90편
 - 국민행동요령 및 재난방송 수어통역 콘텐츠 5백만원x20편=100백만원
 - 재난미디어시스템 구축 운영(1,565백만원)
 - 재난안전지도 개발 운영 300백만원
 - 통합재난방송시스템 구축 390백만원
 - 재난CCTV 시스템 운영 및 외부 개방 606백만원
 - 재난포털 서비스 운영 269백만원
- ②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 ('25) 567백만원 → ('26) 567백만원, 전년동
- (요구) 2025년 예산액과 동일한 567백만원 요구
 - (산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252백만원) + 재난방송 실시현황 모니터링(31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재난 미디어 구축과 재난정보의 신뢰도 (단위: 점)	목표	신규	83	83.5	84	84.5	재난 현장에 정확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의 신뢰도를 제고	KBS 재난방송 평가 항목별 점수 (①신뢰도 높은 재난정보 제공× 0.5 + ②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재난미디어× 0.5)	외부 자문평가단 평가자료
	실적	-	90.4	92.13	92.8	-			
	달성도	-	109%	110.3%	110.5%	-			
재난방송 수어통역 콘텐츠 제작물 (단위: %)	목표	-	-	-	신규	100	재난방송 수어통역 콘텐츠 제작 (20편, 100%)	재난방송 수어통역 콘텐츠 제작 건수 / 20 * 100	재난방송 수어통역 콘텐츠 업로드 건수 산정
	실적	-	-	-	-	-			
	달성도	-	-	-	-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단위: 명)	목표	110	110	50	종료	종료	청각장애인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시 한국 수어통역이 가능한 인력 확충을 위해 설정	(①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 0.5) + (②수어통역사 재교육 만족도 × 0.5)	교육결과 내부자료
	실적	126	87	-	-	-			
	달성도	114%	79.1%	-	-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만족도 (단위: 명)	목표	85	85	85	종료	종료	한국 수어통역이 가능한 인력 확충을 위해 설정	(①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 × 0.5) + (②수어통역사 재교육 만족도 × 0.5)	교육결과 내부자료
	실적	85.4	88.3	-	-	-			
	달성도	100%	104%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취약시간대(18:00~(익)09:00) KBS 정규뉴스 및 수시 뉴스특보에 수어통역 제공 - 봄철 산불 예방법 등 재난재해 행동요령(37편) 제작(KBS)을 지원하고 타 방송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 GIS기반 재난그래픽 콘텐츠 고도화 개발 및 자동생산 - KBS 재난포털 운영 및 재난 CCTV 운영 및 고도화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협약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9개 지역센터 교육실시 (126명 수료) - 산불, 장마, 집중호우, 풍랑 등 재난방송 모니터링 실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취약시간대(17:30~(익)08:00) KBS 정규뉴스 및 수시 뉴스특보에 수어통역 제공 -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37편 제작 및 타 방송사 공유 - GIS 콘텐츠 및 인프라 고도화, KBS 재난포털 운영, KBS 재난CCTV(40개) 운영 등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서울센터 포함 6개 센터, 온라인 통합 과정 실시 - '22년도, '23년도 우수수료자 대상 재난 안전 수어통역 영상 콘텐츠 10편 제작 - 산불,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방송 실시현황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23,379회)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취약시간대(17:30~(익)08:00) KBS 정규뉴스 및 수시 뉴스특보에 수어통역 제공 -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40편 제작 및 타 방송사 공유 - GIS 콘텐츠 및 인프라 고도화, KBS 재난포털 운영, KBS 재난CCTV(40개) 운영 등 - 산불,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방송 실시현황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20,019회)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취약시간대(18:00~(익)09:00) KBS 정규뉴스 및 수시 뉴스특보에 수어통역 제공 -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40편 제작 및 타 방송사 공유 - GIS 콘텐츠 및 인프라 고도화, KBS 재난포털 운영, KBS 재난CCTV(40개) 운영 등 - 산불, 집중호우, 폭염 등 재난방송 실시현황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12.9 기준 15,948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90편 제작하여 국민의 안전 의식 제고
- 재난방송 수어 통역 콘텐츠 20편 제작하여 재난 취약 계층의 재난 정보 접근권 강화
- 재난방송 실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한 재난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생명과 안전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계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통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9조
↓		
② 사업 수행 계획	한국방송공사 공모	사업수행계획 수립·제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		
③ 사업 확정·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업수행계획 확정,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1조
↓		
④ 보조금 신청	한국방송공사 공모	보조금 교부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3조
↓		
⑤ 보조금 교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조금 교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3조
↓		
⑥ 사업 수행	한국방송공사 공모	사업 수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4조
↓		
⑦ 사업 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업 수행 실적 점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		
⑧ 보고서 제출	한국방송공사 공모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7조 제9조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2,719백만원)	=> (2,719백만원)	한국방송공사 (2,719백만원)	=> (-)	해당없음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567백만원)	=> (567백만원)	공모 (567백만원)	=>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가. 내역사업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은 성과지표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2023년 성과달성률이 49.1%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음(과방위,23결산)
 - 나. '23년도 한국농아인협회와의 교착 상태 장기화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 필요(국정감사,23결산)
 - 다.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이수자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이수자가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조기 계획수립 및 홍보 또는 온라인 교육의 확대를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예결위,24예산)
 - 라. 향후 재난안전 LIVE 콘텐츠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자원 마련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과방위,22결산)
 - 마. 재난방송 채널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구체적인 자원 마련·운영계획 없이 재난방송 LIVE 콘텐츠 제작·공유 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재난방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예정처,22결산)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가. 나. 특정(방송통역) 영역에서의 수어통역사 재교육은 그 간의 성과(교육인원, 영상 제작 등)로 비추어보면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사료됨에 따라, 향후 수어통역사,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음
 - 다. 조기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교육대상 모집을 강화하겠음
 - 라. 마. 재난전문채널(다채널서비스, MMS 등)을 위한 법·자원·운영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020	-	4,020	4,020	3,981	99.0	-	39
2023	2,823	-	2,823	2,823	2,823	100	-	-
2024	2,738	-	2,738	2,738	2,738	100	-	-
2025	2,686	-	2,686	2,686	2,686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KBS 재난전문채널 운영('23년)이 방송법 개정 지연 및 예산 미확보로 불발됨에 따라 '22년도 재난안전 LIVE 콘텐츠 제작 지원이 1회성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어 재난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일부 불용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사 업 명

(33)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 (24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8	39			130	131
명칭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	-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2
명칭	통신정책지원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소관부처	방송미디어진흥국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	-	-	170.2	170.2	170.2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70.2
· 방송사업 허가 심사 지원	-	-	-	-	-	-	-	-	-	-	17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사업 심사 지원) 방송사업(SO·IPTV·위성·RO·홈쇼핑)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심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을 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5의2(재허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8~ : 유선 및 위성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2009~ : IPTV사업 허가심사 지원
- 2016.12월 : 유료방송 발전방안(정보통신전략위원회)
 - 방송서비스 일부(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송출 종료에 따른 피해 방지로 시청자 선택권 보장
- 2017.3월 :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마련
 -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제도화 추진, 아날로그 종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추진 지원('17.4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0.3	170.2	170.2	170.2	170.2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
- 사업시행주체 : 사업 시행 기관명 적시
- 사업 수혜자 : 사업수행대상은 구체적으로 적시 ex.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25) 170.2백만원 → ('26) 170.2백만원

- (요구) 방송사업(SO, IPTV, 위성, 홈쇼핑, RO) 허가·승인 심사, 관련 자문 등에 따른 비용
- (산출) 일반수용비 103백만원, 임차료 32.8백만원, 국외여비 7.3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27.2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103백만원 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위원회, 자문회의 등 개최(103백만원) · 심사위원 수당, 인쇄료, 회의용품, 속기료 등 - 10,300,000원x10회=103백만원 ○ 임차료(210-07) : 32.8백만원 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위원회, 자문회의 등 개최(32.8백만원) · 심사장소 및 회의장소, 운송차량, 전산장비 등 - 3,280,000원x10회=32.8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7.3백만원 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정책수립을 위한 해외유관기관 방문 7.3백만원 · 7,300,000원x1회=7.3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7.2백만원 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위원회, 자문회의 등 개최(27.2백만원) · 심사 관련 식사·다과 : 13.6천원x20명x10식x10회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210-01) : 103백만원 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위원회, 자문회의 등 개최(103백만원) · 심사위원 수당, 인쇄료, 회의용품, 속기료 등 - 10,300,000원x10회=103백만원 ○ 임차료(210-07) : 32.8백만원 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위원회, 자문회의 등 개최(32.8백만원) · 심사장소 및 회의장소, 운송차량, 전산장비 등 - 3,280,000원x10회=32.8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7.3백만원 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정책수립을 위한 해외유관기관 방문 7.3백만원 · 7,300,000원x1회=7.3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7.2백만원 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위원회, 자문회의 등 개최(27.2백만원) · 심사 관련 식사·다과 : 13.6천원x20명x10식x10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홈쇼핑 재승인 5개사, 종합유선(SO) 변경허가 6개법인, 중계유선(RO) 재허가 8개사, 변경허가 2개사 심사
2023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홈쇼핑 재승인 1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11개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재허가 3개사
2024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1개사 및 재허가 2개사, 중계유선 방송사업자(RO) 재허가 1개사, 홈쇼핑 변경승인 1개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변경승인 1개사
2025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56개사, 홈쇼핑 재승인 2개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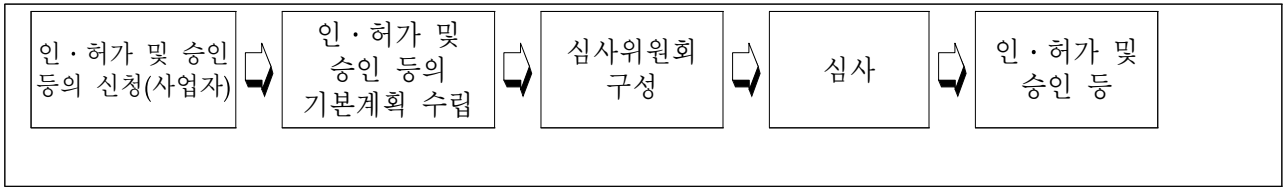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방송사업 심사지원) 방송법 제9조·제15조·제15조의2, 인터넷방송법 제4조·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 허가·승인 등에 따른 이용자 권익보호 및 방송통신 발전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0.3	-	170.3	-	170.3	150.7	88.4	88.4
2023	170.2	-	170.2	-	170.2	137.9	80.9	80.9
2024	170.2	-	170.2	-	170.2	112.1	65.8	65.8
2025	170.2	-	170.2	-	170.2	95.6	56.1	56.1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4)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3251-30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미디어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4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및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위치정보정책팀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사업시행주체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위치정보정책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1,400	1,360	1,360	1,088	1,088	△272	△2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00	1,400	1,400	-	-	1,360	1,360	1,360	-	-	1,088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160	160	160	-	-	150	150	150	-	-	150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220	220	220	-	-	200	200	200	-	-	200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	1,020	1,020	1,020	-	-	1,010	1,010	1,010	-	-	7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여러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통해 구조 요청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이통사로 부터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취약점 점검, DB 서버 이중화, 보안 솔루션 구축 등 플랫폼의 안전성 향상 및 성능 고도화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 관서에 정확하고 끊김 없는 Wi-Fi AP(Access Point) 기반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긴급구조 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되는 이동사의 위치정보 품질,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정보 제공 기능 등을 측위 기술별(기지국, GPS, Wi-Fi 등)로 측정·분석하고, 품질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긴급구조 관련 정책 및 현안, 품질 제고방안 등 논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적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0. 6월,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11. 10월,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7대 스마트 신산업 선정
- '12. 5월, 국무총리 지시사항(위치정확도 제고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국무총리실 제118회 국가정책 조정 회의)
- '12. 11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4. 12월,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청 위치정보 상용서비스 제공 개시
- '15. 9월, 긴급구조를 위한 국민안전처 위치정보 상용서비스 제공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81	1,159	1,400	1,360	1,0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사업출연금,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민간보조)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구조 요청자),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사업 출연금	한국 인터넷 진흥원	150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민간 경상 보조	(사)한국통신 사업자 연합회	2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	사업 출연금	한국 인터넷 진흥원	738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 ('25) 150백만원 → ('26) 150백만원, 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이동통신사 간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통해 구조 요청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취약점 점검, 장비 교체 등 플랫폼 안전성 향상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150백만원
<p>②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 ('25) 200백만원 → ('26) 200백만원, 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정확하고 끊김 없는 Wi-Fi 기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관련 365일·24시간 모니터링 및 보안관제를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200백만원
<p>③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제고 : ('25) 1,010백만원 → ('26) 738백만원, △2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및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정보 제공 기능 등을 측정·분석하여 위치 정보 품질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자발적 개선 유도 - (산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 시험 483백만원 긴급구조기관·이통사 간 연계 시스템 등 유지보수 243백만원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 운영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치정보 응답 성공률 (단위: %)	목표	98	98	98	98	98	긴급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치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성공률을 성과 지표로 설정	긴급구조 위치정보 요청에 대한 위치 측위 기술별 (가자국, GS, Wi-Fi) 응답 성공률 평균 ※ 응답성공률 : 긴급 구조기관의 위치 정보 요청에 대한 정상 응답률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99.4	99.6	99.8	-	-			
	달성도	101.4	101.6	101.8	-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시스템 안정적 운영 시간 비율 (단위: %)	목표	99.9	99.9	99.9	99.9	99.9	긴급구조 목적 위치 정보 활용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시간 비율을 성과 지표로 설정	[긴급구조 목적 위치 정보 활용 플랫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시간 /연간 운영시간(24시간×365일)]×100 ※ 지진,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00	100	99.9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취약점, 장애 요인 등 전산자원 월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방지 조치, 시스템 변동사항 발생 시 작업 지원 등 수행 - 긴급구조기관(119) 및 경찰관서(112)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Wi-Fi 기반 위치정보 제공(4,958,307건)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업무 실무에 활용되는 기지국·GPS·Wi-Fi 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측정 수행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취약점, 장애 요인 등 전산자원 월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방지 조치, 시스템 변동사항 발생 시 작업 지원 등 수행 - 긴급구조기관(119) 및 경찰관서(112)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Wi-Fi 기반 위치정보 제공(5,830,647건)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업무 실무에 활용되는 기지국·GPS·Wi-Fi 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측정 수행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취약점, 장애 요인 등 전산자원 월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방지 조치, 시스템 변동사항 발생 시 작업 지원 등 수행 - 긴급구조기관(119) 및 경찰관서(112)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Wi-Fi 기반 위치정보 제공(8,705,522건)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업무 실무에 활용되는 기지국·GPS·Wi-Fi 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측정 수행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취약점, 장애 요인 등 전산자원 월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방지 조치, 시스템 변동사항 발생 시 작업 지원 등 수행 - 긴급구조기관(119) 및 경찰관서(112)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Wi-Fi 기반 위치정보 제공(9,166,483건)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업무 실무에 활용되는 기지국·GPS·Wi-Fi 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측정 수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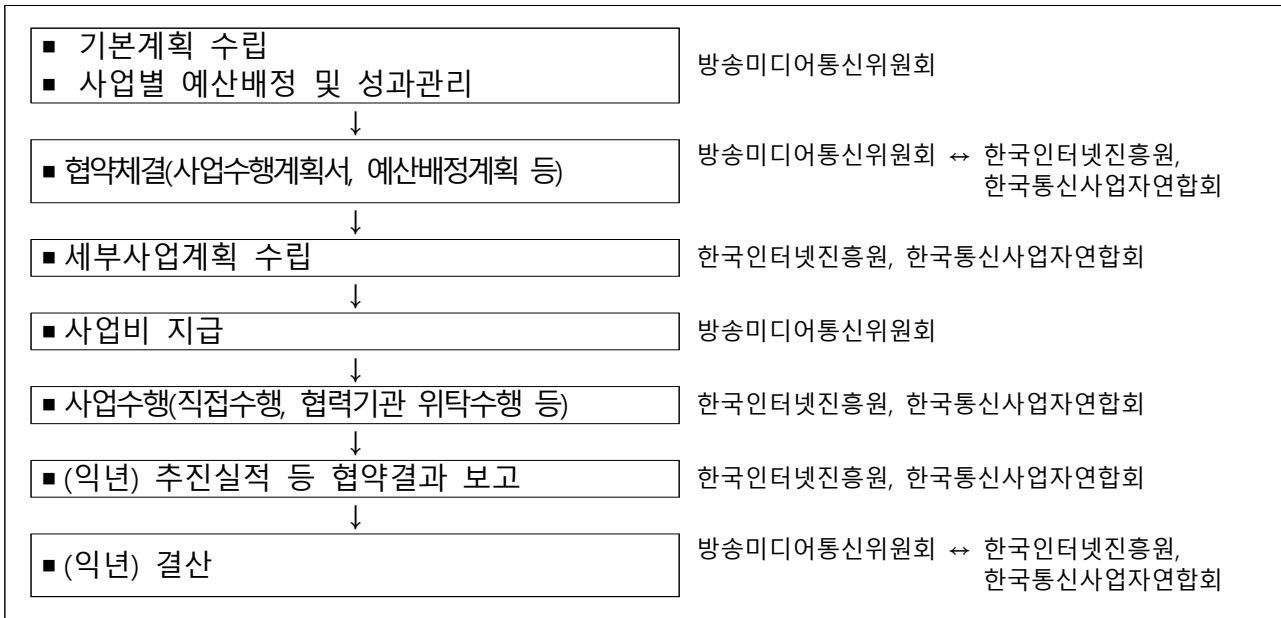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의 지속적 성능 개선을 통한 긴급구조 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연간 9백만건 이상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의 실효성 제고

※ 긴급구조 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경우 '19년 연간 약 2백만건 이상에서 '25년 연간 약 9백만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필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본 사업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민간의 사무를 보조하는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민간위탁으로 비목 전환 필요('23년 결산 예결위)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81	-	1,181	1,181	1,181	100	-	-
2023	1,159	-	1,159	1,159	1,159	100	-	-
2024	1,400	-	1,400	1,400	1,400	100	-	-
2025	1,360	-	1,360	1,360	1,36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5)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3251-306)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6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성격 (공동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음자	국고보조율(%)	음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클린스마트 모바일환경 조성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사업시행주체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클린인터넷 서비스환경 조성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사업시행주체	다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629	1,466	1,466	2,291	1,246	△220	△1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민간정보보조	1,629	1,629	1,629	-	-	1,466	1,466	1,466	-	-	1,246
· 클린스마트 모바일환경조성	1,393	1,393	1,393	-	-	1,253	1,253	1,253	-	-	1,064
· 클린인터넷 서비스환경조성	236	236	236	-	-	213	213	213	-	-	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아동·청소년들이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환경 조성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언어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및 유해정보 유통 의심 사업자 대상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를 위한 청소년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① 과학기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6.호 <생략>
 -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 방송통신발전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② 추진경위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

-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12.3.16)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지정,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접근 방지 대책 강화」(12.5.)
- 국가정책 조정회의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12.5.)
- 국가정책 조정회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12.10.)
- 국무회의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본대책 마련」(13.3.13.)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13.5.22.)
- 15개 부처 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수립 (14.12.)
-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15.8.7)
- 9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제3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종합계획 수립」(16.3~4)
- 11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16.5.)

- 9개 부처 및 9개 관계기관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16.5)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및 100대 국정과제(70-5번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관리계획 (17.7)
- 11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19~21년)」(19.1)
- 13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 「제3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19~21년)」(19.6)
- 10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23)
- 10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 「제5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22~24년)」(22.6)
- 11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22.6)
- 국무총리 주재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23.4)
- 사이버안심존(통합) SW 앱스토어 출시(23.9)
-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사이버안심존 SW 확대 보급 MOU 체결(24.3)
- 사이버안심존 SW 구글(24.7) 및 애플(24.10) 앱스토어 출시
- 사이버안심존(태블릿) SW 구글(25.1), 사이버안심존 iOS 자녀용 SW 출시(25.9), SW 이용 알뜰폰 사업자 MOU 체결(25년, 12社)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

-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17.12.)
 - ※ 학회 및 단체, 협회, 업체 및 방심위, 정부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
-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 실무협의회 개최(18.3.)
 - ※ 방통위, 방심위,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 KISO, 인기협, KAIT 등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18.11.)
- 인터넷개인방송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19.11.)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62건(6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
- 인터넷개인방송 등 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20.6., 11.)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2,169건(11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20.6.)
 - ※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할 유형 및 심야시간·장시간 출연 금지 등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21.3~12.)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4,484건(13개 사업자) 성인

- 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22.4~7.)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4,635건(11개 사업자) 성인 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교육 콘텐츠 제작("22.7.~)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및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안내를 위한 동영상 제작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조치 요청("23.1.~12.)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11,404건(10개 사업자) 성인 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조치 요청("24.1.~12.)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10,079건(17개 사업자) 성인 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조치 요청("25.1.~12.)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11,237 (14개 사업자) 성인 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19~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20	1,663	1,629	1,466	1,2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청소년 및 학부모, 인터넷이용자 및 청소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클린스마트 모바일환경 구성	보조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협회	1,064	100	정보통신망법 제41조
클린인터넷 서비스환경 구성	보조	한국정보 통신진흥 협회	182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구성 >

①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구성

: ('25) 1,253백만원 → ('26) 1,064백만원(△192)

- (요구) 사이버안심존 SW 실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iPad용 앱 개발 및 본인인증서비스 구축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산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 : 412백만원
사이버안심존 SW 등 보급활성화 331백만원
청소년보호 SW 기능 고도화 : 127백만원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 운영 : 194백만원

② 클린인터넷서비스 환경구성 : ('25) 213백만원 → ('26) 182백만원(△31)

- (요구) 청소년에게 건전한 인터넷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정보에 대한 즉시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자의 개선조치 등의 역할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매년 증가하는 대상 사업자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형에 대한 이행점검 예산 지원 필요
 -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증가 추이 : ('20년) 97개사 125개 사이트→('21년) 135개사 184개 사이트→('22년) 141개사 187개 사이트→('23년) 163개사 219개 사이트→('24년) 178개사 237개 사이트→('25년) 187개사 258개 사이트
 -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모니터링 건 추이 : ('20년) 1,169건 → ('21년) 4,484건 → ('22년) 9,448건 → ('23년) 11,404건 → ('24년) 10,079건 → ('25년) 11,237건
- (산출)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여부 상시점검 : 154백만원
상시점검 채증자료 관리·운영 : 15백만원
기술적 조치 점검기술 및 정책지원 : 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수 (단위:개)	목표	2,500	2,800	종료	-	-	-	사이버안심존 참여 누적 학교수 집계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2,505	2,818	종료	-	-			
	달성도	100.2	100.6	종료	-	-			
사이버안심존 참여 활성화 (단위:%)	목표	-	-	100	100	100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목별 목표치 설정	① 학교 수(50%) ② 앱가입자수(50%)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	-	153	151	-			
	달성도	-	-	153	15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 노출방지 기능 출시('22.6월) ○ 온라인 교육사이트 개선('2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사 대상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개선 ○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업데이트 : 8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UI/UX 개편, 디지털성범죄 노출방지 기능 추가, 자녀위치관리 기능 추가, 안드로이드OS지원 버전 상향, 각종 버그 수정 등 ○ 청소년보호SW 온·오프라인 민원 응대 : 1,0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문의 91.1%(911건), 설치문의 7.2%(72건), 삭제문의 1.7%(17건)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상담관리 위한 사이버안심존 사업 추진(총 2,507개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활동 전개(45,300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통합안내문 발송('22.3월) - 지역 교육청 대상 참여 협조 공문 발송(경기, 부산, 전남, 전북교육청, '22.4월) - 정부부처(여가부) 및 유관기관 협업 통한 사이버안심존 소개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설명회(3.4), 건전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화역기능해소 유관기관 협의(4.27, 부산정보문화센터), 건전한 디지털사용 스마트톡톡(5.16, 부산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5.26~28, 여가부), 과의존예방교육(6.15, 전남스마트쉼센터), 남원과학축전(6.18), 스마트과의존상담강화 연계 협의(6.24, NIA), 전남과학축전(9.24~9.25), 고양꿈돌이축제(10.15), 전남중독연합캠페인(11.18~11.19) ○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심드림' SW 보급(96,43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협조 요청 공문 발송(교육부, '22.4월) - 앱 디자인 및 UI 개편('22.3~11월) ○ 사이버안심존 전문가·학생(청소년)·보호자분과 이용자협의회 운영('2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협의회 제안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총17건 반영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교사(10명), 중독 예방 전문가(1명), 학생(5명), 보호자(6명) ○ 온·오프라인 사이버안심존 사업 및 서비스 홍보(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61건), 페이스북(59건), 플러스친구(59건), 인스타그램(54건) 운영 - 안내책자, 학생용 알림장 총 72,300부 배포(사이버안심존 학교, 지자체·유관기관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유해정보 수집 및 DB등록 약 1,447만건 ('22.12월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673,237건, 웹사이트 13,801,669건 * 디지털성범죄 키워드 229건 수집 및 관리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청소년보호SW 온·오프라인 민원 응대 : 439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15%;">이용문의</th> <th style="width: 15%;">설치문의</th> <th style="width: 15%;">삭제문의</th> <th style="width: 15%;">기타 문의</th> <th style="width: 10%;">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사이버안심존(~9/10)</td> <td>129</td> <td>9</td> <td>14</td> <td>-</td> <td>152</td> </tr> <tr> <td>스마트안심드림(~9/10)</td> <td>65</td> <td>4</td> <td>-</td> <td>-</td> <td>69</td> </tr> <tr> <td>사이버안심존(통합)</td> <td colspan="2">94</td> <td>63</td> <td>61</td> <td>218</td> </tr> <tr> <td>합계</td> <td colspan="2">301</td> <td>77</td> <td>61</td> <td>439</td> </tr> </tbody> </table> o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예방 및 상담관리 위한 사이버안심존 사업 추진(총 2,818개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직원 등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활동 전개(60,290명) - 서울지역 교육지원청(11개) 교사 대상 사이버안심존 사업소개 및 홍보(1,66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190명), 강동·송파(153명), 강서·양천(146명), 북부(145명), 남부(149명), 동작·관악(155명), 서부(160명), 강남·서초(135명), 성동·광진(172명), 성북·강북(130명), 중부(131명)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스마트쉼센터 소속 강사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10개 지역 5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3), 경남(5), 경북(5), 광주(10), 대구(9), 대전(1), 전남(9), 전북(10), 제주(5), 충북(2) - 사이버안심존 보급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방문 및 협조 요청(8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10/12), 충북(10/19), 전북(10/24), 광주(10/25), 강원(10/27), 대전(11/14), 제주(11/16), 전남(11/17) o 사이버안심존 전문가·학생(청소년)·보호자분과 이용자협의회 운영('23.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통합 앱 출시 관련 의견 도출, 사이버안심존 보급 확산 방법 등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교사(12명), 학생(5명), 보호자(4명), 총 21명 구성 o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16건), 페이스북(17건), 인스타그램(17건), 이벤트(3건), 영상(4건) 운영 - 안내책자, 학생용 알림장 총 58,460부 배포(사이버안심존 학교, 지자체·유관기관 등) o 유해정보 수집 및 DB등록 약 1,469만건 (~'23.12월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676,223건, 웹사이트 14,009,756건 	구분	이용문의	설치문의	삭제문의	기타 문의	합계	사이버안심존(~9/10)	129	9	14	-	152	스마트안심드림(~9/10)	65	4	-	-	69	사이버안심존(통합)	94		63	61	218	합계	301		77	61	439
구분	이용문의	설치문의	삭제문의	기타 문의	합계																										
사이버안심존(~9/10)	129	9	14	-	152																										
스마트안심드림(~9/10)	65	4	-	-	69																										
사이버안심존(통합)	94		63	61	218																										
합계	301		77	61	439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청소년보호SW 온·오프라인 민원 응대 : 382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민원유형</th> <th style="width: 15%;">앱</th> <th style="width: 15%;">웹사이트</th> <th style="width: 15%;">합계(건)</th> <th style="width: 10%;">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오류</td> <td>131</td> <td>3</td> <td>134</td> <td>35%</td> </tr> <tr> <td>설치/이용/삭제</td> <td>147</td> <td>4</td> <td>151</td> <td>40%</td> </tr> <tr> <td>기타</td> <td>51</td> <td>46</td> <td>97</td> <td>25%</td> </tr> <tr> <td>합계</td> <td>329</td> <td>53</td> <td>382</td> <td>100%</td> </tr> </tbody> </table> o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예방 및 상담관리 위한 사이버안심존 사업 추진(총 3,054개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대구광역시교육청-KCUP간 사이버안심존 보급 MOU체결('24.3.21) -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활동 전개(76,466명)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스마트쉼센터 소속 강사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13개 지역 7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인천(5), 강원(2), 광주(8), 대구(7), 대전(2), 부산(17), 울산(11), 전남(7), 전북(8), 제주(3), 충북(2) o 사이버안심존 전문가(교사)·학생(청소년)·학부모분과 이용자협의회 운영('2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심존 SW 고도화 관련 의견 수렴, 앱 보급 확산 방법 논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교사(15명), 학생(5명), 보호자(4명), 총 24명 구성 o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민원유형	앱	웹사이트	합계(건)	비율	오류	131	3	134	35%	설치/이용/삭제	147	4	151	40%	기타	51	46	97	25%	합계	329	53	382	100%					
민원유형	앱	웹사이트	합계(건)	비율																											
오류	131	3	134	35%																											
설치/이용/삭제	147	4	151	40%																											
기타	51	46	97	25%																											
합계	329	53	382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28건), 페이스북(28건), 인스타그램(28건), 티스토리(28건), 이벤트(4건) 운영 - 안내책자, 학생용 알림장 약 80,816부 배포(사이버안심존 학교, 지자체·유관기관 등) o 유해정보 수집 및 DB등록 약 1,490만건 (~'24년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692,967건, 웹사이트 15,719,519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청소년보호SW 온·오프라인 민원 응대 : 751건 <table border="1"> <thead> <tr> <th>민원유형</th> <th>앱</th> <th>웹사이트</th> <th>합계(건)</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오류</td> <td>50</td> <td>47</td> <td>97</td> <td>13%</td> </tr> <tr> <td>설치/이용/삭제</td> <td>324</td> <td>282</td> <td>606</td> <td>81%</td> </tr> <tr> <td>기타</td> <td>40</td> <td>8</td> <td>48</td> <td>6%</td> </tr> <tr> <td>합계</td> <td>414</td> <td>337</td> <td>751</td> <td>1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알뜰폰사 대상 사이버안심존 SW 보급 확대(13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텔레콤, 코드모바일, 에스원, CK커뮤스트리, 더피앤엘,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한국피엠오, 더원플랫폼, 미니게이트, 스마텔,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o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예방 및 상담관리 위한 사이버안심존 사업 추진(11월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활동 전개(교육인원 31,292명, 참여학교 287개교) o 사이버안심존 전문가(교사)·학생(청소년)·학부모분과 이용자협의회 운영(5월,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심존 SW 고도화 관련 의견 수렴, 앱 보급 확산 방법 논의 등 ※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교사(10명), 학생(3명), 보호자(3명), 총 16명 구성 o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용 알림장 약 25,000부 및 온라인 안내책자 배포(사이버안심존 학교, 지자체·유관기관 등)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5월) 및 서울시 교육청(10월) 행사 내 사이버안심존 홍보 부스 운영 o 유해정보 수집 및 DB등록 약 1,650만건 ('13~'25. 12월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704,681건, 웹사이트 15,840,926건 	민원유형	앱	웹사이트	합계(건)	비율	오류	50	47	97	13%	설치/이용/삭제	324	282	606	81%	기타	40	8	48	6%	합계	414	337	751	100%
민원유형	앱	웹사이트	합계(건)	비율																						
오류	50	47	97	13%																						
설치/이용/삭제	324	282	606	81%																						
기타	40	8	48	6%																						
합계	414	337	751	100%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22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선정지원 및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 요건을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방송, 커뮤니티, SNS, 웹하드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 전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135개) 및 신규 사업자 등 160개 사업자 현황 조사 (사업자명, 운영서비스,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 o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유통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사업자(16개 사이트)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9,448건 삭제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틱톡, 핀터레스트,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등 o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교육 콘텐츠 제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2. 7. ~ 11.(예정) - (목 적) 청소년보호책임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동영상 제작 - (내 용)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및 권고사항, 청소년보호 수행업무별 예시 등 안내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23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선정지원 및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 요건을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방송, 웹툰/웹소설, SNS, 랜덤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 전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141개) 및 신규 사업자 등 총 163개 사업자 현황 조사

	<p>(사업자명, 운영서비스,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여부 상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의무 사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㉑)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여부 등 · 법적의무 외 사항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성인인증, ㉑금 표시 등 접근제한 조치, 법정 대리인 동의절차 마련여부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사업자(13개 사이트)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11,404건 삭제요청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등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교육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3. 7. ~ 11. - (목 적) 해외 사업자 및 담당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문 교육동영상 제작 - (내 용)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및 권고사항, 청소년보호 수행업무별 예시 등 안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선정지원 및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 요건을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방송, 웹툰/웹소설, SNS, 랜덤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 전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163개) 및 신규 사업자 등 총 177개 사업자 현황 조사 (사업자명, 운영서비스,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 ○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여부 상시점검(178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사업자(20개 사이트)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10,079건 삭제요청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등 ○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점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 대상 청소년 가입자 대상 차단앱 종류 및 내용 고지, 설치여부 확인 등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선정지원 및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 요건을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방송, 웹툰/웹소설, SNS, 랜덤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 전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178개) 및 신규 사업자 등 총 187개 사업자 현황 조사 (사업자명, 운영서비스,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 ○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여부 상시점검(187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사업자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게시물 11,237건 삭제요청('25.12월 말 기준) ※ 핀터레스트, X,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 이동통신사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현장점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T, KT, LGU+ 청소년 가입자 대상 차단앱 종류 및 내용 고지, 설치여부 확인 등
--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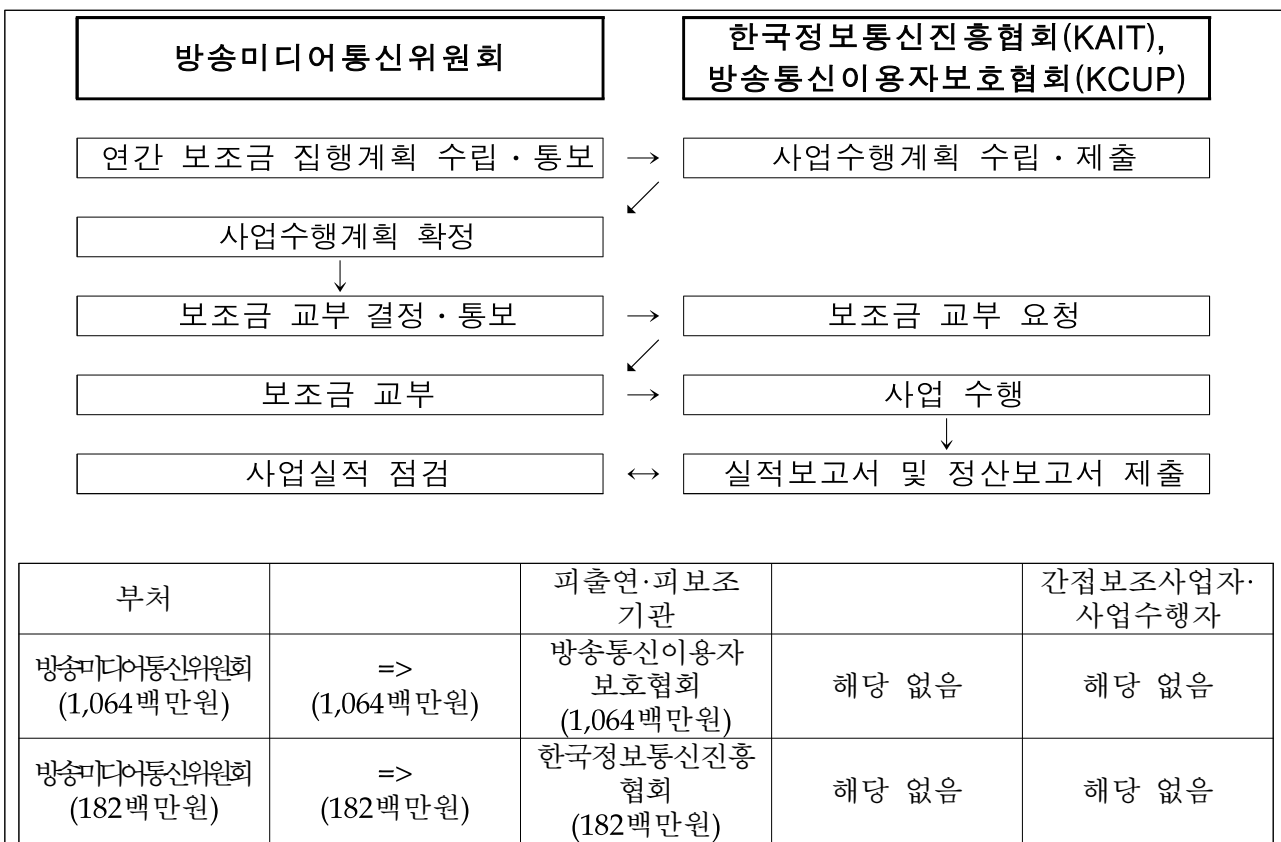
- 스마트폰 역기능 폐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사이버안심존 참여 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SW 보급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이용자협의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SW와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청소년 스마트폰 역기능 관련 이슈 및 국민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스마트폰 역기능 피해방지 기여
 - 사이버안심존 iPad용 앱 출시, 본인인증 서비스 구축 등 SW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SW의 학교, 가정, 교육청 수요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한 대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및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의심 사업자 대상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청소년보호 활동과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보호 촉진
 -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및 서면·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개선요청 하는 등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외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등 관련사항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지원 스마트폰 역기능 폐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사이버안심존 참여 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SW 보급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이용자협의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SW와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청소년 스마트폰 역기능 관련 이슈 및 국민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스마트폰 역기능 피해방지 기여

- 사이버안심존 iPad용 앱 출시, 본인인증 서비스 구축 등 SW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SW의 학교, 가정, 교육청 수요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한 대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및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의심 사업자 대상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청소년보호 활동과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보호 촉진
-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및 서면·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개선요청 하는 등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외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등 관련사항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 |
|---|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20	-	-	1,520	1,520	100	-	-
2023	1,663	-	-	1,663	1,663	100	-	-
2024	1,629	-	-	1,629	1,629	100	-	-
2025	1,466	-	-	1,466	1,466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사 업 명
(36)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3251-307)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7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 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디지털윤리 교육, 디지털윤리 홍보활동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6,463	6,140	6,140	5,219	5,219	△921	△1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63	6,463	6,463	-	-	6,140	6,140	6,140	-	-	5,219
· 디지털윤리 정책 연구	350	350	350	-	-	332	332	332	-	-	282
· 디지털윤리 교육	5,224	5,224	5,224	-	-	4,963	4,963	4,963	-	-	4,219
· 디지털윤리 홍보 활동	889	889	889	-	-	845	845	845	-	-	7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및 역기능 피해 예방
 -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사이버폭력·디지털윤리 관련 인식 조사 및 연구, 국내·외 동향 조사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방향 수립 지원
 - (디지털윤리 교육) 올바른 디지털 이용의식 제고 및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사이버폭력 유해성 인지 및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
 - (디지털윤리 홍보활동) 생활밀착형 온·오프라인 홍보, 공모전, 캠페인 등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 전개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지능정보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윤리교육·홍보를 위하여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언론·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공급자·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삭제
 - 6의2. 삭제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07년 : 건전한 UCC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 개최 및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발표
- 2008년 :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가칭)” TFT 구성
- 2009년 :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조성’ 사업 신규 추진
- 2010년 :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제1기 한국인터넷드림단” 창단
- 2010년 : 제1회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선포식 및 주간 운영
- 2011년 : 대통령 업무보고, 건전한 소통과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등을 통한 “생산적 소통사회 실현”
- 2012년 : 청소년 체험형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부산 공리마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2012년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중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확대” 계획 발표
- 2013년 :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종합 대책」 중 “인터넷윤리교육 및 캠페인 홍보 추진” 등 계획 발표
- 2013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신규 구축(한국잡월드)
- 2013년 :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2014년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중 정규 교과를 활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등 포함
- 2014년 :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계획」 중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계획 발표

- 2015년 : 방송통신위원회,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 발표
- 2015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이전(부산공리마루→국립부산과학관)
- 2015년 : 사이버폭력예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교육 확대
- 2016년 : 사업추진 전담기관 변경(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 2017년 : 인터넷윤리교육 방통위 일원화(“바람직한 인터넷이용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건전한정보문화조성(범국민 정보윤리교육)”)
- 2017년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국정과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실천과제 채택
- 2018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이전(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국립광주과학관)
- 2018년 :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윤리교육 확대(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 2019년 : 시·도 교육청 협력 청소년 대상 맞춤형 콘텐츠 개발, 국방부(군인), 여가부(학교밖청소년) 연계 인터넷윤리 시범교육 실시
- 2019년 : 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 신규 개소(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2020년 : 인터넷윤리대전 대상 대통령상 격상
- 2020년 : 서울 인터넷윤리체험관(서울시립과학관), 사이버윤리체험관 신규 개소
- 2021년 : 전북 인터넷윤리체험관(어린이창의체험관) 신규 개소
- 2021년 : ‘100만 인터넷윤리교육’, ‘인터넷윤리체험관 운영 및 신규 구축’ 국정과제 조기 목표 달성
- 2021년 :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승인번호 제164003호)
- 2022년 : 1인 크리에이터 등 교육 대상 확대
- 2023년 : 직장인, 가족 등 교육 대상 확대 및 디지털윤리 골든벨 등 체험형 교육 확대
- 2024년 : 청소년 실습형 AI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 확대
- 2025년 : 딥페이크 윤리교육 주제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17	6,515	6,463	6,140	5,21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원, 일반성인 등 전 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출연	한국지능 정보사회 진흥원	282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디지털윤리 교육			4,219		
디지털윤리 홍보활동			718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①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 ('25) 332 → ('26) 282백만원, △15.1%(△50)</p> <p>①-1. 디지털윤리 정책연구 : ('25) 332 → ('26) 282백만원, △15.1%(△50)</p>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320 → 272백만원(△48) ○ 디지털윤리 동향 조사 및 분석 : 12 → 10백만원(△2) <p>② 디지털윤리 교육 : ('25) 4,963 → ('26) 4,219백만원, △15.0%(△744)</p>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윤리 순회강연 : ('25) 1,807 → ('26) 1,536백만원, △15.0%(△271) ○ 디지털윤리 체험형 교육 : ('25) 1,915 → ('26) 1,628백만원, △15.0%(△287) ○ 디지털윤리 전문역량 강화 교육 : ('25) 203 → ('26) 173백만원, △14.8%(△30) ○ 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 개발 : ('25) 1,038 → ('26) 882백만원, △15.0%(△156) <p>③ 디지털윤리 홍보활동 : ('25) 845 → ('26) 718백만원, △15.0%(△127)</p> <p>-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 : ('25) 320 → ('26) 272백만원, △15.0%(△48) ○ 캠페인 운영 : ('25) 525 → ('26) 446백만원, △15.0%(△79)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디지털윤리 교육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9.4	90.1	90.8	91.6	91.6	만족도 지표로 달성할 수 있는 한계 목표(10명 중 9명 만족)에 도달하여 전년과 동일한 91.6점으로 목표치 산정	디지털윤리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Survey)
	실적	89.5	90.1	91.0	91.7	-			
	달성도	100.1	100	100.2	100.1	-			
디지털윤리 의식 개선도 (단위: %)	목표	9.4	10.2	11.1	12.1	13.8	최근 3년(21~24)간 실적 평균 증가폭(13.7%)를 고려하여 14% 상향한 13.8%로 목표치 산정	디지털윤리교육 전/후 의식 변화도 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Survey)
	실적	9.4	10.2	12.8	12.9	-			
	달성도	100	100	115.3	106.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디지털윤리 윤리교육 운영(335,60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대상 전문강사 파견, 온·오프라인 교구 및 동아리 등 자체 교육 지원, 비대면 공연교육 등 맞춤형 디지털윤리교육 추진 - 1인 크리에이터 등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작권 등 특화교육 추진 ○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25종)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창작콘텐츠 공모전(7월~10월), 디지털윤리 주간(11.27~12.2), 디지털윤리대전(12.2)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방송(EBS), 라디오(KBS, SBS), 옥외광고(KTX 서울역, 동대구역 등) 온라인(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대국민 홍보 추진 ○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도티, 최희, 조나단, 엘언니) 임명(4.13) 및 크리에이터 활용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3종)·보급 ○ 인터넷윤리체험관 6개소(경기, 광주, 부산, 대전, 서울, 전북) 및 온라인윤리체험관 운영 ○ 사업성과평가를 위한 만족도, 디지털윤리교육 사전/후 의식변화추진(5월~12월) ○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발간(4회),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추진(9월~11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디지털윤리 윤리교육 운영(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대상 전문강사 파견, 온·오프라인 교구 및 동아리 등 자체 교육 지원, 비대면 공연교육 등 맞춤형 디지털윤리교육 추진 - 청소년·가족 대상 디지털윤리 골든벨 및 캠프 운영 등 수요자 눈높이 맞춤형 체험형 교육 추진을 통한 교육 효과 제고 ○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30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윤리체험관(6개소 및 사이버) 및 디지털윤리 홈페이지 운영 -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6.1.~10.6.), 디지털윤리 주간(8.28.~9.3.), 디지털윤리대전(12.5.) 등 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개최 - 옥외광고(KTX 서울역, 동대구역 등), 온라인(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대국민 홍보 추진 -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도티, 최희, 조나단, 엘언니) 운영 ◦ 사업성과평가를 위한 만족도, 디지털윤리교육 사전/후 의식변화 조사추진(5월~12월) ◦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발간(4회),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추진(9월~11월)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디지털 이용의식 제고 및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 국민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25.3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형 AI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건전한 활용과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확대 - 동화구연, 디지털윤리 골든벨, 캠프 등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유아, 청소년, 가족 등 대상별 디지털윤리 눈높이 교육 확대 - 유아, 청소년, 직장인 등 대상별 관심사와 역기능 이슈를 반영한 활용도 높은(동화, 캠페인송, 예능형 영상 등) 콘텐츠 개발(30종) ◦ 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와 게임을 통하여 디지털윤리를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전국 6개 지역(서울·경기·광주·전북·대구·부산) 디지털윤리체험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디지털윤리체험관 신규 개소(국립대구과학관 꿈나무과학관, 5.30.) - 디지털윤리 주간, 콘텐츠 공모전 등 참여형 캠페인 운영 및 인플루언서(홍보대사 간담회 등), 공공시설물(기차역 등)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3회차 발간(4, 8, 12월) -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조사결과 공표(3.28.) - 202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조사실시(9~11월) ◦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운영(28.7만명) - 디지털윤리 골든벨 지역 예선(5~9월, 17회) 및 가족캠프(6~9월, 4회), 청소년 AI윤리 ON 캠프(7~11월, 2회) 운영 - 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 개발·배포(디지털윤리.kr,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유튜브) ◦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윤리체험관(서울·경기·광주·전북·대구·부산) 및 디지털윤리 홈페이지 운영(연중) -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서울역 등) 및 온라인 홍보 추진(연중) -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공고(6~10월) 및 주간 캠페인 운영(7.21~27.) - 디지털윤리대전 개최(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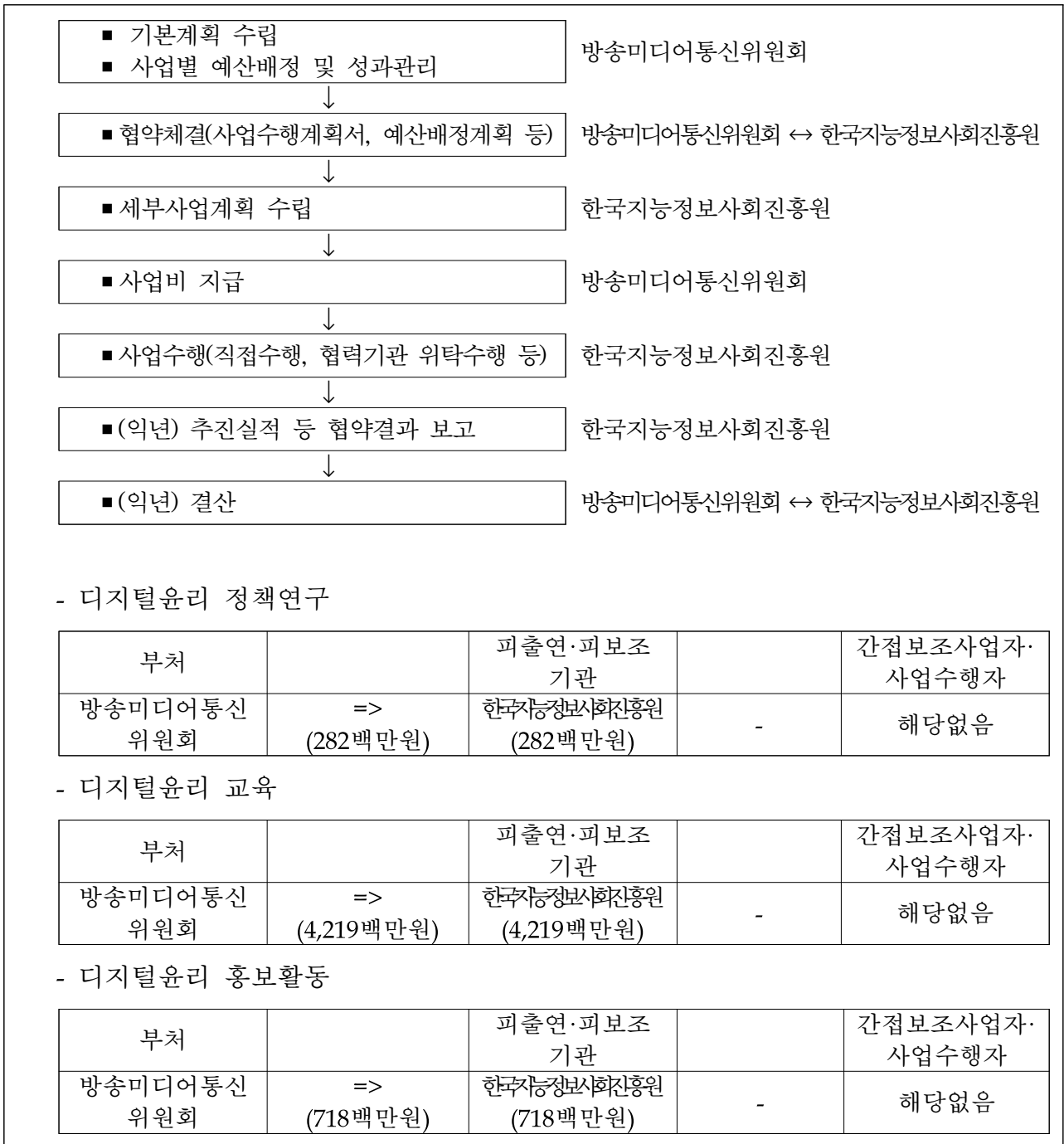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심화되는 디지털 역기능 및 사회현안 파악 및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수립 및 역기능 대응 기반 마련
-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계층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을 추진하여 디지털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대국민 캠페인 개최 등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 대학생, 청·장년 및 자녀가 없는 성인의 교육 비중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과방위,21결산)
 - (조치) 성인 대상의 교육을 확대·강화('21년 15%→'24년 41%)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 마련, 또한 '23년부터 직장인 디지털윤리 교육 신규 추진('23년 61회, '24년 181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보통 / 90.0점 (22회계 재정사업자율평가)
 - 우수 / 91.9점 (23회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 90.2점 (24회계 재정사업자율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317	-	6,317	6,317	6,317	100.0	-	-
2023	6,515	-	6,515	6,515	6,515	100.0	-	-
2024	6,463	-	6,463	6,463	6,463	100.0	-	-
2025	6,140	-	6,140	6,140	6,14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7)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3251-308)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8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개발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소관부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사업시행주체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기술환경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830	792	792	781	1,141	349	44.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0	830	830 [819.5]	-	-	792	792	792	-	-	1,141
·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470	470	470 [467.4]	-	-	440	440	440	-	-	501
·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184	184	184 [181.5]	-	-	184	184	184	-	-	184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96	96	96 [95.6]	-	-	96	96	96	-	-	96
· 지능정보사회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80	80	80 [75]	-	-	72	72	72	-	-	0
· 신기술환경 메타 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	-	-	-	-	-	-	-	-	-	3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지능정보기술과의 융합으로 방송통신망의 적용 범위가 확장·다변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이용자 범위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마련
-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신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기회, 이용자 권리 침해 가능성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경험적 근거 마련
- 다년간에 걸친 전국 규모 패널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

-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다양한 이해당사자(사업자·이용자·국제사회 등)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학계·산업계·시민·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실효적인 이용자 정책 수립의 토대 마련
 -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일상화에 따른 역기능 대응 방안과 이용자 보호 정책 성과를 대외에 공유하고 시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공론화 기능 수행
 - 경험적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여 지식 재생산 및 활성을 촉진하고, 의견 제시를 위한 환류 창구로서 국민참여·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인공지능 시대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상 및 변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용자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시의적인 이용자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정비 추진
 - 인공지능 서비스의 보편화 단계에서 사각지대 없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다면적 파급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 제시
 - 인공지능 서비스의 다변화된 기능과 영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현안을 검토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선도적 이용자 정책 수립 및 법적·자율적 규율 방안 도출
- (신기술환경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인공지능, 공간 컴퓨팅 등 가상융합기술 발전으로 다양해진 메타버스 서비스 및 콘텐츠 내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메타버스 사업자·이용자 실태조사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00	1,100	830	792	1,141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이용자·전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민간 경상 보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501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184백만원	100	
자능정보사회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96백만원	100	
산출환경매커니즘 이용자보호대책조사		(공모)	360백만원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 ('25) 792백만원 → ('26) 1,141백만원, +349백만원

①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25) 440백만원 → ('26) 501백만원, +61백만원

- (요구) 자연마모, 패널이탈 등 패널데이터 보안을 위해 전년 대비 61백만원 증액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패널데이터 조사·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440백만원
패널 마모율·이탈율 보존 0 → 61백만원

②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 ('25) 184백만원 → ('26) 184백만원, 전년동

- (요구) 민관협의회, 컨퍼런스 개최 및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40백만원

컨퍼런스 개최 및 대외적 정책 네트워크 형성 72백만원
국민참여·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2백만원

③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 ('25) 96백만원 → ('26) 9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 개발 지원 96백만원

④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 ('25) 72백만원 → ('26) 0원, △72백만원**

- (요구) 사업 우선순위 조정
- (산출)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운영 지원 32 → 0백만원
플랫폼 해외동향 모니터링 40 → 0백만원

⑤ **신기술환경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 ('25) 0백만원 → ('26) 360백만원, +360백만원(신규)**

- (요구) 가상융합서비스(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를 위해 360백만원 신규 예산 요구
- (산출) 메타버스 사업자 실태조사 230백만원
메타버스 이용자 실태조사 100백만원
정책자문 연구반 운영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지원 (단위: 건)	목표	3	3	3	지표 변경	-	'장량적 지표로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지원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료 발간 건수	발표자료 및 발간보고서
	실적	3	3	3	-	-			
	달성도	100	100	100	-	-			
이용자보호 정책·법제 기여도 (단위: 건)	목표	-	-	-	1	1	'25년 신규지표로 정책수립 지원 과정에서 1건 이상을 목표치로 선정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법안, 지침 등에 반영된 건수 (실질적 반영 건수)	방통위 정책, 법안 등 발표자료
	실적	-	-	-	1	-			
	달성도	-	-	-	100	-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	목표	-	-	-	-	100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모범 개선사례 발굴 건수를 지표로 설정	사업자 운영 정책 모범 개선사례 발굴 건수/목표 건수(2)x0.4+분쟁조정 체 계 모범 개선사례 발굴 건 수/목표건수(2)x0.4+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건수/ 목표건수(1)x0.2	실태조사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승인통계화 지정을 위한 통계청 통계작성 컨설팅으로 국가승인통계작성 승인(9.30), 지능정보 이용자 패널조사 본조사 실시(10.24~12.23) ○ 가상인간의 순기능·역기능 관련 연구를 위한 사전준비반 구성 및 운영(2~4월)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개최(4~12월, 5회 개최)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패러다임 연구 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 및 연구 진행(4~5월) ○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발간(4월) ○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5월) 및 기업간담회(6월) 개최 ○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반 구성·운영(7~12월) ○ 'AI, Culture & Society' 이용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개최(12/1)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정보판별을 위한 학습자 프로그램 개발(2종) 및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 모집(~7월) 및 운영 ○ 초·고학년·중학생 대상 AI알고리즘을 통한 정보편향 교육 추진(101개 학급, 2,252명 교육)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보도자료, 승인통계 보고서, 승인통계 핸드북 발간 ○ 알고리즘 인식 및 효과 실험연구(연구주제: "생성형 AI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이용자 실험연구") 운영 ○ 생성형 AI와 이용자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 연구모형 및

	<p>분석 방법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개최(3~9월, 4회 개최)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패널조사 보급형 통계DB 전환(6월) 및 통계DB 관리시스템 설치·점검 ○ 2023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본조사 실시(10월~) ○ 제5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개최(12.1)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패러다임 연구 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 및 연구 진행 ○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법제 연구반 및 자문단 운영(총 10회 개최)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조사 보고서 품질 개선반 구성 및 운영(1차 3/11, 2차 4/22, 3차 5/31) ○ 패널데이터 활용률 증진 목적의 세미나 개최(4.6) ○ 2023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공표 및 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6월) ○ 2023년 국가승인통계 최종보고서 발간(7월) ○ 2024년 조사표 기준, 1차 pilot test 실시 및 결과 반영 후, 2차 pilot test 실시 및 결과 반영 후 최종 조사표 확정(8월)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운영관리·유지보수 공모(5월) ○ 메타버스 및 알고리즘 사업자별 실태 점검 조사표 작성 및 협동연구기관 공모(7월)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아카이브 게시(7월) ○ 메타버스 및 알고리즘 사업자 실태 점검 및 결과 분석(9월~11월) ○ 2024년 아카이브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종합점검(11월)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운영 및 개최(총 2회)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 개최(10월)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연구반 구성 및 운영(전체회의 총 5회, 실무회의 총 7회 개최)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총 4회 개최)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국가승인통계 최종보고서 발간 및 패널조사결과 아카이브 게시(5월) ○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정비 및 MDIS 제출(6월) ○ 2024년 이용자 패널조사데이터 국가통계포털 입력(6월) ○ 2025년 패널조사 변경승인 신청 및 확정(7월) ○ 2025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실시(7월~)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용역사업자 공모(3월) ○ 용역사업자 선정(4월) 및 착수보고(5월) ○ 아카이브 홍보 및 이용 확산을 위한 의견 수렴 이벤트(총 4회) ○ 2025년 아카이브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종합점검(11월 예정)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운영 결과 정리 및 차년도 운영 방향 수립(12월 예정)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운영 및 개최(총 2회 예정)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개최(11월 예정) ○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개발 연구반 구성 및 운영(총 4회 개최) ○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발간(11월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인공지능 서비스를 비롯한 방송·통신 신기술이 이용자의 사고, 행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ICT 정책 수립을 지원
- 민·관·학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정책협의체 운영(연 2회) 및 컨퍼런스 개최(연 1회), 아카이브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정책 추진의 사회 합의와 대외 홍보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 수립 과정의 타당성 제고
-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고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 이용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2025년 패널조사 결과 발표)
- 메타버스 사업자·이용자 측면을 함께 고려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수용 가능한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및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교부 신청 (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제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교부결정 승인
↓		
③ 사업수행 (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수행기관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일부 사업의 경우 협력기관에 위탁 수행
↓		
④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수행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⑤ (익년) 결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수행기관 정산보고서 제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토회신 → 수행기관 정산 잔액 반납

8) 각종 평가

- 1) 재정사업 자율평가('22.4.) 결과 보통(87.9점)
- 2) 보조사업 연장평가('23.5.) 결과 감축(69.4점, 사업방식 변경)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00	-	1,100	1,100	1,100	100.0	-	-
2023	1,100	-	1,100	1,100	1,100	100.0	-	-
2024	830	-	830	830	830	100.0	-	-
2025	792	-	792	792	792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8)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325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	130	131
명칭	발전기금	미디어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1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970	1,920	1,920	1,920	1,92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70	1,970	1,970			1,920	1,920	1,920			1,920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1,770	1,770	1,770			1,720	1,720	1,720			1,720
·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를 사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소·영세·스타트업의 안정적인 LBS(Location Based Service) 시장 진입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LBS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위치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특허출원,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가 겪는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② 추진경위

- '10. 6월, LBS 산업육성 및 사회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
- '16. 1월, 창조적 LBS 산업발전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70	1,170	1,970	1,920	1,920

- 기타: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내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예비창업자, 일반국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1,920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1.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 1,720백만원</p> <p>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40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국내 시장환경과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맞춰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금 지급을 위해 전년 동일 수준으로 요구 - (산출) 409백만원 <p>②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화 지원 : 98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위치정보 산업 시장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년 동일 수준으로 요구 - (산출) 986백만원 <p>③ 국내 위치정보 사업자 실태조사 및 국내외 위치정보 및 동향분석 : 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국내 위치정보사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전년 동일수준으로 요구 - (산출) 50백만원 <p>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을 위한 암호화, 방화벽 등 기술 인프라 지원 : 27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중소기업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 지원 예산을 전년 동일 수준으로 요구 - (산출) 275백만원 <p>2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에 대한 기업특화 맞춤형 컨설팅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시 사업화 지원 예산을 전년 동일 수준으로 요구 - (산출)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LBS 사업화 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90	90	91	92	93	사업수혜자 대상 행정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안내 및 정보제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산출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만족도×0.5)+ (컨설팅 만족도×0.5)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조사
	실적	91.2	91	91	92.3	-			
	달성도	101.3	101.1	100	100.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2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을 개시하여 영세·중소·스타트업 대상 우수 비즈니스 모델(B/M) 선정 및 사업화 지원 등
2023	'2023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을 개시하여 청년 및 영세·중소·스타트업 기업 대상 우수 비즈니스 모델(B/M) 선정
2024	'2024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을 개시하여 청년 및 영세·중소·스타트업 기업 대상 우수 비즈니스 모델(B/M) 공모, 위치기반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성장촉진 지원
2025	'2025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을 개시하여 청년 및 영세·중소·스타트업 기업 대상 우수 비즈니스 모델(B/M) 공모, 위치기반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성장촉진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발달로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등 소규모 영세 기업의 성장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920백만원)	=> (1,920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920백만원)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p>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자격과 평가 절차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일 기업의 반복 지원을 제한하는 장치 마련 필요(예정처, '26년 예산안) <p>2) 대외공개 평가</p> <p>3) 자체평가</p>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70			1,170	1,170	100		
2023	1,170			1,170	1,170	100		
2024	1,970			1,970	1,970	100		
2025	1,920			1,920	1,920	100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9)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3251-314)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4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인터넷 정보활용기반구축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DNA 성능평가 제도 도입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디지털 성범죄물 비교식별 기술도입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기술지원 체계구축	사업시행주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4,662	4,195	4,195	4,991	4,429	234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62	4,662	4,662	-	-	4,195	4,195	4,195	-	-	4,429
·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3,297	3,297	3,297	-	-	2,967	2,967	2,967	-	-	3,076
· DNA 성능평가 제도 도입	865	865	865	-	-	778	778	778	-	-	803
·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도입 기술지원체계구축	500	500	500	-	-	450	450	450	-	-	5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현장 점검 실시, 성능평가 제도 운영,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비교식별기술 성능평가 제도 운영 및 도입 지원 등을 보조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제22조의5 등)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및 사전조치 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에 대해 상시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

*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일부 부가통신사업자)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9, 제64조의8 등)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의무에 대해 책임자 지정, 투명성 보고서 작성지원·검수 및 의무교육 실시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메타버스, 인터넷개인 방송, 해외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유통플랫폼에 대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자율규제 적극 유도
- (DNA 성능평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 5)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중 하나인 성능평가 제도 운영 및 성능평가 수행
 -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법령 준수를 위해 성능평가 신청 시 사업자가 도입하는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 기술을 대상으로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 준수 기반 마련 및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사업임
-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도입 기술지원체계구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조치에 필요한 적용·운용에 대한 기술지원 등 행정지원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4조의9, 제64조의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69조의2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② 추진경위

- 2014. 9.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 신설
- 2015. 4.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 2015. 10.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법률이행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 2016. 1. : 불법음란정보 상시점검 체계 구축·운영
- 2016. 12. : 불법음란정보의 기술적 차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2017. 8. :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발표
- 2019. 1. : 정부합동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1.24., 7개 부처)
 - ※ 방미통위, 과기부, 성평등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방미심위 등 7개 부처
- 2019. 11.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업무 협약(4개부처)
- 2020. 4. : 정부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4.23.)
 - ※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등 7개부처

- 2020. 6. : 'n번방 방지법' 관련 법 신설(6.9.)
 - ※ 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 2020. 12.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12.10.)
 - ※ 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 2020. 12.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안내 등
- 2020. 12.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안내 등
- 2021. 2. :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2호)
- 2021. 3.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시행
- 2021. 7~.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시행
- 2021. 12. :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2호)
- 2021. 12.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해설서 발간
 -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상세 안내 등
- 2021. 12. :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5호)
- 2022. 3.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사업자 준수 사항 안내(90개사업자)
- 2022. 6.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점검 시행
- 2022. 11.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작성·이력관리시스템 시행
- 2022. 12. : 국민참여예산제도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 사업 우수제안 선정(기획재정부)
- 2022. 12. :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8호)
- 2023. 1.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작성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3. 8.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3. 12. : 국민참여예산제도 주요 SNS 모니터링 사업 우수제안 선정(기획재정부)
- 2024. 4. : 불법음란물·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 2024. 4. :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방미통위 고시 제2024-4호)
- 2024. 11. :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마련
- 2025. 3. :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방미통위 고시 제2025-3호)
- 2025. 3. : 불법음란물·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65	3,177	4,662	4,195	4,4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 사업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포함 일반국민, 인터넷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부기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보조	한국정보 통신진흥 협회	3,076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보조금법 제9조
DNA성능평가 제도도입	보조	한국정보 통신기술 협회	803	100	보조금법 제9조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0조의6제2항제3호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도입 기술자원체계구축	보조	방송통신 이용자보 호협회	550	100	보조금법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차단 기반마련 : ('25) 2,967백만원 → ('26요구) 3,076백만원, 109백만원 증액(3.7%)

- (요구) 불법촬영물등(이미지)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산출) 웹하드 상시점검 결과분석 및 현장조사 302백만원

웹하드 기술적 조치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900백만원

웹하드 상시점검 및 전문가협의체 등 운영경비 26.7백만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업운영 86백만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모니터링 및 기술적조치 상시점검 330백만원

불법촬영물등 이행점검 및 전문가협의체 등 운영경비 13.5백만원

불법촬영물등 제도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47.8백만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내용 분석 및 업무지원 43백만원

불법촬영물등(이미지) 유통방지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업운영 34백만원

불법촬영물등(이미지) 유통방지 모니터링 및 기술적조치 상시점검 75백만원

불법음란정보·촬영물등 지원시스템 운영관리 86백만원

불법음란정보·촬영물등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217백만원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사업운영 43백만원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300백만원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요원 43백만원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운영경비 20백만원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사업운영 67.5백만원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360백만원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요원 67.5백만원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운영경비 14백만원

② DNA 성능평가 제도 도입: ('25) 778백만원 → ('26요구) 803백만원, 25백만원 증액(3.2%)

- (요구) 연중 상시 평가시스템 운영 및 성능평가 적시 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요구

- (산출) 시험 수행 경비 450백만원

운영요원 225백만원

동영상 불법촬영물 성능평가 기준데이터 분석 및 정제 도구 개발 78백만원

이미지 불법촬영물 비교식별기술 성능평가 체계 개발 50백만원

③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 기술도입 기술지원 체계구축 : ('25) 450백만원 → ('26요구) 55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22.2%)

- (요구)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비교식별기술 유지보수 및 기술 고도화,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유지보수 수행과 이미지 비교식별기술 사업자 도입 지원 등을 위한 소요예산 요구

- (산출) 비교식별기술 개발 및 유지보수용 테스트베드 구축 40백만원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 고도화 및 검증기술 개발 212백만원

조치의무사업자 기술지원 및 운용 관리 198백만원

이미지 DNA DB 최적화 50백만원

이미지 비교식별기술 보급 및 기술지원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적조치 개선(차단) 건수 (단위: 건)	목표	159,200	185,300	208,000	212,000	222,000	지속적 증가추세 반영하여 전년 실적치 대비 1% 상향으로 목표설정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이행개선(차단) 건수의 합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83,500	200,924	209,560	220,159	-			
	달성도	115	108	103	103.8	-			
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DNA) 방미심위 제공건수 (단위: 건)	목표	69,100	82,300	89,200	101,000	119,000	음란물특성상 채증자료의 중복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대비 1% 상향으로 목표설정	불법음란정보 차단DB 정보 제공건수의 합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81,542	88,305	99,918	118,211	-			
	달성도	118	107	112	117.0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단위: %)	목표	96.0	97.0	98.0	99.0	99.0	성능평가 신청 대비 처리율을 98%로 설정,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 달성률을 100%로 설정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신청 대비 처리율의 50% + 성능평가 시스템 고도화 50%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98.7	97.1	98.9	100.0	-			
	달성도	102.8	100.1	100.9	101.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웹하드 사업자 대상(34개 사업자/75개 사이트) 상시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조치 개선 건수총 183,500건 [(PC) 81,542건 + (Mobile) 101,958건] - 웹하드 사업자의 유통방지 불법음란물 기술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총 34개 사업자/75개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음란정보 인식 및 송·수신 제한 조치,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 점검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상시기능, 검색결과 송출 제한, 특징기반 필터링 게제제한 기능, 사전경고 조치 여부 등 점검 -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상시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자 기초자료 수집 및 상시점검 대상 사업자 분류(91개 사업자)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상시기능, 검색결과 송출 제한, 특징기반 필터링 게제제한 기능, 사전경고 조치 여부 등 점검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2회)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확인 및 사업자별 투명성보고서 검토 및 접수 지원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실시(10.20.~12.31.) -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촬영물등 게재 제한, 검색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등 점검(총 91개 사업자) -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디지털성범죄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별 추진현황 및 계획 공유 등 정례회의 참석(2회) -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상시 성능평가 관련 기술자문 등 지원 ·기술지원을 위한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시험 데이터 분석 도구 고도화 - 연중 상시 성능평가 신청을 받아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적시에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시험 기회를 반복 제공하여 자발적인 성능향상 유도 ·성능평가 수행 건수 : 78건 - 구매 또는 제작한 일반영상의 특징을 분석 및 분류하여 평가에 적합한 일반영상 DB (3,560개) 구축을 통한 평가 신뢰성 강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기술적 조치(34개 사업자/75개 사이트) 상시점검 운영 ·기술적 조치 개선 건수(PC) : 88,037건 ·기술적 조치 개선 건수(Mobile) : 112,353건 ※ AI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46,769건 포함, 12월말 기준 - 불법음란정보 DB 구축 협력체계 지원 ·상시점검 채증된 불법음란정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차단 DB 제공 : 88,037건(12월말 기준)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 ·불법음란정보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 사업자 실태점검 (상반기 : 19개 사업자, 45개 사이트/ 하반기 : 17개 사업자, 34개사이트)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관련 운영시스템 통합운영 ·IDC(KT선릉)센터에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AI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5개 유형의 시스템 장비를 입고하여 지속적 관리, 장애 예방 조치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 상시관리 -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불법음란물 자료의 저장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통합보안방화벽(UTM) 도입 ·AI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웹하드 사업자 성인 카테고리의 불법음란물을 자동으로 크롤링하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18개 사이트(PC 9개, 모바일 9개) ※ 크롤링 : 정보통신망에서 동영상 또는 관련정보를 찾아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오는 기술 -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상시점검 운영 ·해당사업자 기초자료 수집(약 15,000개) 및 점검대상 사업자 선정(약 1,000개)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상시점검 운영 ·상시점검 대상 사업자 분류(90개 사업자(국내 80개, 해외 10개))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장점검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장점검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33개사업자, 75개사이트 ·부가통신사업자 현장점검 14개 사업자/ 서면점검 51개 사업자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확인 및 사업자별 투명성보고서(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업보고서) 접수 공개(90개 사업자)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90개 사업자, 약 200여명) -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조사 및 선정 ·실시간방송주요 SNS·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 파악 및 기능조사(102개 서비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연중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 모니터링 운영 및 신고접수(13개사 사업자, 12월말 기준) .모니터링 50,886건 / 방미심위 신고 17,625건 -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점검자료 및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상시 성능평가 관련 기술자문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을 위한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시험 데이터 분석 도구 고도화 - 연중 상시 성능평가 신청을 받아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적시에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시험 기회를 반복 제공하여 자발적인 성능향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평가 수행 건수 : 32건 - 구매 또는 제작한 일반영상의 특징을 분석 및 분류하여 평가에 적합한 일반영상 DB(4,596개)구축을 통한 평가 신뢰성 강화 - 성능평가 관련 TTA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성능평가 제도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단체표준(TTAK.KO-11.0317-Part1)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식별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 제1부: 개요 · 정보통신단체표준(TTAK.KO-11.0317-Part2)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식별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 제2부: 시험 항목 및 시험 결과 산출 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기술적 조치(29개 사업자/62개 사이트) 상시점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조치 개선 건수(PC) : 99,918건 · 기술적 조치 개선 건수(Mobile) : 109,642건 ※ AI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56,000건 포함 - 불법음란정보 DB 구축 협력체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점검 채증된 불법음란정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차단 DB 제공 : 99,918건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음란정보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 사업자 실태점검 (상반기 : 19개 사업자, 44개 사이트 / 하반기 : 10개사업자, 19개 사이트) -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상시점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통신사업자(약1,000개) 대상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 적발 후 삭제·접속차단조치 요청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상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치의무 지정사업자(83개 사업자108개 사이트)대상 키워드 검색결과 제한, 비교 식별기술(DNA) 상시 운영여부 확인 등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지원 (29개 사업자, 63개 사이트) · 불법촬영물등 재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기술(DNA필터링) 조치 이행여부를 위한 사실조사 등 현장점검 지원(18개 사업자)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확인 및 사업자별 투명성보고서 작성·접수 지원(90개 사업자) - '23년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진행 결과 정리(82개 사업자, 약 150여명) -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협의회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지원 -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관련 운영시스템 안정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음란정보, 불법촬영물등,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장애 예방 조치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 관리 -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노후화장비 교체 및 자동화 모니터링(AI판별)시스템 확대 -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 모니터링 운영 및 신고접수(약 50개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적발 : 75,354건 .방미심위 신고조치 : 22,037건 -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SNS플랫폼 30개 사업자(35개 사이트)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사이트 조사 ·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 기준 10개 사업자(12개 사이트) 조사대상 선정 - 주요 SNS플랫폼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실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12개 사이트(12월말) · 모니터링 적발 : 93,660건 · 사업자 신고조치 : 58,706건 · 방미심위 신고조치 : 70,830건 -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상시 성능평가 관련 기술자문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을 위한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시험 데이터 분석 도구 고도화 -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상시 성능평가 관련 기술자문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을 위한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시험 데이터 분석 도구 고도화 - 연중 상시 성능평가 신청을 받아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적시에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시험 기회를 반복 제공하여 자발적인 성능향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평가 수행 건수 : 45건 - 구매 또는 제작한 일반영상의 특징을 분석 및 분류하여 평가에 적합한 일반영상 DB (4,596개)구축을 통한 평가 신뢰성 강화 - 성능평가 관련 TTA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성능평가 제도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식별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 제3부: 시험 의뢰자 준비 요구사항 ·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식별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 제4부: 시험 제공자 준비 요구사항 -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 모듈 배포 및 적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식별기술 업데이트 모듈(V2.0.0./분리모듈 적용) 배포(4/22) · 비교식별기술 CPU 단독 모듈 추가 배포(6/10)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개최(10/29)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대상 업데이트 모듈 적용 확인(22社) -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에 대한 DB 저감기술 개발(12월) -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 관련 오류·장애 관련 기술(40건) 및 일반 문의(4건) 지원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기술적 조치(31개 사업자/66개 사이트) 상시점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조치 개선 건수(PC) : 118,211건 · 기술적 조치 개선 건수(Mobile) : 101,94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32,085건 포함, 11월말 기준 - 불법음란정보 DB 구축 협력체계 지원 .상시점검 채증된 불법음란정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차단 DB 제공 : 118,211건(12월말 기준)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 .불법음란정보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 사업자 실태점검 (상반기 : 19개 사업자 / 하반기 : 12개 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상시점검 운영 .부가통신사업자(약1,000개) 대상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 적발 후 삭제·접속차단조치 요청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상시점검 .사전조치의무 지정사업자(83개 사업자·108개 사이트)대상 키워드 검색결과 제한,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식별기술(DNA) 상시 운영여부 확인 등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지원(53개 사업자)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확인 및 사업자별 투명성보고서 작성·접수 지원(81개 사업자) - '25년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진행 결과 정리(83개 사업자, 약 150여명) -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협의회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지원 -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대국민 제도홍보 진행(온·오프라인 홍보) -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관련 운영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음란정보, 불법촬영물등,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장애 예방 조치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 관리 -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 모니터링 운영 및 신고접수(약 50개사 사이트, 12월말 기준) ·모니터링 적발 : 64,751건 ·사업자 신고조치 : 4,700건 ·방심위 신고조치 : 27,609건 -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SNS플랫폼 30개 사업자(35개 사이트)에 대한 동향파악 및 사이트 조사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 기준 9개 사업자(11개 사이트) 조사대상 선정 - 주요 SNS플랫폼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실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대상 : 11개 사이트(12월말) ·모니터링 적발 : 126,624건 ·사업자 신고조치 : 98,860건 ·방심위 신고조치 : 98,860건 - 성능평가 관련 TTA단체표준 개정(8/12)을 통해 성능평가 이해관계자들 간 의사소통 도모 및 제도의 이해도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식별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 제1부: 개요 ·불법촬영물 특징정보 식별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 제2부: 시험 항목 및 시험 결과 산출 방법 -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상시 성능평가 관련 기술자문 등 지원 - 평가용 기준데이터 정제를 통한 성능평가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가능성 있는 동영상 식별을 위한 유사성 비교·식별 도구 구축 및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된 위치를 찾기 위한 키 프레임 식별 및 추출 도구 구축 - 연중 상시 성능평가 신청을 받아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적시에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시험 기회를 반복 제공하여 자발적인 성능향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능평가 수행 건수 : 37건(12/9 기준)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대상 비교식별기술 다중 GPU 단독 모듈 추가 배포(4/30) -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 관련 오류·장애 관련 기술(23건) 및 일반 문의(7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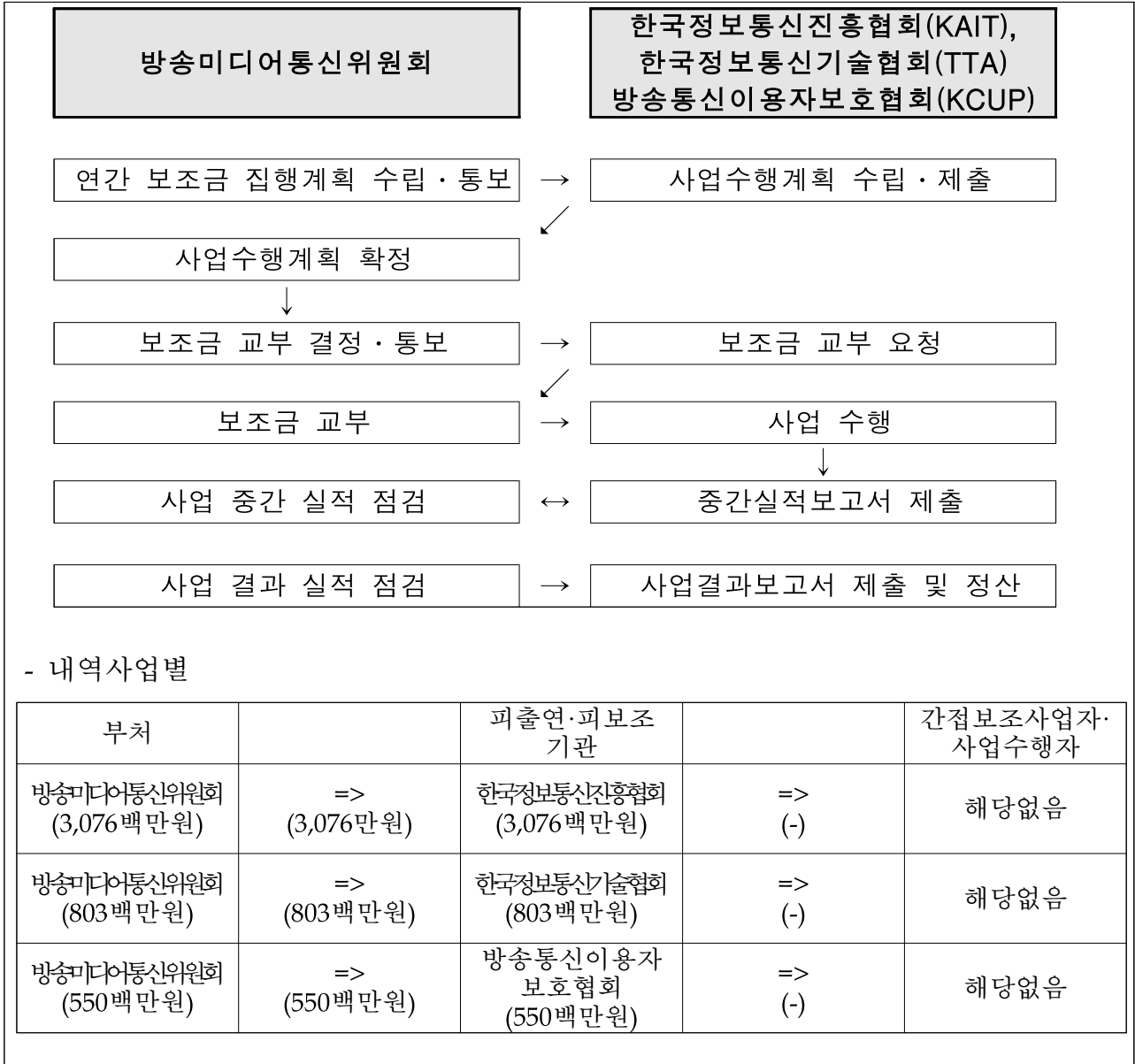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적발 및 삭제요청 등 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경각심 및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경찰청 수사 지원 등 적극적 대응
-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도입한 특징기반 비교식별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술적 조치 신뢰성 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선제적 유통 방지에 기여
- 실시간 영상 플랫폼, 메타버스, 주요 SNS 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한 플랫폼 역기능 최소화
-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이미지의 온라인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
-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도입한 특징기반 비교식별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술적 조치 신뢰성 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선제적 유통 방지에 기여
- 성능평가 신청 사업자에게 특징기반 비교식별 기술도입 및 운영 관련 기술 지원, 성능향상 방향 제시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능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에 기여
-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평가환경 구축 및 성능평가 수행으로 기술적 조치 이행을 위해 사업자마다 개별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 및 비용 절감
-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비교식별기술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유통 방지 기대
- 신규/기존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 정부제공기술 도입 지원, 이슈 대응, 시스템 운영 유지, 이미지 기술 확장 등을 통한 대응 기반 및 집중·체계화된 지원체계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 |
|---|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765	-	2,765	-	2,765	2,765	100	100
2023	3,177	-	3,177	-	3,177	3,177	100	100
2024	4,662	-	4,662	-	4,662	4,662	100	100
2025	4,195	-	4,195	-	4,195	4,195	100	100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사 업 명
(40)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51-318)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8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위치정보정책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책개발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본인확인 지원업무 수행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370	3,370	3,470	2,864	△506	△15.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30	3,230	3,034	-	-	3,370	3,370	3,021	-	-	2,864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1,000	1,000	848	-	-	1,000	1,000	899	-	-	850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책개발	130	130	128	-	-	130	130	120	-	-	110
·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1,550	1,550	1,542	-	-	1,690	1,690	1,549	-	-	1,437
· 본인확인 지원업무 수행	550	550	516	-	-	550	550	453	-	-	4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본인확인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와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실태점검, 위치정보 활용·앱접근권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및 사생활 보호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책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본인확인제도 관련 법제연구, 입법지원 및 안내서 보급 등 정책개발
 -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안전하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취약점진단 등 관리감독 수행

- 및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심사,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수행
- (본인확인 지원업무 수행)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모바일 신분증 등 온라인 본인확인 활용 확대에 따라 안전한 제도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3조의6 /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3조, 제36조

<p>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p> <p>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p> <p>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제1항제4호</p> <p>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p> <p>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3항</p> <p>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생성·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위치정보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p>

수 있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5. 6월,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
- '09. 3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11. 4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 '11. 9월, 방통위, 아이핀 본인확인기관(3개사) 지정
- '12. 12월, 방통위, 휴대폰 본인확인기관(3개사) 지정
- '17. 3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 '17. 3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간
- '18. 3~4월, 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7개사) 지정
- '19. 4월, 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1개사) 추가 지정
- '20. 12월,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5개사) 지정
- '21. 8월,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1개사) 추가 지정
- '21. 10월, 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및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
- '22. 3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기관 정기 심사
- '22. 6월,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4개사) 추가 지정
- '23. 9월,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1개사) 추가 지정
- '24. 1월,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 '25. 4월,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2개사) 지정
- '25. 5월,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고시 재·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30	3,230	3,230	3,370	2,8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정보통신망 이용자) 및 본인확인기관, 온라인 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850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책개발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110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1,437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본인확인 지원업무 수행	출연	한국인터넷 진흥원	467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 850백만원

- (요구) 위치정보사업자등 실태점검,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모니터링,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등
- (산출) 위치정보사업자등 실태점검 : 594백만원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모니터링 : 128백만원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 128백만원

②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책개발 : 110백만원

- (요구) 본인확인제도 법제정비, 정책연구, 연구반 운영 등 업무 수행
- (산출) 본인확인제도 정책개발 : 110백만원

③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 1,437백만원

- (요구)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 등 관리감독 수행, 연계정보에 대한 생성·처리 승인 심사 위원회 운영, 이용기관 대상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 (산출) 본인확인기관 관리감독 : 1,318백만원
실태점검 수행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심사 : 119백만원

④ 본인확인 지원업무 수행 : 467백만원

- (요구) 연계정보 변환심의 위원회, 본인확인 지원 포털 운영, 본인확인 서비스 통합모듈 배포 지원 등
- (산출) 연계정보 변환심의 위원회 운영 및 본인확인 지원 포털 운영 등: 221백만원
본인확인 서비스 통합모듈 배포 지원 : 24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본인확인서비스 활용도 (단위: 억건)	목표	21	22	23	24	25	과거 실적 및 추세 관련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본인확인기관 제출자료 합산	본인확인기관 자료제출
	실적	26	26	28	30	-			
	달성도	124%	118%	122%	12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상위 이용순위(1,000개) 앱모니터링 실시 - 본인확인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20개 기관) 및 지정 심사 추진(4개 기관)
2023	-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모니터링(1,000개), 모바일앱 상위 이용순위(1,000개) 모니터링 실시 - 본인확인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24개 기관) 및 지정 심사 추진(1개 기관)
2024	-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모니터링(1,000개), 모바일앱 상위 이용순위(1,000개) 모니터링 실시 - 본인확인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24개 기관) 및 지정 심사 추진(3개 기관)
2025	-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모니터링(1,000개), 모바일앱 상위 이용순위(1,000개) 모니터링 실시 - 본인확인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23개 기관) 및 폐지 심사(3개 기관),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96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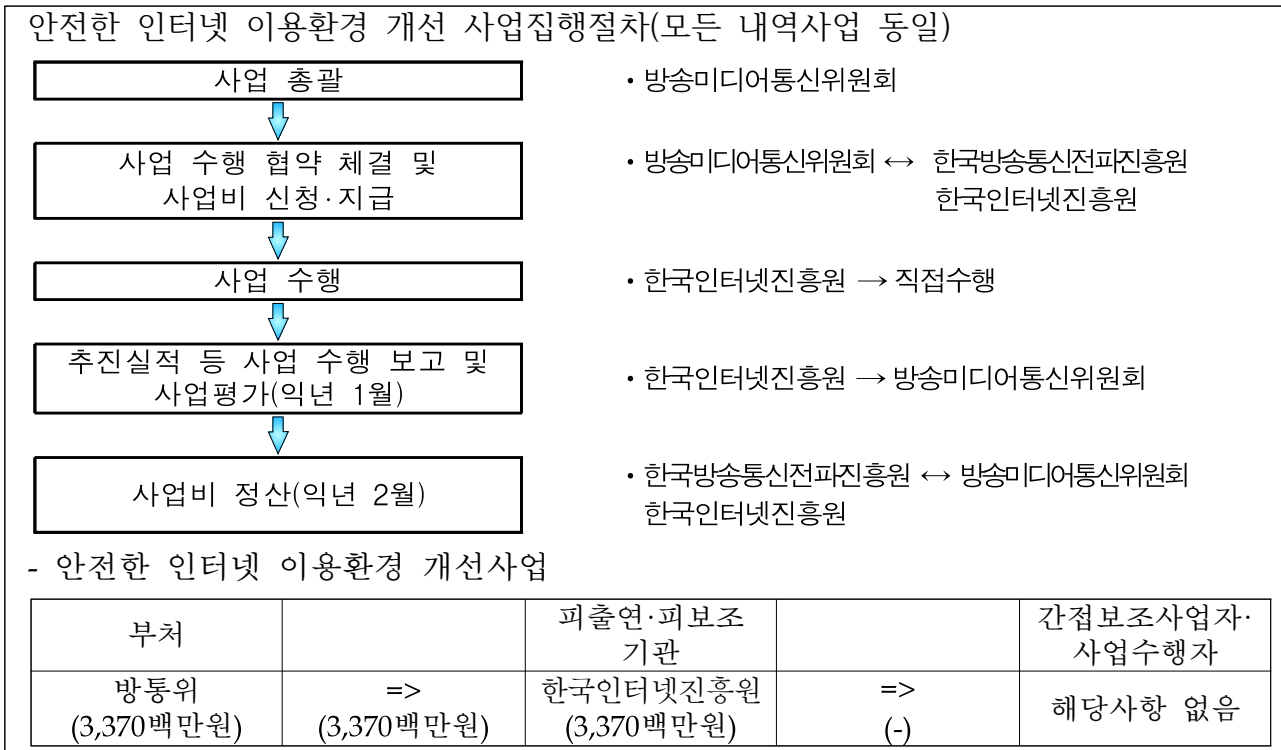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위치정보사업자 등 실태점검, 앱 접근권한, 위치기반서비스 활용 현황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환경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결산 예정처("2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실태 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마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절차·주기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발의("25.1.22.),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점검을 실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30	-	-	3,230	3,230	100%	-	-
2023	3,230	-	-	3,230	3,230	100%	-	-
2024	3,230	-	-	3,230	3,230	100%	-	-
2025	3,370	-	-	3,370	3,37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1)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3251-319)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기금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9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 구축 운영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1,148	921	921	969	969	48	5.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 월 액	불 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48	1,148	1,145 [1,052]	-	3	921	921	921	921 [883.7]	921	921 [883.7]	-	-	969
·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 구축 운영	1,148	1,148	1,145 [1,052]	-	3	921	921	921	921 [883.7]	921	921 [883.7]	-	-	969
○ 비목별 분류(합계)	1,148	1,148	1,145 [1,052]	-	3	921	921	921	921 [883.7]	921	921 [883.7]	-	-	969
· 민간경상보조(320-01)	1,148	1,148	1,145 [1,052]	-	3	921	921	921	921 [883.7]	921	921 [883.7]	-	-	96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48	1,148	1,145 [1,052]	-	3	921	921	921	921 [883.7]	921	921 [883.7]	-	-	969
· 인터넷 피해 상담 센터 구축 운영	1,148	1,148	1,145 [1,052]	-	3	921	921	921	921 [883.7]	921	921 [883.7]	-	-	969
- 민간경상보조 (320-01)	1,148	1,148	1,145 [1,052]	-	3	921	921	921	921 [883.7]	921	921 [883.7]	-	-	9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인터넷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권익 증진 도모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전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관련기관을 안내(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보호)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제공자의 책무)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2년 : 상담센터 개소 및 대국민 홈페이지 개시(5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 유관기관 MOU 체결(12월)
- '23년 : 2022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1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운영(2월, 6월, 11월),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이중화(12월)
- '24년 : 2023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1월), 23년 피해상담 분석결과 발표(1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시(3월), 제2024-1호 피해주의보 발령(4월), 국민신문고 칭찬사례 모음집 발간(4월), 국민콜110 정부민원콜센터 상담연계(9월),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사례검색 등 기능개선 및 통합관제시스템 도입(10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12월)
- '25년 : 2024년 피해상담 분석결과 발표(2월),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3월), SKT유심 해킹 등 이용자 피해주의 안내(5월, 10월, 11월),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6월, 8월), 온라인피해365센터 챗봇 상담 개시(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8백만원	1,078백만원	1,148백만원	921백만원	969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인터넷 이용자(전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보조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969백만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25) 921 → ('26) 969백만원, +5.2%

- (요구)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건수 증가에 따른 상담 인원 증원 및 대국민 포털 제공 서비스, 피해 상담 업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시스템 운영을 위한 S/W·H/W 장비 유지보수 예산 편성

- (산출)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 796백만원
 - 온라인피해상담센터 구축 : 170백만원
 - 온라인피해상담센터 운영 : 471백만원
 - 온라인서비스 피해예방 기반조성 : 155백만원
-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173 → 173백만원
 -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 : 127백만원
 -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 4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1,300건	(변경)	-	-	('24년부터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실적으로 성과지표 변경)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건수(전화상담, 피해상담지원 시스템, 이메일 등)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건 (전화, 홈페이지, 우편, 카카오톡 등)
	실적	-	1,811건	-	-	-			
	달성도	-	1303%	-	-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실적 (단위: 점)	목표	-	-	3점	3.05점	3.10점	전년목표 대비 0.05점 상향된 값을 목표로 산정	성과점수 = (피해상담 건수 점수)×60% + (상담 만족도 점수)×40%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건수 및 상담 만족도 (온라인피해상담지원 시스템 통계 www.helpos.kr)
	실적	-	-	4.96점	4.96점	-			
	달성도	-	-	165.3%	162.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피해상담센터 운영 수행기관 선정('22.2월) - 온라인피해365센터 사무공간 구축('22.3~4월)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원 채용 및 교육('22.4월~5월) -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및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착수('22.4월) - 상담센터 대국민 명칭공모전 개최('온라인피해365센터' 大賞선정)('22.5월) - 온라인피해365센터 개소 및 홈페이지 오픈, 상담개시('22.5.31.) - 온라인서비스 피해 대응 모색을 위한 좌담회 개최('22.9.27.) - 카카오 장애 관련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접수 및 대응('22.10월) -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오픈, 대국민 온라인상담 서비스 개시('22.10.20.) -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MOU체결('22.12.29.) -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기획·구성('22.12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23.1.31.) -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관리 및 기자재 관리 - 온라인피해365센터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우편을 통한 전문 상담운영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원 인력관리 및 상담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 초빙교육 -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정례회의 운영('23.3.23, 8.22, 11.29)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온라인피해365센터 1주년 기념 대국민 참여형 슬로건 공모전 운영 ※ 공모접수(6/1~7/21), 공모심사(7/26~8/9), 심사결과 발표(8/22), 시상(10/20) - 방통위위원장 통신서비스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23.10.19) -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국민참여단 방문('23.11.14) -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DB 이중화 등 고도화('23.8월~12월)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피해365센터 2023년 피해상담 분석 및 보도자료 배포('24.1.17) - 2023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24.1.31) - 온라인피해365센터 전화·카카오톡·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문상담 운영(연중)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원 인력관리 및 상담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전문가 초빙교육(연중) ※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법인 세종, 통신민원조정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 -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정례회의 운영('24.3월, 8월) - 온라인상의 사칭피해 관련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24.4.8) -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민신문고 칭찬사례 모음집 발간('24.4.30) - 정보취약계층(농어민, 노년층) 대상 사칭피해 등 빈발사례와 예방법 등 온라인피해 관련 피해예방 교육 실시(3회, 농협중앙회·대한노인회 협력) -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통합관계시스템 도입('24.8~12월)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24.12.20) - 2024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기획 및 구성('24.12월), 발간('25.3월)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관리 및 기자재 관리 - 온라인피해365센터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우편을 통한 전문 상담운영 - 온라인피해365센터 2024년 피해상담 분석 및 보도자료 배포('25.2.27) -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25.3.31)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원 인력관리(6명, 전문도급업체), 상담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교육 및 유관기관 전문가 초청교육 운영('25.4~6월) -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정례회의 운영('25.4월, 8월, 12월) - SKT 유심 해킹 관련 이용자('25.5.19)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25.10.2) 피해주의 안내 - 정보취약계층(노년층) 대상 SKT 유심 해킹 관련 피해사례, 예방법 교육(3회)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홍보 추진('25.6월~11월) -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정보 탈취·악용 피해주의 안내('25.11.10)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챗봇 개발('25.6월~12월) - 2025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기획 및 구성('25.12월), 발간('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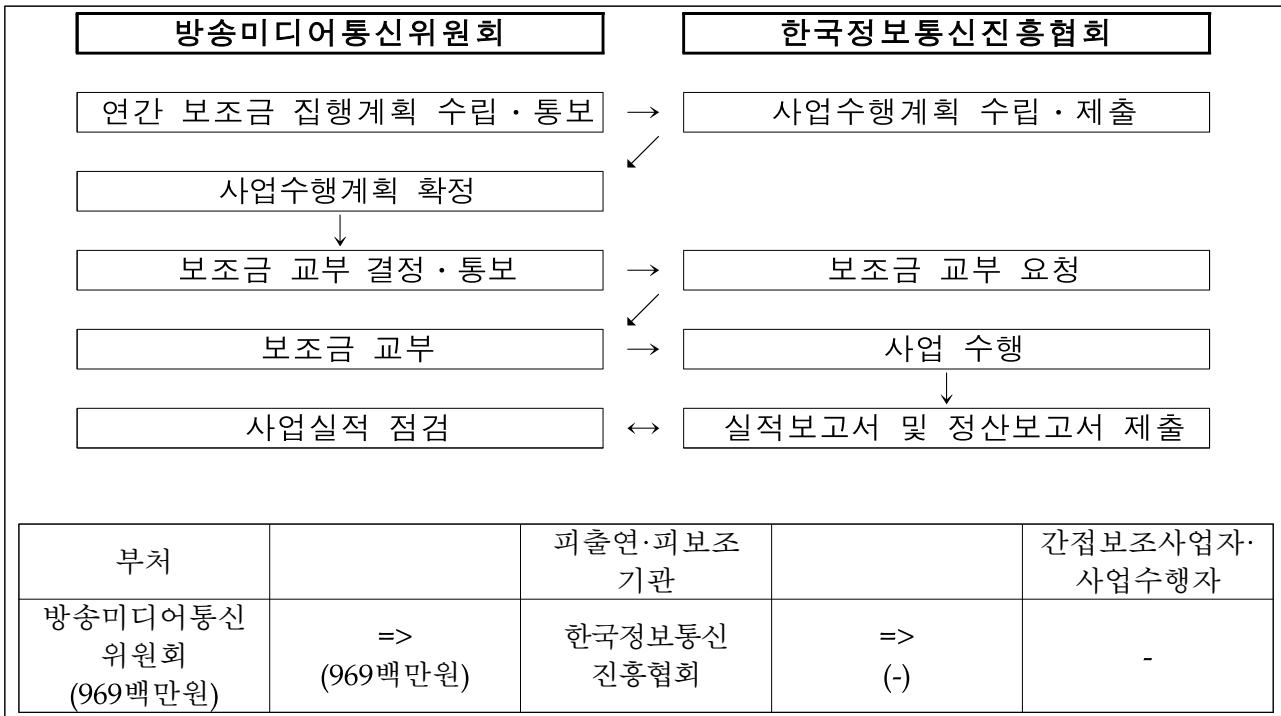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온라인상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 종합정보 제공, 온라인 피해 관련 일원화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해결 도모, 유관기관 협의회 확대로 사각지대·新유형 서비스 피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인공지능 분야 피해 신고 접수창구 운영,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및 피해주의보 발령 등 이용자 보호 및 국민권익 증진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실제 소요에 따라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임차 관리비 등 감액 필요(예결위, '23예산)
 -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운영 지침 구체화 필요(과방위, '23예산)
 - 성과지표 목표치를 비도전적으로 설정(예정처, '24예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18	-	1,318	-	1,318	1,318	100.0	100.0	-	-
2023	1,078	-	1,078	-	1,078	1,078	100.0	100.0	-	-
2024	1,148	-	1,148	-	1,148	1,145	99.7	100.0	-	3
2025	921	-	921	-	921	921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318	1,318	1,318	1,318	-	1,318	1,121	-	197	85.1
2023	1,078	1,078	1,078	1,078	-	1,078	924	-	154	85.7
2024	1,148	1,148	1,145	1,145	-	1,145	1,052	-	93	91.6
2025.12월	921	921	921	921	-	921	884	-	37	96.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2년 신규사업으로 2월(2/17~)에 사업 개시 및 5월(5.31~)에 상담센터 개소에 따른 사유로 물품 구입비 등 일부 비용 미사용으로 인해 집행 잔액 발생
2023	- 상담센터 전산·사무 기자재 비용 등 미사용, 경쟁입찰 또는 최저가 계약에 따른 일부 미사용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2024	- 상담센터 전산·사무 기자재 비용 등 일부 미사용, 회의비·여비 일부 비용 미사용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2025	- 공공요금·소모품비 등 일부비용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2)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 (3251-32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미디어	방송통신		130	131
명칭	발전 기금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21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안전한 AI활용 기반조성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	-	278	-	278	27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말기준)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78	278	278	278 [268]	278	278 [268]			278
· 생성형 AI 이용 자 참여 플랫폼	-	-	-	-	-	278	278	278	278 [268]	278	278 [268]			2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AI)의 환각, 비윤리성, 권리 침해, 범죄 악용 등 위험성·역기능을 제보받는 플랫폼을 운영해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AI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여 위험성에 대해 제보받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정책적 교두보 역할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역기능 피해 방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3.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신체·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2. 7월, 120대 국정과제

※ 국정과제 59-4(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명시

- '23. 9월, 디지털 권리장전

-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제8조 (디지털 다양성 존중)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 제17조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18조 (디지털 위험 대응) 디지털 위험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통해 예방·관리되어야 하며, 그 위험에 관한 정보는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허위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제21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디지털 공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로 발생가능한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 제23조(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24. 3월,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

- ※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위험성 관리 및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 생성형 AI 피해예방 등)

- '25. 3월,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

- ※ AI 이용자 권익 보호 및 AI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추진
-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AI 활용 콘텐츠제작 실태조사 및 활용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생성형 AI 피해구제 체계 확립 등)

- '25. 2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6개의 실행 방식 발표

- '25. 3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연구반 운영

- ※ 생성형 AI 위험성 분류체계 및 위험성 제보 프로세스 정립 등

- '25. 7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

- ※ 제보내역 처리방안 논의 등

- '25. 10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시스템 오픈

- ※ ai.wiseuser.go.kr

- '25. 11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78	2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민간 경상 보조	한국정보 통신진흥 협회	278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p>□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 (2025) 278백만원 → (2026 계획안) 278백만원, 전년동</p> <p>·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 (2025) 278백만원 → (2026 계획안) 278백만원, 전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운영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① 이용자 제보내역 확인 및 정보제공 197.4백만원, ② 이용자 참여 플랫폼 운영 45.6백만원, ③ 시스템 유지보수 5백만원, ④ 시스템 보안강화 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자 제보내역 확인 및 정보제공 197.4백만원 제보내역 확인 및 자료구매 112.2백만원, 정보제공 콘텐츠 제작 30백만원, 대국민 인식제고 30백만원, 전문가 자문 사례비 25.2백만원 ② 이용자 참여 플랫폼 운영 45.6백만원 ③ 시스템 유지보수 5백만원 ④ 시스템 보안강화 30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활성화율(%)	목표	-	-	-	80	82	목표 정보제공 건수 상향	[(위험성 신고 내용 검증 건수/위험성신 고건수)×50%]+ [(정보제공건수 /목표 정보제공건수)× 50%]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	-	-	90	-			
	달성도	-	-	-	112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연구반 운영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위험성 분류 체계 마련 등 ○ 생성형 AI 사업자 간담회 (2회) ○ 생성형 AI 대학생 간담회 (1회)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시스템 구축(10월 오픈)
------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생성형AI 서비스 이용자가 제보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및 생성형 AI 서비스의 올바른 사용 등 인식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수행 세부계획 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수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최종보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각종 평가

<p>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은 지침상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일반재정사업으로 분류된 바, 정보화 사업 수준의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 필요(예정처, 25예산) - 예산 지침 상 시스템 도입 후 1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유지보수 비용 삭감(예정처, 25예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공모로 결정하도록 하는 「보조금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할 필요(과방위, 25예산) <p>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p> <p>3) 자체평가 : 해당 없음</p>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278	-	-	278	278	100	-	-

2) 주요 결산사항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 없음